



한국어교원 양성 및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 2012-01-23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397-01

한국어교원 양성 및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연구 책임자
최정순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한국어교원 양성 및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연구 책임자: 최정순(배재대학교)

연구 기관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최정순(배재대)

공동연구원 권성미(부경대), 박정아(국립국어원), 오지혜(세명대),
이미향(영남대), 이정란(이화여대), 조태린(국립국어원),
지현숙(배재대), 진대연(호원대), 진정란(사이버외대)

연구보조원 엄나영(영남대), 오승영(충남대), 윤지원(배재대),
전미화(배재대), 정안나(배재대), 진 주(배재대),
조진영(사이버외대), 하상대(부경대)

<국문초록>

한국어교원 양성 및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한국어교원 자격제도가 가진 한계점을 점검하고 한국어교원의 체계적인 양성과 지원 및 관리 정책의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고가 설정한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운영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활동 실태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화, 전자우편, 온라인을 통한 설문 조사를 통해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운영 실태와 자격증 소지자의 활동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한국어교원의 양성 및 지원 효율화를 고려한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실시하고 자문 회의와 4대 권역(대전·충청·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서울·경기·강원권)에서의 이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서면 및 전화 조사를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개선 방안과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원 양성 효율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효율화 방안을 기관의 유형에 따라 제안하였다. 학위과정의 경우, 학위별, 기관별 교육과정의 자율성, 전문성, 차별성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이수과목의 설정과 교육 실습 교과목 내용 강화, 영역의 축소 및 이수학점의 재조정, 교육 실습의 제도적 강화, 자격증 취득 조건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비학위과정의 경우, 예비

ii ✦ 국문초록

교원의 전문성, 수강생 요구의 다양성을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수업 시수 확대, 필수이수내용 및 이수시간 지정, 영역의 축소 및 재조정, 교육 실습의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처우와 관련하여서는 자격증의 위계화, 자격증 취득 및 승급 조건의 차별화, 한국어교육기관과 유관 정부 기관 간의 협력 기구 구성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국어교원의 질적 제고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인증제, 교사의 재교육, 보수교육 과정 개설과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한국어교원, 한국어교원 양성, 한국어교원 지원,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

목 차

국문 초록	i
목 차	iii
표 목차	v
그림 목차	xi
제1장 사업 개요	1
제2장 서론	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
1. 연구 배경	2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1. 연구 내용 및 범위	7
2. 연구 방법	8
제3장 한국어교원 양성 및 자격제도의 개요 및 쟁점	10
제1절 한국어교원 양성 및 자격제도	10
1. 한국어교원 양성 관련 법령: 국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10
2. 한국어교원 양성 및 자격제도 시행 및 절차	14
제2절 자격 취득 관련 주요 쟁점들	20
1. 학위과정의 쟁점들	20
2. 비학위과정의 쟁점들	23
3. 자격증 심사제도 관련 쟁점들	26
제4장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실태 조사	28
제1절 학위과정	28
1. 학부과정	28
2. 대학원과정	46
3. 사이버대학교 학부과정 및 대학원과정	66
4. 학점은행제 과정	75
5. 각 지역별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	82
제2절 비학위과정	84
1. 대학기관	87

iv * 목 차

2. 기타 운영기관	101
3. 각 지역별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	114
제3절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116
1.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통계	116
2.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현황	117
3. 각 지역별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	129
제5장 한국어교원 양성 및 자격제도 개선 방안과 법령 개정안	131
제1절 한국어교원 양성 및 지원 효율화 방안	131
1. 개선안 제안의 배경	131
2. 개선안 도출 방식 및 절차	132
3.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34
4.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59
5.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대상 지원 방안	183
6. 교육과정 변경 및 기관 인증제 실시에 따른 정책 과제	192
제2절 법령 개정안	195
1.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95
2.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211
제6장 결론	224
참고문헌	231
Abstract	233

표 목 차

<표 1>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현황	3
<표 2> 양성기관 유형별 자격 취득 요건 및 자격 등급	3
<표 3>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및 합격 현황	4
<표 4>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	12
<표 5>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2]	13
<표 6>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4
<표 7>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15
<표 8> 학위과정(학부) 운영기관 및 응답 기관 수	28
<표 9> 학위과정(학부) 응답 기관 목록(명칭)	29
<표 10> 학위과정(학부) 명칭	31
<표 11> 학위과정(학부) 개설 시기	32
<표 12> 학위과정(학부) 재학생 수	33
<표 13> 학위과정(학부) 개설 형태	33
<표 14> 학위과정(학부) 개설 과목 수	34
<표 15> 학위과정(학부) 영역별 개설 과목 수(1·2·4영역)	34
<표 16> 학위과정(학부) 영역별 개설 과목 수(3영역)	35
<표 17> 학위과정(학부) 영역별 개설 과목 수(5영역)	35
<표 18> 학위과정(학부) 졸업 이수학점의 분포	35
<표 19> 학위과정(학부) 전공별 이수학점의 분포	36
<표 20> 학위과정(학부) 학위 수여 조건	36
<표 21> 학위과정(학부) 졸업생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 현황	37
<표 22> 학위과정(학부) 전임교원 수	37
<표 23> 학위과정(학부) 전임교원 전공 분포	38
<표 24> 학위과정(학부) 전임교원 학력	38
<표 25> 학위과정(학부) 전임교원 한국어교육 경력	39
<표 26> 학위과정(학부) 시간강사 수	39
<표 27> 학위과정(학부) 시간강사 자격	40
<표 28> 학위과정(학부)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방식	40
<표 29> 학위과정(학부) 입학 전형 방법	41
<표 30> 학위과정(학부) 출석 관리 현황	41

<표 31> 학위과정(학부)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방식	42
<표 32> 학위과정(학부) 참관 협조 가능 연계 기관 유무 여부	42
<표 33> 학위과정(학부) 참관 협조 가능 연계 기관 소속	43
<표 34> 학위과정(학부) 실습 협조 가능 연계 기관 유무 여부	43
<표 35> 학위과정(학부) 실습 협조 가능 연계 기관 소속	44
<표 36> 학위과정(학부)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평가 방식	45
<표 37> 학위과정(학부) 실습 교과목 수강 조건	46
<표 38> 학위과정(대학원) 응답 기관 수	46
<표 39> 학위과정(대학원) 응답 기관 목록(명칭)	47
<표 40> 학위과정(대학원) 유형	51
<표 41> 학위과정(대학원) 명칭	52
<표 42> 학위과정(대학원) 개설 시기	53
<표 43> 학위과정(대학원) 정원 수	54
<표 44> 학위과정(대학원) 개설 형태	54
<표 45> 학위과정(대학원) 학기별 개설 과목 수(과정 수)	55
<표 46> 학위과정(대학원) 영역별 교과목 개설 현황(과정 수)	56
<표 47> 학위과정(대학원) 졸업 이수학점	56
<표 48> 학위과정(대학원) 학위 수여 조건	57
<표 49> 학위과정(대학원) 졸업생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 현황	57
<표 50> 학위과정(대학원) 전임교원 수	58
<표 51> 학위과정(대학원) 전임교원 전공	58
<표 52> 학위과정(대학원) 전임교원 학력	58
<표 53> 학위과정(대학원) 전임교원 한국어교육 경력	59
<표 54> 학위과정(대학원) 시간강사 수	59
<표 55> 학위과정(대학원) 시간강사 자격	60
<표 56> 학위과정(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방식	60
<표 57> 학위과정(대학원) 입학 전형 방법	61
<표 58> 학위과정(대학원) 출석 관리 현황	61
<표 59> 학위과정(대학원)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방식	62
<표 60> 학위과정(대학원) 참관 협조 가능 연계 기관 유무 여부	62
<표 61> 학위과정(대학원) 참관 협조 가능 연계 기관 소속	63
<표 62> 학위과정(대학원) 실습 협조 가능 연계 기관 유무 여부	64

<표 63> 학위과정(대학원) 실습 협조 가능 연계 기관 소속	64
<표 64> 학위과정(대학원)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의 평가 방식	65
<표 65> 학위과정(대학원) 실습 교과목 수강 조건	66
<표 66>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운영기관 수	66
<표 67>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응답 기관 목록(명칭)	67
<표 68>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개설 시기	68
<표 69>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기관별 재학생 수	68
<표 70>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영역별 개설 현황(기관 수)	69
<표 71> 사이버대학교 학년별 개설 현황(기관 수)	70
<표 72>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및 자격 취득 현황	71
<표 73>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전임교원 수	71
<표 74>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전임교원 전공	72
<표 75>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시간강사 현황	72
<표 76>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방식	73
<표 77>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방식	73
<표 78>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한국어교육 실습 참관/실습 연계 기관	74
<표 79>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의 평가 방식	74
<표 80>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수	75
<표 81>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응답 기관 목록(명칭)	76
<표 82> 학점은행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개설 시기	76
<표 83> 학점은행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형태	77
<표 84> 학점은행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교육과정	77
<표 85> 학점은행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영역별 개설 현황(기관 수)	78
<표 86> 학점은행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졸업 및 자격 현황	78
<표 87> 학점은행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전임교원 수	79
<표 88> 학점은행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전임교원 전공	80
<표 89> 학점은행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시간강사 자격	80
<표 90> 학점은행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방식	81
<표 91> 학점은행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의 평가 방식	82
<표 92> 비학위과정 시행 기관	84

<표 93> 비학위과정(대학기관) 유형	87
<표 94> 비학위과정(대학기관) 개설 시기	88
<표 95> 비학위과정(대학기관) 연간 개설 횟수	89
<표 96> 비학위과정(대학기관) 운영 기간	90
<표 97> 비학위과정(대학기관) 전용 강의실 배정 여부	90
<표 98> 비학위과정(대학기관) 기자재 구비 여부	90
<표 99> 비학위과정(대학기관) 행정 담당 배정 여부	91
<표 100> 비학위과정(대학기관) 강사 전공	92
<표 101> 비학위과정(대학기관) 강사 학력	92
<표 102> 비학위과정(대학기관) 강사 자격증 소지 현황	93
<표 103> 비학위과정(대학기관) 강사 강의 경력	93
<표 104> 비학위과정(대학기관)의 사용 중인 교재 유형	94
<표 105> 비학위과정(대학기관) 개설 강좌명과 실제 수업 내용의 일치 정도	94
<표 106> 비학위과정(대학기관) 개설 및 운영이 어려운 영역	95
<표 107> 비학위과정(대학기관)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의 적절성	96
<표 108> 비학위과정(대학기관) 강의의 중점 사항	96
<표 109> 비학위과정(대학기관) 운영 시 어려운 점	97
<표 110> 비학위과정(대학기관) 교육 참관 및 실습 방식	97
<표 111> 비학위과정(대학기관) 참관 횟수	97
<표 112> 비학위과정(대학기관) 실습 횟수	98
<표 113> 비학위과정(대학기관) 참관 연계 기관	98
<표 114> 비학위과정(대학기관) 실습 연계 기관	99
<표 115> 비학위과정(대학기관) 과정 수료 기준	99
<표 116> 비학위과정(대학기관) 과정 수료 기준(평가)	100
<표 117> 비학위과정(대학기관) 시험 실시 횟수	100
<표 118> 비학위과정(대학기관) 강의 평가 실시 여부	101
<표 119>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개설 시기	102
<표 120>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연간 개설 횟수	103
<표 121>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운영 기간	103
<표 122>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전용 강의실 배정 여부	104
<표 123>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기자재 구비 여부	104

<표 124>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행정 담당 배정 여부	104
<표 125>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강사 전공	105
<표 126>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강사 학력	105
<표 127>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강사 자격증 소지 현황	106
<표 128>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강사 강의 경력	106
<표 129>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의 사용 중인 교재 유형	107
<표 130>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개설 강좌명과 실제 수업 내용의 일치 정도	107
<표 131>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의 개설 및 운영이 어려운 영역	108
<표 132>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의 적절성	108
<표 133>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강의의 중점 사항	109
<표 134>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운영 시 어려운 점	109
<표 135>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교육 참관 및 실습 방식	110
<표 136>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참관 횟수	110
<표 137>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실습 횟수	110
<표 138>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참관 연계 기관	110
<표 139>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실습 연계 기관	111
<표 140>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과정생의 평균 수료율	111
<표 141>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과정 수료 기준(평가)	112
<표 142>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과정 수료 기준(출석률)	112
<표 143>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시험 실시 횟수	112
<표 144>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강의 평가 실시 여부	113
<표 145>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자격증 취득자 수	113
<표 146>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현황	116
<표 147>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현황	117
<표 148>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급수별 인원 수	120
<표 149>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 취득 경로	120
<표 150>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경로	120
<표 151> 한국어교원 1급 자격증 취득 경로	121
<표 152>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소지자 경력	121
<표 153>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소지자 경력	121
<표 154> 한국어교원 1급 자격 소지자 경력	122

X + 표 목 차

<표 155>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소지자 활동 영역	122
<표 156>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소지자 활동 영역	123
<표 157>	한국어교원 1급 자격 소지자 활동 영역	124
<표 158>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소지자 직위	124
<표 159>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소지자 직위	125
<표 160>	한국어교원 1급 자격 소지자 직위	125
<표 161>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소지자 시간당 강사료	126
<표 162>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소지자 시간당 강사료	126
<표 163>	한국어교원 1급 자격 소지자 시간당 강사료	126
<표 164>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소지자 주당 강의 시간	127
<표 165>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소지자 주당 강의 시간	127
<표 166>	한국어교원 1급 자격 소지자 주당 강의 시간	128
<표 167>	[별표4]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주요 교육 내용	158
<표 168>	학위과정/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기준	177
<표 169>	국어기본법 시행령과 개정안 비교	201
<표 170>	국어기본법 시행규칙과 개정안 비교	214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 목표 및 내용 범위	8
<그림 2> 각 단계별 연구 방법	9
<그림 3>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체계도	16
<그림 4> 기관 심사 및 절차 방법	17
<그림 5> 개인 자격 심사 절차	17
<그림 6> 학위과정(대학·대학원, 학점은행제)을 통한 승급 절차	18
<그림 7> 비학위과정(단기양성기관)을 통한 승급 절차	19
<그림 8> 한국어교원 자격증 심사제도 관련 쟁점	27
<그림 9> 학위과정(학부) 조사의 흐름	30
<그림 10> 학위과정(학부) 개설 시기	32
<그림 11> 학위과정(대학원) 조사의 흐름	50
<그림 12> 학위과정(대학원) 개설 시기	53
<그림 13> 비학위과정 조사의 흐름	86
<그림 14> 비학위과정(대학기관) 유형	87
<그림 15> 비학위과정(대학기관) 개설 시기	88
<그림 16> 자격증 소지자 관련 조사의 흐름	119
<그림 17> 개선안 도출 방식 및 절차	133
<그림 18> 인증제 실시를 위한 진행 절차 흐름도(안)	176
<그림 19> 기관 인증제/프로그램 인증제 실시 절차	179
<그림 20> 인증제 도입의 특성 및 장점	180
<그림 21> 자격증 자동취득제 진행 절차 흐름도(안)	182

제1장 사업 개요

<p>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운영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제시 ○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활동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제시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운영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 법령 개정안 제시
<p>추진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 ○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활동 실태 조사 ○ 이해 관련자 대상 공청회 실시 ○ 자격제도 개선 관련 법령 개정안 작성
<p>추진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운영 실태 조사 및 결과 분석 ○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활동 실태 조사 및 결과 분석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개선 방안 마련 ○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지원 방안 마련 ○ 현행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제2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한 한국어교육은 2000년대에 들어 양적, 질적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러한 양적, 질적 비약의 결정적 계기 중의 하나가 2005년 7월 국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과 함께 시행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였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국가 자격으로서의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이하 ‘자격제도’)는 한국어교원의 자격 부여에 필요한 경력과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등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한국어교원의 체계적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어교원 자격의 요건과 취득 절차,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운영 방식,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운영 요건과 교육 품질,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향상 등에 대한 논의들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러한 비판과 논의들은 현행 자격제도가 지닌 내적 문제와 한계에 기인하는 것도 있지만 자격제도 시행 이후 8년의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급속하게 변화된 환경에 기인하는 측면도 적지 않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한국어교원 자격 소지자와 이들을 배출해 내는 양성기관의 급속한 증가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한국어교원 자격 소지자 양성기관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졸업을 통해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학위과정’과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면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비학위과정’이 그것이다. 2006년 이후 각 양성기관의 연도별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현황¹⁾

(단위: 개소 수)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학위과정	40	-	69	-	93	105	121
비학위과정	34	-	54	-	102	130	135
계	74	-	123	-	195	235	256

위의 표를 보면, 학위과정이 2006년 40개소에서 2012년 121개소로 거의 3배 증가했으며, 비학위과정도 2006년 34개소에서 2012년 135개소로 4배가량 급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학위과정에는 전문학사 이상 졸업자가 1.5년 이내에 학사 학위와 함께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과정 12개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비학위과정 이수 후 치러야 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합격률이 30%를 밑돌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엔 시험이 필요 없는 학점은행제 기관의 학위과정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²⁾

이처럼 다양한 양성기관의 유형별로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조건, 평균 소요 기간, 취득 가능 자격 등급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양성기관 유형별 자격 취득 요건 및 자격 등급

			필수 조건	평균 소요 기간	취득 가능 자격 등급
학위 과정	대학	전공 또는 복수전공	45학점 이수	4년	2급
		부전공	21학점 이수	2년	3급
	대학원		18학점 이수	2년	2급
	학점은행제		48학점 이수	1.5년	2급
비학위 과정	단기 양성기관		120시간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3급

1) 조태린(2012:5) 자료 참조

2) 이로 인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개설된 비학위과정들에서 수강생이 급감하거나 아예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이번 연구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4 + 한국어교원 양성 및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그리고 이러한 양성기관을 졸업하거나 이수하고 한국어교원 자격을 신청하여 합격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및 합격 현황

(단위: 명)

연 도	신청자	합격자				합격률
		1급	2급	3급	소계	
2006	1,750	-	269	599	868	49.6%
2007	790	-	185	454	639	80.9%
2008	911	-	341	501	842	92.4%
2009	1,092	-	613	424	1,037	95.0%
2010	2,248	-	826	1,331	2,157	95.9%
2011	1,923	81	1,155	573	1,809	94.2%
2012	1,572	34	1,237	188	1,459	92.8%
계	10,286	115	4,626	4,070	8,811	85.7%

이상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양성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이 기관들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한국어교원의 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비학위과정이나 최근 신규 개설과 수강생 급증이 확인되고 있는 학점은행제 기관들의 운영 여건 및 교육 품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양성기관들을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수는 2006년 868명에서 2012년 8,811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했지만, 이들이 실제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되며 그들에 대한 보수나 처우 등의 활동 여건은 어떤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나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실 지금까지 배출된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수는 적지 않아 이들에 대한 채용 수요와 지원 사이에는 적지 않은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전국 대학에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교육기관의 수는 약 130개소에 이르나 최근 몇 년간의 신규 교원 채용 규모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달리 한국어교육 전문성의 강화를 위해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원하는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는 적

은 보수 및 열악한 근무여건 등을 이유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전문 교원)가 많이 지원하지 않는 형편이라고 한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앞서 살펴본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운영 실태와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활동 실태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물론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자격제도 개선과 양성기관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와 조사가 국립국어원의 발주로 추진되기는 했다. 2008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조현성 외)에서는 이주민 대상 교육기관의 한국어교원에 대한 한국어 준교원 자격증 제도의 도입,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및 한국어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한국어교원 경력 산정 및 승급제도 개선 등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제안 중에서 한국어교원 경력 산정 및 승급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2010년 12월 14일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예 반영되었으나, 한국어 준교원 자격제도의 도입과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및 한국어교육기관 인증제도의 도입은 현실적 어려움과 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또한 2009년에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실태 조사”(오광근 외)를 통해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 중인 78개 기관에 대해 교육과정, 수업, 평가, 강사진 및 강사진 구성, 기관 운영 등을 조사하고 표준 운영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제안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표준 운영 지침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제도화되지는 못했으나 이후 수정·보완되어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에 권장사항의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지난해인 2011년에는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2)”(윤소영 외)에서 학위과정에서의 교과목 지정 및 자동취득 방안의 도입,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 대한 인증 방안 도입, 전문학사를 통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도입 및

6 + 한국어교원 양성 및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자격 요건 마련 등이 제안되었는데, 관련 기관의 여론 수렴 부족,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이유로 대부분 시행을 미루거나 시행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이처럼 여러 차례의 연구 및 조사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한국어교원 양성 및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라는 이름의 연구를 추진하게 된 것은 현행 자격제도의 개선이 논리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연구 결과 및 제안을 교육 현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제안과 함께 현행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2005년 1월 법 제정 당시부터 한국어교원 자격제도가 지니고 있었던 한계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한국어교원의 체계적인 양성과 지원 및 관리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제공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또한 교원 양성의 실질적 토대가 되는 양성 담당 기관의 교육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관 평가 등 제도적 절차의 신설 혹은 보완을 통해 교원 자격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에 이차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영역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❶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운영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❷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활동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마련



❸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운영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❹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 법령 개정안 마련



❺ 한국어교원 양성 및 지원 효율화 방안의 총체적 모색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운영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활동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마련
- 자격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 자격제도 개선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 즉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이에 대한 개선 법령 개정안 마련, 그리고 한국어교원 양성 및 지원 효율화 방안 모색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연구 목표와 내용적 범위를 약술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구 목표		내용 범위
1단계	①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운영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및 외국어 교원 양성제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 검토 및 서면 조사 - 국내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현장 조사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영역,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이수시간 규정 등과 관련한 한국어교육과정 검토 - 설립 방식 및 절차, 기관 시설, 운영 방식, 교수자 및 수강자 수, 졸업 및 이수, 자격 취득 요건 실태 조사
	②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활동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관련 국가 및 정부 기관, 대학기관, 유관 시설 및 시민 단체를 통한 통계 자료 조사 -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대상의 서면(전자우편, 설문지) 조사 -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 취득 과정, 활동 내역, 근무 환경, 향후 전망에 대한 실태 조사

8 + 한국어교원 양성 및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p>③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운영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및 교사 양성기관 대상의 전화 및 설문 조사 - 공청회 분석 - (한)국어 및 외국어 교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 위원회 구성
<p>2단계</p>	<p>④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 법령 개정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의 국내 기관을 포함하여 대학, 문화원, 교육원, 한글학교 등 국외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행정적·제도적 지원 대책 마련 - 일반 목적뿐만 아니라, 결혼 이민자, 이주 노동자, 새 터민, 귀국 동포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수 목적 한국어교원 대상으로 자격제도 확대 - 국가 기관 인증의 승급 요건 기준 마련 - 교사 재교육 제도, 교사 양성 목적별 자격제도 관련 법령 마련



<p>3단계</p>
<p>다양한 국내의 한국어교육 환경에 부합하는 ‘한국어교원 양성 및 지원 효율화 방안의 모색’</p>

<그림 1> 연구 목표 및 내용 범위

2. 연구 방법

연구진은 본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 연구 방법들로 요약할 수 있다.

- 문헌 연구: (한)국어 및 외국어 교원 양성제도와 관련된 문헌 조사
- 질문지법: 한국어교육 관련 국가 및 정부기관, 대학기관, 유관 사설 및 시민 단체를 통한 전수 설문 조사
- 산술 통계: 설문 응답지의 통계 분석

- 전문가 집담회: 국내 전 지역을 포괄한 네 차례의 공청회 실시, 국어 및 외국어 교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 위원회 구성
- 인터뷰: 개정안으로서의 교원자격제도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한 법률 전문가의 심층 인터뷰

I 단계			II 단계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마련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활동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마련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자격제도 개선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및 외국어 교원 양성제도와 관련된 문헌 조사 • 국내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관련 국가 및 정부 기관, 대학기관, 유관 시설 및 시민 단체를 통한 통계 자료 조사 •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대상의 서면(전자우편, 설문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및 교사 양성기관 대상의 전화 및 설문 조사 • 공청회 분석 • (한)국어 및 외국어 교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 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으로서의 교원자격제도에 관한 법률적 검토 • 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의 국내 기관을 포함하여 대학, 문화원, 교육원, 한글학교 등 국외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행정적·제도적 지원 대책 마련
III 단계			
한국어교원양성 및 지원 효율화 방안의 총체적 모색			

<그림 2> 각 단계별 연구 방법

제3장 한국어교원 양성 및 자격제도의 개요 및 쟁점

제1절 한국어교원 양성 및 자격제도

국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어교원은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로서, 대학, 민간,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학위 및 비학위과정을 통해 양성되어 왔다. 한국어교원 자격은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여하고, 이 과정은 국립국어원이 주관한다. 한국어교원 양성 및 자격에 관한 제도는 국어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1. 한국어교원 양성 및 자격제도 관련 법령: 국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1)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제19조에서는 국어의 보급과 관련하여 한국어 사업과 한국어교원의 자격 요건 및 부여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한국어교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2) 국어기본법 시행령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한국어교원을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한국어교원은 크게 세 등급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한국어교원 자격³⁾을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있다.

가. 한국어교원 1급

-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000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한국어교원 2급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 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한국어교원 3급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별표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3) 위의 세 급수의 한국어교원과 관련하여,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 기관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어기본법 제13조의 2에서는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즉,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은 [별표1]에 따른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표 4>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 (개정 2010.12.14.)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제13조제1항 관련)

번호	영역	과목 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 이수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오류분석 등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교안작성법,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한국어교육특강, 한국어교육세미나	24학점	9학점	2~3학점	46시간
4	한국 문화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화개론,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민속학 등 ※ 과목명에 '한국'이 명시되어야 함.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교육 실습	강의 참관, 모의수업, 강의 실습 등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 한국어교원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한편, 국어기본법 제14조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횟수, 방법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먼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양성과정 이수자가 한국어교원 자격(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격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1차 시험인 필기시험과 2차 시험인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표 5>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영역 및 검정방법(제14조제2항 관련)

영역	배점	시간	방법
한국어학	90	100분	필기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3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150	150분	
한국문화	30		
	300점	250분	
구술시험	합격/불합격		면접

3)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에서는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2조는 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과 관련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3조는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횟수와 관련하여 연 2회 시행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한 제4조는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는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요건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표 6>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제2조 관련)

번호	영역	세부 심사기준
1	한국어학	한국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 한국어의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어문규범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일반 언어의 보편적인 구조와 특징,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 등의 일반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 또는 일반 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응용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 한국어의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어문규범 등의 교육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4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국의 역사·민속·철학·정치·경제·사회·지리·예술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5	한국어교육 실습	한국어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등 한국어교육 실습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2. 한국어교원 양성 및 자격제도 시행 및 절차

1) 한국어교원 양성 및 자격제도 시행

대학 및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통한 한국어교원 양성 및 자격은 해당 대학 및 대학원의 한국어교육 전공(학과)은 완전히 분리된 하나의 전공 혹은 학과로 개설된 것을 전제로 하며, 학위(졸업)증명서에 한국어교육 전공/복수전공 또는 한국어교육 부전공이 명기되어야 인정된다. 한편, 비학위과정을 통한 한국어교원 양성 및 자격의 경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기관, 즉 단기양성기관에서 최초 수업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전 과정을 수료, 이수한 것을 전제로 한다. 이때 양성과정은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국내 양성과정은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기관이 운영하는 양성과정(원격교육과정 포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운영하는 양성과정, 국립국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운영하는 양성과정에 한한다. 또한 국외 양성 과정은 중앙부처, 국립국어원 등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국내 초청 또는 해외 현지 한국어교원 연수과정, 재외 한국대사관이나 한국문화원이 운영하는 양성과정,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거나 인가된 외국의 대학이 국내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하여 운영하는 양성과정에 해당한다.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14조, 동법 시행 규칙에 의거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2006년부터 국어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1차(2월 말~4월), 2차(8월 말~10월), 3차(12월 중순~1월), 연 3회 심사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비학위과정, 즉 단기양성기관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한국어교원 자격(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⁴⁾을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즉, 양성과정(120시간)을 반드시 이수한 후, 1차 시험(필기시험)과 2차 시험(면접시험)을 합격해야만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내용 및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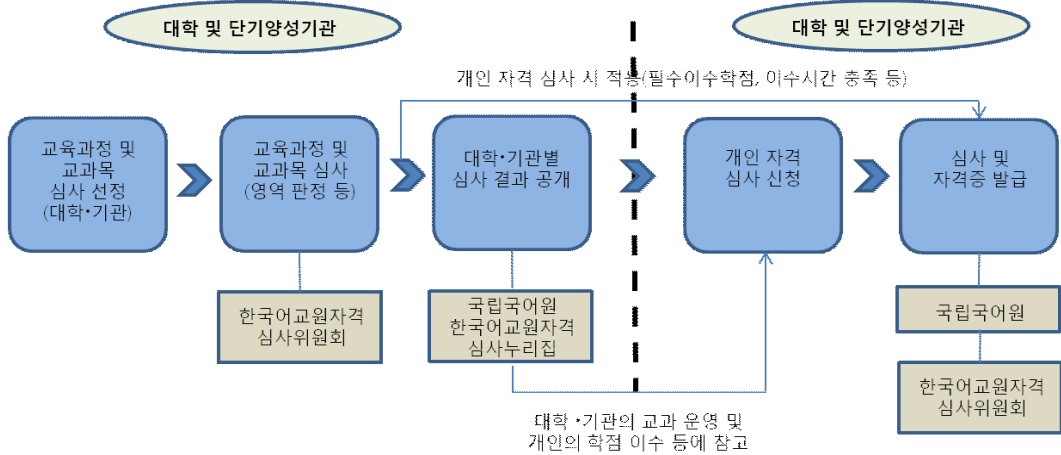
<표 7>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1차 시험(필기)	2차 시험(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학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한국문화 ○ 1차 합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의 각 영역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300점)의 60%인 18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원으로서의 태도 및 교사상 - 교사의 적성 및 교직원 - 인격 및 소양 - 한국어능력 평가

4)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한국어세계화재단, 2009년 이후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시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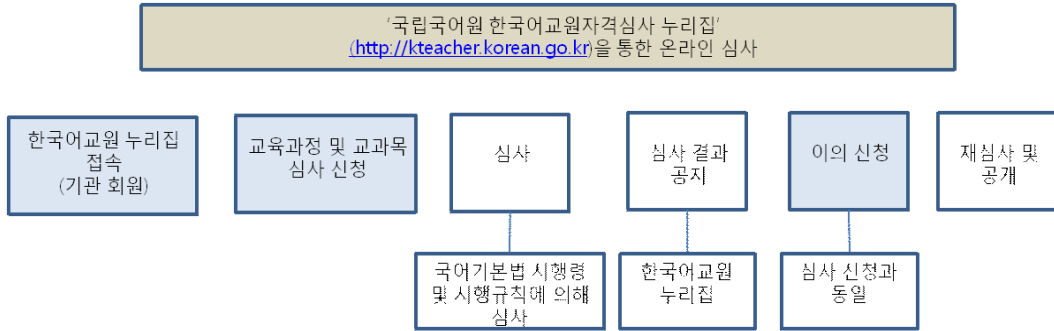
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절차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와 관련하여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에 따라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아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의 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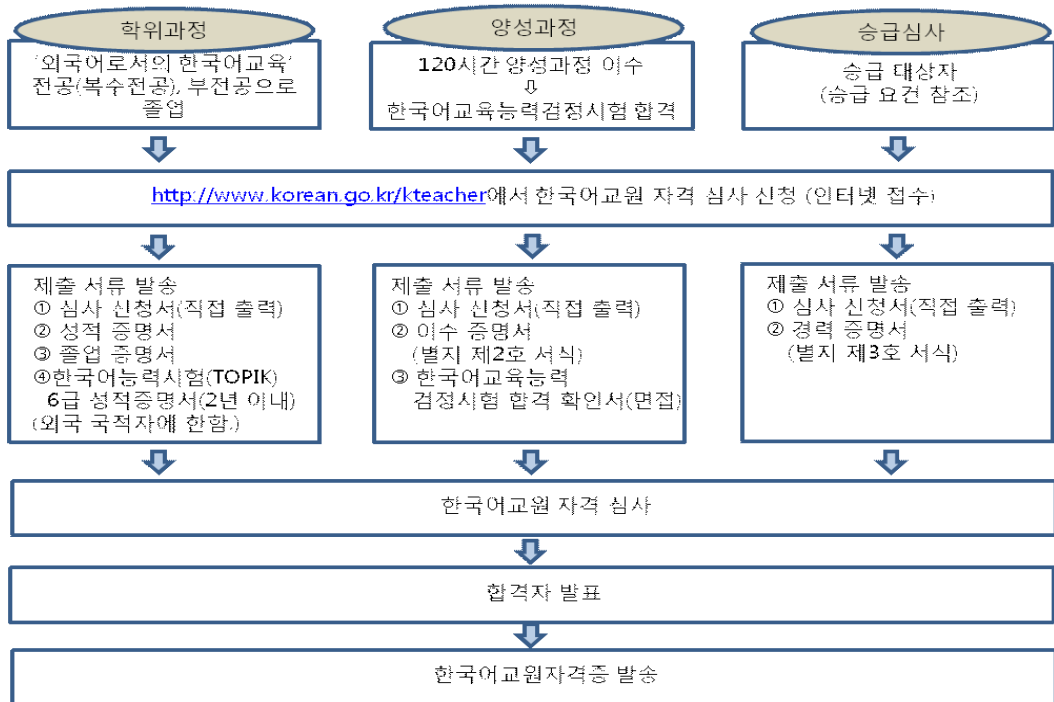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체계도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는 크게 기관 심사와 개인 심사로 구분된다. 기관 심사의 경우, 한국어교육 전공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대학원(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기관(단기양성기관), 학점은행제(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과목) 운영기관이 심사 대상이 된다. 또한 심사 횟수 및 시기는 연 2회 정기적으로 12월에서 2월, 6월에서 8월에 이루어진다. 심사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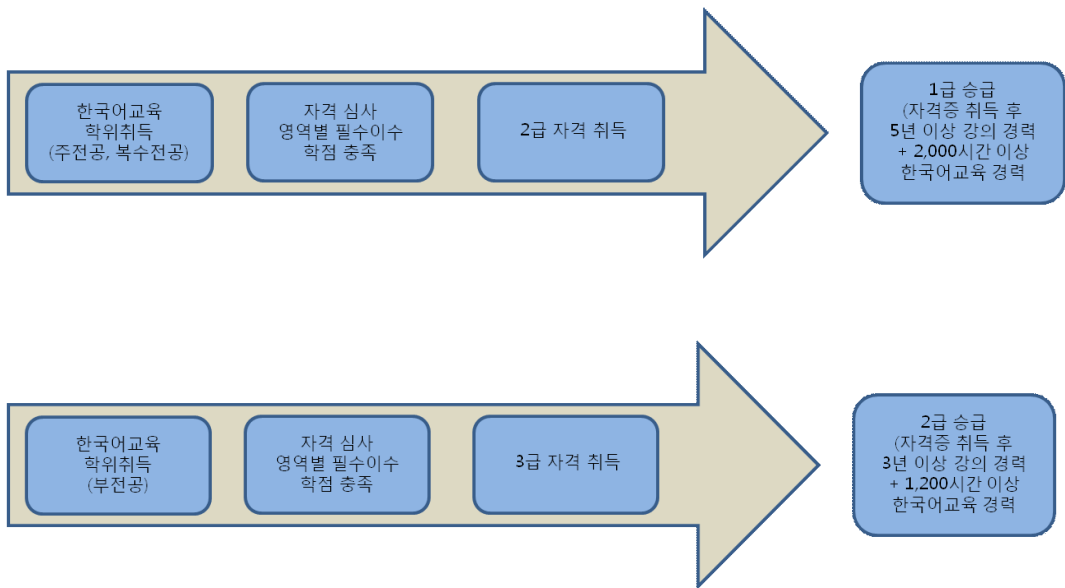
<그림 4> 기관 심사 절차 및 방법

또한 개인 자격 심사의 경우,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에 따라 다른 절차를 따른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05.7.28.) 이후부터 학위 및 비학위과정을 통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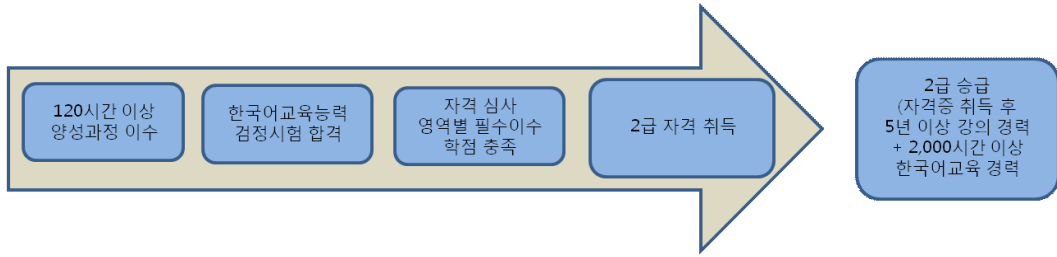
<그림 5> 개인 자격 심사 절차

한편, 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 또는 3급을 취득한 후, 소정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학위 또는 비학위과정에 따라 1급 또는 2급으로 승급이 가능하다. 이때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기관⁵⁾에서 한국어교육 경력으로서 강의 연수를 최저 3년 또는 5년을 충족하고,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기관에서 한국어교육 경력으로서 법정 시수를 충족한 경우 승급될 수 있다.



<그림 6> 학위과정(대학·대학원, 학점은행제)을 통한 승급 절차

- 5)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를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어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그림 7> 비학위과정(단기양성기관)을 통한 승급 절차

위의 도식에서처럼, 1급 승급 대상자는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및 경력 인정 범위에서 자격 취득일로부터 최소 만 5년 이상의 강의 경력과 총 강의 시수 2,000시간을 충족한 경우 1급 취득이 가능하다. 한편, 2급 승급 대상자는 학위과정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부전공으로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 취득일로부터 최소 만 3년 이상의 강의 경력과 총 강의 시수 1,200시간을 충족한 경우 2급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비학위과정을 거친 2급 승급 대상자는 양성과정으로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 취득일로부터 최소 만 5년 이상의 강의 경력과 총 강의 시수 2,000시간을 충족한 경우 2급 취득이 가능하다.

이 밖에 외국인 국적자의 경우, 학위과정이나 양성과정 등을 통해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학위과정(전공 및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2급 또는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합격을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다.

제2절 자격 취득 관련 주요 쟁점들

1. 학위과정의 쟁점들

2012년 하반기(11월 현재)에 국립국어원에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학위과정은 총 121개 기관에 이른다. 학위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은 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이며 이때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은 대학기관, 사설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원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현황에서 자격 취득과 관련된 학위과정에서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기관에 관한 것이다. 2000년 이전에는 소수에 지나지 않던 학위과정 교육기관은 2005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특히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기관이 급증한 것은 국내외에서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하나 기관 개설 자격 심사 절차가 간소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기관의 전공과정 개설은 한국어 교육과정 심사 신청서, 한국어교육 교과목 인정 신청서 등을 통해 적합/부적합의 평가를 받아 결정된다. 이때 기관의 규모나 교원의 수 또는 시설 구축 등에 대한 심사는 없으며 개설 전공과목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영역의 인정 여부를 서류 심사만으로 심사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기관 운영에 대한 질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 운영기관을 걸러낼 수 있는 기제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위과정 기관들은 대부분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학점은행제, 연계 전공 등 다양한 방식의 세부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기관별 정원은 주전공자를 중심으로 파악되는데 각 기관별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자들도 적지 않아 실제로 각 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한국어교원의 수는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위과정의 다양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과 각 기관별 교육과정을 통하여 배출되는 한국어교원 자

격증 2급 취득자의 수를 고려할 때, 교원의 수급과 공급의 조화를 위하여 학위과정을 통한 배출 교원의 수의 조절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관별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요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졸업자의 수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나 졸업자의 자격증 취득 여부나 한국어교육 분야 취업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격증 취득 심사가 졸업 후 진행되며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개인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개인별 심사 신청은 신청 시기와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과정을 마치고도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격증 취득과 학위 취득의 시기의 공백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의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기관별 졸업자의 자격증 취득 및 관련 분야 취업 여부에 대한 통계 관리는 학위과정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현황 관리로 이어지므로 교원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관별 자체 운영 평가 기준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자격증 소지자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교원은 전임 교원과 시간강사로 구분된다. 한국어교육이 신생 학문이고 이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력의 수가 적으므로 현재 많은 기관의 전임교원들 중 한국어교육 전공자의 수가 적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으로 한국어교육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늘고 한국어교육계가 성장함으로써 점차 해결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영역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3영역 교육론과 5영역 교육 실습의 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은 반드시 한국어교육 유경험자여야 한다. 따라서 3영역과 5영역의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임교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교육기관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나 한국어교육 유경험자를 전임교원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다. 교육기관 운영의 질적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학위과정의 교육과정에 관한 것이다.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교육의 실재를 익히는 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또는 교원)를 양성하는 모든 교육과정에는 반드시 교육 실습이 포함되어

있다. 사범대학에서는 4주간의 학교 현장 실습을 필수로 하고 있고 타국가의 외국어로서의 자국어교원 양성과정(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사 양성, TESOL 교사 양성 등)에서도 4주 이상의 교육 실습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이에 비해 현재 한국어교원 양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실습은 비교적 가볍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학위기관에서는 교육 실습을 교과목으로 운영하면서 교과목의 교육과정 내에 수업 참관, 모의수업, 수업 실습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에는 교육 실습의 이수 요건을 학점으로 표기하고 수업 참관 필수, 모의수업과 수업 실습 중 택1 필수라는 세부 규칙을 제시하여 권장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 실습의 방식이나 시간 등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기관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실습이 진행되고 있어 교육 실습 이수자의 균등한 교원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 실습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역시 중요 항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양질의 실제적 실습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위과정의 교육기관은 대부분 국어기본법에서 제시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영역별 과목 수와 학기당 개설 과목 수 모두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요건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위과정 대부분이 기관별 특성에 따른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은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부에서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자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새로운 것 없는 교육과정을 접하고 학업에 대한 동기를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반면 학부에서 한국어교육 또는 언어교육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자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학점을 이수하고 학부와 동일한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학부와 대학원은 졸업 이수학점에 비교적 큰 차이가 있으며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이수학점에서도 그를 기준으로 이수학점이 제시된다. 이로 인해 대학원과정의 경우 학부과정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하여도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므로 상급의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교육 내적으로는 충실한 교육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학위과정에서 운영되는 교육과

정은 학위과정별 기관에 따른 차별적인 교육과정이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비동일 계열 대학원 진학자들에 대한 교육 내용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위과정의 쟁점들은 학위과정 기관의 운영 과정 평가 및 과정을 통하여 배출되는 한국어교원에 대한 현황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위과정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서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제도 보완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관리의 효율성 및 교육과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2. 비학위과정의 쟁점들

2012년 하반기(11월 현재)에 국립국어원의 승인을 받은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은 총 135개에 이른다. 비학위과정은 대부분 대학 내 부설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지방 인력개발센터·종교 단체·사설 교육기관에서도 운영된다. 이러한 현황에서 비학위과정을 통한 자격 취득에 다음과 같은 쟁점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 운영기관에 대한 질적 관리를 제고하는 것이다. 2012년에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의 수는, 국어기본법이 통과된 초기와 비교할 때 6년 사이에 4배 이상 늘어났다. 3급 자격증 취득자의 수를 시험 합격률로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급증한 자격증 취득자는 주로 비학위과정을 통해 양산되었다. 이에 현재 비학위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운영기관의 수와 이에서 배출된 수강생의 수가 적절한지가 여러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

한편, 자격증 취득자를 관리하기 위한 시험 제도는 해당 시험의 난이도가 적절한가에 대한 적합성 논란을 낳기도 하였다. 비학위과정의 특성상, 자격증 수여자를 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로 보이지만, 이를 평가하는 도구가 지나치게 어렵고 지엽적이라는 지적 또한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과 연계하여,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서 수강생의 자격증 취득 여부를 비롯한 추후 관리를 어느 정도

로 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이 우려된다. 이러한 제반 사실들은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 대한 질적 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3급 자격증 취득자의 적합성 여부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

한국어교원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최근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운영기관의 양적 확대 및 자격 취득자 양산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운영기관의 승인이 교육 내용에 관한 서류 심사로만 결정되므로, 해당 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운영기관의 수는 더욱 확대된다. 이러한 현상은 연쇄적으로 3급 자격증의 효용성을 재고하게 한다. 향후 자격증에 대한 신뢰 저하, 수강생의 부족, 운영기관의 과정 미개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인식은 곧 3급 자격증의 불신으로 이어지므로, 운영기관의 수적인 문제와 질적 관리 제고는 중요한 쟁점이다.

둘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재점검하는 것이다. 주로 과정을 개설하는 연간 횟수, 과정 운영 기간, 운영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학위과정은 보통 6~12주 사이에 120시간을 이수하게 한다. 이때 각 기관은 전용 강의실, 기자재 구비, 전담 강사 자격 요건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운영 지침을 따른다 해도, 학교 상황별 운영 방침은 많이 다를 것이다. 여러 상황에서 운영 지침이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와 동시에 서류상 조건 구비로 실 운영상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우선 대학 내 기관과 외부 기관의 차이에 따라, 전임교원의 수와 질적인 우위의 확보 정도가 다를 것이다. 또한 운영의 내실을 결정할 운영자의 과정 이해 정도, 즉 과정 개설 목적과 영역별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를 것이다. 횟수보다 내용의 질이 중요한 참관 수업과 실습에 대해서도 운영기관별로 구체적 관리 내용이 다르다. 수료를 위한 출석률과 평가 횟수에 대한 규정에 대한 질적 관리도 기관별로 다른 형편이다. 이처럼 운영상 서류 요건의 구비 정도가 곧 실제 운영 내용과 동일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 제도로는 운영 사항 전반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면밀히 살피는 것은 물론, 이러한 현황이 확인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비학위과정의 교육과정에 대한 재논의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인증 과목의 범위, 영역별 과목 수 및 수업 시수 등이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 8년차를 맞은 현재, 초기에 설정한 영역 구분, 영역별 과목 수, 수업 시수의 적절성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시험 준비 혹은 현실적인 교육 능력 배양 등과 같은 수강생의 수강 목적에 따라 필요한 교과목과 수업 시수가 다르다.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실 수강자들이 해당 과정을 이해하는 데 충분한지, 현재의 교육과정이 사회적 요구와 수요에 적합한지를 다시 확인하자는 것이다.

현재 비학위과정은 교육과정을 엄격히 정해 두고 있어, 교과목 개설에 기관별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다. 기관에서는 국어기본법에서 지정된 다섯 영역의 과목을 개설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개설 교과목과 실제 수업 내용이 일치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교육과정으로 인해 예상 밖의 문제점이 생기기도 하였다. 현실적 요구와 교육과정의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이때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표준 강의안이 없는 현황에서 강의안별로 내용 편차가 클 것이나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교육과정이 얼마나 충실히 구현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전문적인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양성기관이 판단하는 교육과정 일치도 뿐만 아니라, 수강생이 보는 교육과정 일치도를 함께 참고하며 교육과정의 구현 정도를 확인해 가야 할 것이다.

비학위과정과 관련된 현 제반 사항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1, 2, 3급의 교원 자격증을 재검토하게 한다. 이에 실제 현장에서 이 자격증이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커졌다. 자격증 취득자와 수요자에게 3급 자격증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3급 자격증이 교육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 해당자의 승급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운영기관의 측면에서는 양성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닌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또한 국가 관리기관의 측면에서는 인증 제도의 유지 혹은 수정이 쟁점이 된다. 이에 양성기관과 한국어교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여, 한국어교원의 체계적인 양성과 지원, 그리고 관리 정책의 수립에 대한 논의를 위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

하겠다.

3. 자격증 심사제도 관련 쟁점들

자격증 심사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다루고자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자격증 신청 관련, 자격증 심사 관련, 자격증 취득 관련 등으로 나뉜다.

첫째, 자격증 신청 관련된 쟁점은 ‘심사 시기’와 ‘신청 절차’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연 3회(1차: 2월 말~4월, 2차: 8월 말~10월, 3차: 12월 중순~1월)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학부 및 대학원 졸업 기간과 상이하여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야 할 경우 문제가 발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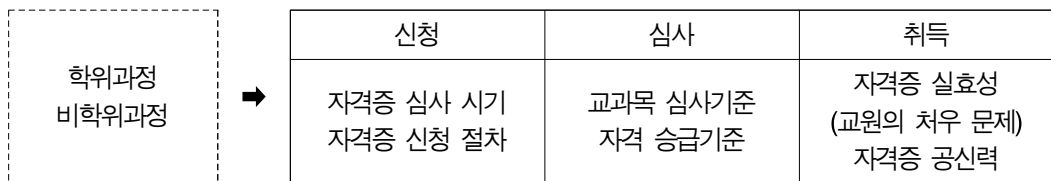
자격증 신청 절차에 있어서도 현재까지는 대학·기관별 심사가 끝난 후 개인 자격 심사를 신청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고 신청 절차가 번거로운 점 등 절차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노정된다. 보고서 후반부에 상술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관 인증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자격증 신청 및 발급의 편의성 확보,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 취득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격증 심사와 관련된 쟁점은 ‘교과목 심사기준’과 ‘자격 등급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현행 한국어교원자격제도의 교과목 심사는 사전에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교과목을 심사하여 문제가 있는 교육과정 등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10년 1월부터 시행). 이때 교과목명과 강의계획서만을 기준으로 과목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기준이나 내용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자격 등급기준의 경우, 3급 자격증 소지자가 2급으로 승급하려면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및 경력 인정 범위 내에서 자격 취득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의 강의 경력과 취득 이후 총 강의 시수 1,200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2급 자격증 소지자의 1급 승급은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및 경력 인정 범위 내에서 자격 취득일로부터 최소 만 5년 이상의 강의 경력과 취득 이후 총 강의 시수 2,000시간이 충족되어야 한다. 경력

및 강의 시수만으로 자격이 승급되기 때문에 강사의 수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승급기준(3년 1,200시간/5년 2,000시간)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셋째,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쟁점은 ‘자격증 실효성(교원의 처우 문제)’과 ‘자격증 공신력’에 대한 문제로 대별된다. 자격증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과 승급을 해도 처우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현행 자격제도에서는 각 급 구분에 따른 이점을 발견할 수 없어 승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교원의 지위 확보, 저임금, 고용 불안 등의 교원의 처우 문제, 교원 등급(1~3급)별 차등화 대우 등은 자격증 실효성 문제의 가장 큰 쟁점이다.

한국어교원 자격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인식, 홍보 등의 부족으로 해외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등 자격증 공신력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다양한 취득 경로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가 양산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는 인식이 자격증 자체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보고서 후반부에 상술되겠지만,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승급 심사기준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하고, 학사 2급, 학사 3급, 석사 2급, 박사 2급 등 자격에 따른 근로 기준과 임금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추진하는 한국어교육 사업과 연계하여 취업하게 하거나, 지역의 교육기관과 연계하는 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공교육기관에서 고용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금까지의 자격증 심사제도와 관련한 쟁점들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8> 한국어교원 자격증 심사제도 관련 쟁점

제4장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실태 조사

제1절 학위과정

1. 학부과정

1) 조사 기관 현황

학위과정 중 일반 학부과정에 대한 조사는 전국의 각 대학에서 운영 중인 학부과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 기관을 지역별로 보면 일반 학부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그런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나 부산 등 인구 밀집 지역에 비해 인구나 대학의 비율로 볼 때 그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활성화되어 있었다. 조사 대상 기관의 전국적 분포 및 응답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학위과정(학부) 운영기관 및 응답 기관 수(2012년 9월 현재)

	운영기관	응답 기관	응답률(%)
서울	1	1	100
경기·인천	1	1	100
강원	2	2	100
충북	2	2	100
대전·충남	4	4	100
전북	3	3	100
광주·전남	4	3	75
대구·경북	5	4	80
부산·울산·경남	1	1	100
총계	23	21	91

다음으로 2012년 9월 현재 한국어교육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23개 대학 중 조사에 응한 21개 대학과 각 대학의 학과(또는 전공) 명칭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학위과정(학부) 응답 기관 목록(명칭)

연번	학교명	학과(전공)
1	경동대학교	한국어교원과
2	경주대학교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4	계명대학교	한국문화정보학과
5	광신대학교	국제한국어교원과
6	대구대학교	국제한국어교육과
7	대구한의대학교	한국어문학부 (한국어학전공)
8	배재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9	부산외국어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10	선문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
11	세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12	세한대학교	국제한국어교육학과
13	우석대학교	한국어학과
14	우송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과
15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16	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
17	중원대학교	한국학과
18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과
19	한중대학교	한국어다문화과
20	호남대학교	한국어학과
21	호원대학교	한국어학과

2) 조사 과정

이 조사는 이메일을 통한 조사지 배포 및 회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조사에 대한 회신 내용은 기관별 담당자를 통하여 확인 및 작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2012년 9월 현재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를 통과하여 기관 승인을 받은 23개 대학 중 과정 운영이 중단된

한 곳을 제외하고, 아직 기관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실제로 한국어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이 시작된 한 곳을 더하여, 최종적으로 23개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메일과 전화 조사를 통해 응답이 이루어진 21개 기관을 최종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과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림 9> 학위과정(학부) 조사의 흐름

3) 조사 결과

가. 운영 전반

과정의 명칭을 조사한 결과 학과 혹은 전공의 명칭이 아래 <표 10>과 같이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명칭은 ‘한국어학과’였다. 총 21개 기관 중 5개 학과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학위과정(학부)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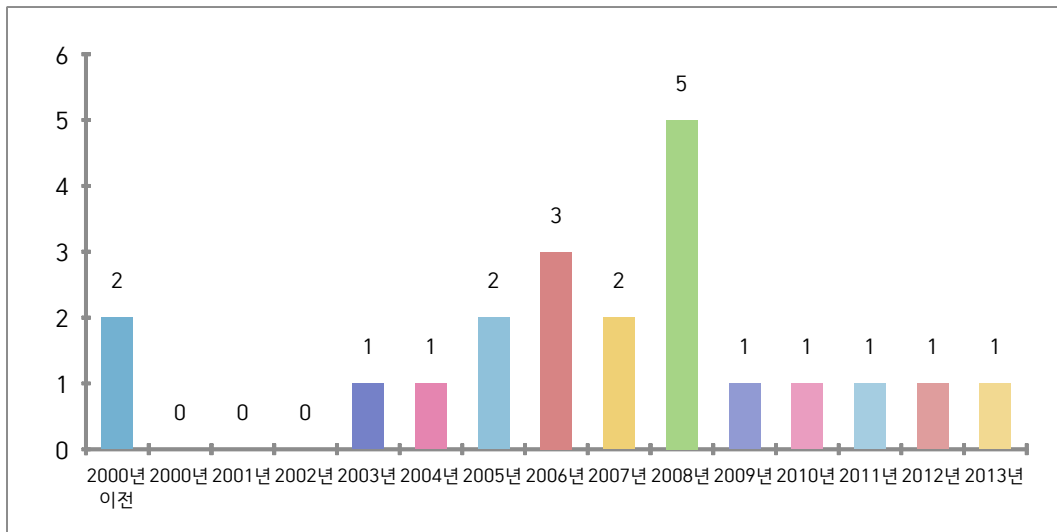
구분	학과/전공 명칭	과정 수
학과	한국어학과	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2
	한국학과	1
	한국언어문화학과	1
	한국언어문화전공과	1
	한국어문학과	1
	한국어디문학과	1
	한국어교육과	1
	한국어교원과	1
	한국문화정보학과	1
	국제한국어교육학과	1
	국제한국어교육과	1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국제한국어교원과	1
전공	한국어문학부 한국어학전공	1
	한국어문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1
총계		21

각 과정이 개설된 시기를 조사한 결과, 각 기관의 학과 개설 시기는 한국외대(1974년), 경희대(1999년), 계명대(2003년), 배재대(2004년)를 제외하고는 2005년에서 2012년으로 대부분 국어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로 볼 수 있다. 특히 2008년에 5개 대학에서 한국어교육 전공을 개설한 것이 눈에 띄는 현상이다. 조사 기관

중 한 곳은 2013년에 한국어문학과를 개설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1> 학위과정(학부) 개설 시기

개설 연도	과정 수	개설 연도	과정 수
2000년 이전	2	2007년	2
2000년	0	2008년	5
2001년	0	2009년	1
2002년	0	2010년	1
2003년	1	2011년	1
2004년	1	2012년	1
2005년	2	2013년	1
2006년	3	합계	21



<그림 10> 학위과정(학부) 개설 시기

과정의 재학생 수를 살펴보면, 각 과정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재학생이 91~120명인 과정이 6개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적게는 30명 이하인 과정이 2개, 많게는 200명 이상인 과정이 2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최대치와 최소치는 각각 239명과 20명이었다. 기타 사항으로, 외국인 유학생으로만 충원된 학과도 있었다.

<표 12> 학위과정(학부) 재학생 수

재학생 수	과정 수
30명 이하	2
31 ~ 60명	2
61 ~ 90명	3
91 ~ 120명	6
121 ~ 150명	1
151 ~ 200명	4
200명 이상	2
기타(외국인 유학생만)	1
합계	21

과정의 개설 형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조사지에 응답하지 않은 1개의 기관을 제외하고 19개 과정에서 주전공으로 개설하고 있었다. 이 중 3개 기관에서는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이 모두 운영되고 있으며, 한 곳에서는 복수전공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3> 학위과정(학부) 개설 형태

구분	과정 수
주전공	19
복수전공	4
부전공	3
연계전공	0
학점은행제	0
무응답	1

나. 영역별 개설 과목 수

<표 14>는 기관별 전체 개설 교과목 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31~40개 과목을 개설하는 과정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50개 이상이 개설되는 과정이 2개 있었다. 교과목 수 15개로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최소 기준의 교과목만 개설하는 과정도 1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4> 학위과정(학부) 개설 과목 수

과목 수	과정 수
15 이하	1
16 ~ 20	0
21 ~ 30	7
31 ~ 40	10
41 ~ 50	1
50 이상	2
합계	21

<표 15>는 영역별 교과목 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영역별 과목 수는 각 기관의 학사규정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든 기관에서 1영역부터 5영역까지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관련 학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는데, 일부 기관에서는 영역별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학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학위과정(학부) 영역별 개설 과목 수(1·2·4영역)

과목 수	과정 수		
	1영역	2영역	4영역
2 이하	4	8	2
3 ~ 4	7	11	7
5 ~ 6	5	2	6
7 이상	5	0	6
합계	21	21	21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영역별 개설 교과목을 살펴보면 최소 2과목 이상을 제공해야 하는 1영역, 2영역, 4영역에서 3~4과목을 개설하는 기관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최소 기준만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2과목만을 열어 주는 기관도 영역별로 각각 4개, 8개, 2개씩 있었다.

<표 16> 학위과정(학부)
영역별 개설 과목 수(3영역)

3영역	
과목 수	과정 수
8 이하	3
9 ~ 12	14
13 이상	4
합계	21

<표 17> 학위과정(학부)
영역별 개설 과목 수(5영역)

5영역	
과목 수	과정 수
1 이하	14
2 ~ 3	6
4 이상	1
합계	21

한편 최소 8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3영역과 교육 실습 관련 교과목 1개 이상을 수강하도록 하는 3영역과 5영역에서는 각각 9~12과목, 1과목을 개설하는 기관이 가장 많았다.

다. 졸업 및 자격 취득 현황

과정별 졸업 이수학점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100학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중 졸업 이수학점이 130학점 이상 또는 140학점 이상인 과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의 최대치와 최소치는 각각 154학점과 98학점으로 그 편차가 매우 컸다.

<표 18> 학위과정(학부) 졸업 이수학점의 분포

졸업 이수학점	
학점 수	과정 수
100 이하	1
101 ~ 130	5
131 ~ 140	10
141 이상	2
무응답	3
합계	21

전공별 이수학점을 조사한 결과, 각 과정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단일 전공 이

수학점은 51~60학점인 과정이 가장 많았고, 제1 전공인 경우는 50학점 이하를 요구하는 기관이 제일 많았다. 한편 복수전공은 31~4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 8개로 가장 많았고 41~50학점 이수가 6개로 뒤를 이었다. 복수전공 이수학점이 가장 적은 1개소와 가장 많은 1개소를 비교하면 각각 15학점과 54학점으로 그 차이가 매우 컸다.

<표 19> 학위과정(학부) 전공별 이수학점의 분포(단일 전공 · 제1 전공)

학점 수	전공 수	
	단일 전공	제1 전공
50 이하	2	8
51 ~ 60	13	4
61 ~ 70	3	0
71 이상	3	1
무응답	0	8
합계	21	21

<표 20>은 학위 수여 조건을 조사한 결과이다. 6개의 과정이 논문을 학위 수여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졸업시험’이 제일 많았으며(11개 기관), 그 외에 ‘학점’, ‘한국어능력시험’, ‘한자능력시험’, ‘외국어인증’ 등으로 응답했다.

<표 20> 학위과정(학부) 학위 수여 조건

수여 조건	과정 수
논문	6
포트폴리오	1
추가과목 이수	1
실습	0
기타	11
논문+기타	1
포트폴리오+기타	1
합계	21

조사 대상 기관 전체의 졸업자, 취업자, 자격증 취득자, 한국어교육 종사자 수를 정리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그런데 인원수에 대한 정보는 각 운영기관에서 별도의 조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정확히 관리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일부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다. 학과 개설 시점이 오래 되지 않아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한 기관도 있었다.

<표 21> 학위과정(학부) 졸업생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졸업자 수	96	162	191	246	300	378	1,373
취업자 수	33	45	53	49	72	93	345
자격증 취득자 수	18	92	112	72	91	107	492
한국어교육 종사자 수	13	24	25	18	27	29	136

라. 전임교원 및 강사 현황

과정별 전임교원의 수를 조사한 결과, 1~3명인 과정이 13개로 가장 많았고, 4~6명인 과정이 6개, 7~9명인 과정이 2개로 조사되었다. 전임교원의 수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2> 학위과정(학부) 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수	과정 수
1 ~ 3명	13
4 ~ 6명	6
7 ~ 9명	2
10명 이상	0
합계	21

전임교원의 전공을 조사한 결과, 국어학과 국문학 전공자가 각각 26명과 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어교육 전공자는 11명이었다. 총 전임교원의 수는 73명으로 집계되었으나 1개 기관에서 교원 1명의 전공에 대해 응답하지 않아 전공 분포

가 파악된 경우는 72명이다.

<표 23> 학위과정(학부) 전임교원 전공 분포

	국문학	국어학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외국 어학	외국어 교육학	문학 및 문학교육	기타	무응답	합 계
교원 수	26	24	0	11	4	3	0	4	1	73

전임교원의 학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전임교원 73명 가운데 67명이 박사 졸업으로, 전임교원의 대부분이 박사 학위 소지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응답의 2명은 '석사 졸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4> 학위과정(학부) 전임교원 학력

구분	교원 수
박사과정	0
박사과정 수료	2
박사과정 졸업	67
기타	2
무응답	2
합계	73

전임교원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조사한 결과는 <표 25>와 같이 나타났다. 경력 기간이 1년 미만인 교원이 12명인 데 비해 경력 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도 18명에 달하여 한국어교육 경력에서 전임교원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학위과정(학부) 전임교원 한국어교육 경력

구분	교원 수
1년 미만	12
1년 이상 ~ 5년 미만	22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18
무응답	6
합계	73

과정별 시간강사 수를 조사한 결과, 3명 이하가 6개, 3명 초과 6명 이하가 5개, 6명 초과 9명 이하가 6개, 9명 초과가 3개로 과정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응답의 최대치와 최소치는 각각 20명과 1명이었다. 이 결과로 볼 때 학부과정은 대학원과정 에 비해 시간강사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학위과정(학부) 시간강사 수

시간강사 수	과정 수
3명 이하	6
6명 이하	5
9명 이하	6
9명 초과	3
무응답	1
합계	21

시간강사의 자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 21개 과정 중 10개 과정이 박사 수료 이상을 최소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 과정이 박사 이상으로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교육 경험’, ‘박사 수료인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논문 2편 이상’ 등이 있었다.

<표 27> 학위과정(학부) 시간강사 자격

강사 자격	과정 수
석사 이상	3
박사 재학 이상 ⁶⁾	3
박사 수료 이상	10
박사 이상	4
무응답	1
합계	21

마. 외국인 유학생 입학 전형 및 관리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방식을 조사한 결과, <표 28>과 같이 기관별로 다양한 방식을 병행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면대면 관리’ 방식이 주를 이루고 온·오프라인 공지로 보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학과사무실 개인 방문, 학년별 학생모임을 통한 공지, 상담지도교수제도, 학습도우미제도, 행정조교의 지도, 학과장 면담 등이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28> 학위과정(학부)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방식

관리 방식	과정 수
1	7
2	0
3	1
4	2
1, 2	2
1, 3	1
2, 3	1
1, 2, 3	6
무응답	1
총계	21

번호	관리 방식
1	면대면 관리
2	온오프라인으로 공지사항 게시
3	학과 사무실을 개인이 방문
4	기타

<표 29>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 전형 방법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6) 박사과정 1학기 이상인 과정이 두 곳, 박사과정 3학기 이상인 과정이 한 곳 있었다.

표에서 보이듯이 입학 전형 방법 역시 과정별로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TOPIK과 같이 공인된 어학 성적을 보는 과정이 전체 21개 과정 중(복수응답 포함) 15개로 가장 많았고 자체 시험을 보는 과정은 5개 과정이었다. 이 외 기타 응답으로 '대학 입학기준 적용' 등이 있었다.

<표 29> 학위과정(학부) 외국인 유학생 입학 전형 방법

조건	과정 수
1	0
2	1
3	5
4	0
5	1
6	1
1, 2	2
1, 3	1
2, 3	5
2, 5	1
3, 4	1
3, 5	1
1, 2, 3	2
총계	21

번호	구분
1	자체시험
2	면접
3	공인된 어학성적
4	서류전형
5	교환/자매 학교
6	기타

출석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1개 과정 중 17개 과정이 담당교원이 수업 전에 매일 확인하는 방식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전자출결', '학생직접표시' 등이 있었다.

<표 30> 학위과정(학부) 출석 관리 현황

출석 관리	과정 수
담당교원이 매일 확인	17
기타	2
무응답	2
합계	21

바. 한국어교육 실습

<표 31>은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의 운영 방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학습자 대상 수업 실습과 모의수업, 수업 참관, 이 세 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과정이 21개 과정 중 1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해외 대학 교육 실습’, ‘학기당 3학점 수강 및 3주 교육기관 실습’ 등이 있었다.

<표 31> 학위과정(학부)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방식

운영 방식	과정 수
1	1
2	1
3	1
4	1
1, 3	2
1, 2, 3	13
1, 2, 3, 4	1
무응답	1
합계	21

번호	운영 방식
1	학습자 대상 수업 실습
2	모의수업
3	수업 참관
4	기타

참관 협조 가능 연계 기관 유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하지 않은 1개의 과정을 제외하고 20개의 과정이 교육 실습을 위한 참관 협조가 가능한 연계 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학위과정(학부) 참관 협조 가능 연계 기관 유무 여부

기관 유무	과정 수
있다	20
없다	0
무응답	1
합계	21

참관 협조가 가능한 연계 기관의 소속을 조사한 결과, 21개의 과정 중 내부 기

관인 한국어교육원(또는 언어교육원)의 협조를 받는 과정이 18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외부 기관이나 국외 기관의 협조를 받는 과정이 각각 3개씩으로 조사되었다.

<표 33> 학위과정(학부) 참관 협조 가능 연계 기관 소속

기관 세부 유형	과정 수
1	13
2	2
3	0
4	0
5	0
1, 2	1
1, 3	1
1, 5	1
1, 2, 3	2
무응답	1
합계	21

번호	기관 종류
1	내부 기관
2	외부 기관
3	국외 기관
4	1회성 모의 강의
5	기타

실습 수업을 위해 협조가 가능한 연계 기관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하지 않은 1개의 과정을 제외하고는 20개의 과정이 실습 협조 가능 연계 기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4> 실습 협조 가능 연계 기관 유무 여부

기관 유무	과정 수
있다	20
없다	0
무응답	1
합계	21

실습 협조가 가능한 연계 기관의 소속을 조사한 결과, 참관 수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부 기관인 한국어교육원(또는 언어교육원)의 협조를 받는 과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21개 과정 중 17개 과정이 이런 형태로 실습 협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학위과정(학부) 실습 협조 가능 연계 기관 소속

기관 세부 유형	과정 수
1	11
2	2
3	1
4	0
5	0
1, 2	2
1, 3	2
1, 2, 3	2
무응답	1
합계	21

번호	기관 종류
1	내부 기관
2	외부 기관
3	국외 기관
4	1회성 모의 강의
5	기타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의 평가 방식을 조사한 결과, 참관 보고서 제출을 기본으로 하여 여타의 평가 방식을 병행하는 과정이 가장 많았다. 특히 한국어 시장 방식이 보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기타 응답으로 ‘교원의 평가’, ‘실습보고서’, ‘실습 관련 주제 논문 요약 발표’ 등이 있었다.

<표 36> 학위과정(학부)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평가 방식

평가 방식	기관 수
1	2
2	0
3	0
4	0
5	0
6	1
1, 2	1
1, 2, 3	3
1, 2, 3, 6	1
1, 3	2
1, 3, 4, 5	1
1, 3, 4, 5, 6	1
1, 3, 5	2
1, 3, 6	1
1, 5	1
1, 6	2
2, 4	1
2, 6	1
4, 6	1
합계	21

번호	구분
1	참관 보고서
2	지필 시험
3	한국어 시강
4	모의수업
5	지도안 제출
6	실습 보고서

실습 교과목의 수강 조건을 조사한 결과, ‘특정 학기 이상 수강’을 조건으로 두고 있는 과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과정 중 (복수응답을 포함해) 19개 과정에서 특정 학기 이상을 수강한 학생에게만 실습 교과목의 신청을 허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경우 4학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6개, 3학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13개로 나타났다.

<표 37> 학위과정(학부) 실습 교과목 수강 조건

조건	과정 수
1	13
2	1
3	0
1, 2	6
2, 3	1
합계	21

번호	구분
1	특정 학기 이상
2	특정 강의 수강자
3	특정 학점 이상 이수

2. 대학원과정

1) 조사 기관 현황

학위과정 중 대학원과정에 대한 조사는 전국의 각 대학원 운영 실태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표 38>은 조사 대상의 지역별 분포를 대학원 유형별로 제시한 것이다. 대학원 과정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충남권, 부산·경남권 순으로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8> 학위과정(대학원) 응답 기관 수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기타	총계
서울	14	5	2	21
경기·인천	5	2	0	7
강원	0	1	0	1
충북	2	1	0	3
대전·충남	7	3	2	12
전북	0	1	1	2
광주·전남	4	1	2	7
대구·경북	3	0	1	4
부산·경남	3	6	0	9
총계	38	20	8	66

다음으로 2012년 9월 현재 조사에 응한 66개 대학원의 과정명을 정리하면 <표 39>와 같다.

<표 39> 학위과정(대학원) 응답 기관 목록(명칭)

연 번	과정명	연 번	과정명	연 번	과정명
1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23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45	이화여자대학교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한국어교육과
2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24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46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한국어교육 전공
3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문화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25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협동과정)	47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4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26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48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교육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5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학 전공	27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49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6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문화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28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50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 협동과정
7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	29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학과 한국언어문화 전공	51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
8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30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전공	52	중부대학교 인문산업대학원 한국어학과
9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	31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학과 한국어교육 전공	53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어교육학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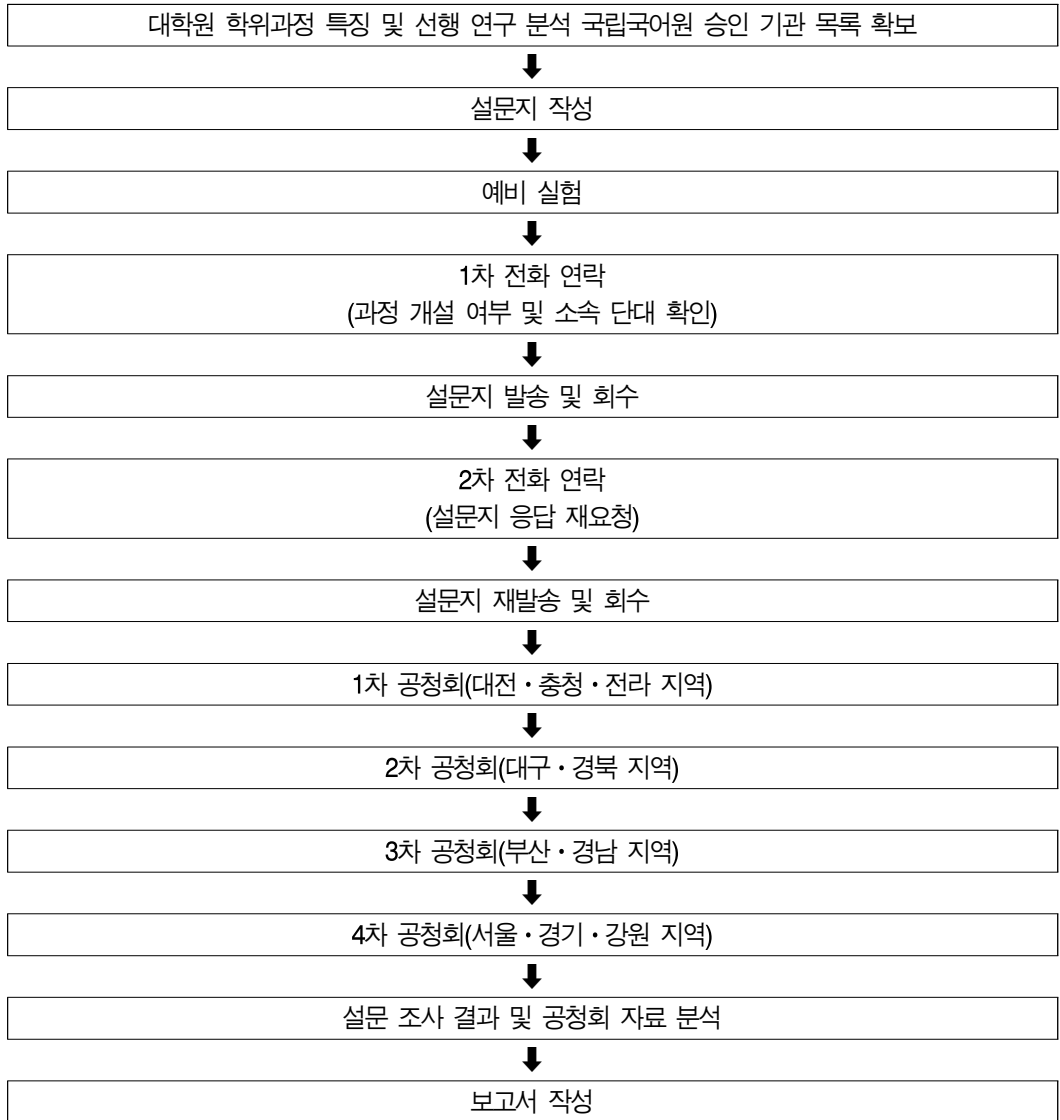
10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32	선문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54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
11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협동과정)	33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어교육학 전공	55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어교육학 전공
12	광신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어교원학과	34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제한국어교육 전공	56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
13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한국어문학과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전공	35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	57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14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다문화한국어교육 전공	36	송실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	58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15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37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59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16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38	안동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전공	60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17	대진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39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정보학 협동과정 한국어교육정보학 전공	61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
18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40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학 협동과정 한국어교육 전공	62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어언어문화 전공
19	동덕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학과(협동과정)	41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63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 전공
20	동신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원학과	42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협동과정)	64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전공

21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43	우석대학교 경영행정문화대학원 한국어지도학과 한국어지도학 전공	65	호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22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44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학과 한국어학 전공	66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어교육 전공

2) 조사 과정

대학원 학위과정의 조사 대상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2년 9월 현재로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를 통과하여 기관 승인을 받은 대학원 과정의 목록(총 79개 오프라인 대학원 학위과정)을 확보하였다. 79개 과정 중 이미 과정을 폐지하였거나, 2013년 1학기 개설 예정으로 아직 미개설 상태인 2개 과정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77개 과정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77개 과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응답한 과정은 66개 과정으로 회수율은 약 86%이다.

조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차 전화 조사로 과정 개설 여부와 소속된 단대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과정 운영 담당자 명단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설문지를 발송하고 회수하였다. 그리고 2회에 걸쳐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네 차례의 공청회에서 얻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 과정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학위과정(대학원) 조사의 흐름

3) 조사 결과

가. 운영 전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표 40>과 같이 나타났다. 일반대학원에 개설된 과정이 총 37개 과정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대학원에 소속된 경우가 21개 과정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대학원에 속한 경우도 3개 과정이 있었다. 그 외의 경우는 사회개발대학원, 전문대학원, 경영행정문화대학원,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인문산업대학원에 속한 과정들이 있었다.

<표 40> 학위과정(대학원) 유형

구 분	과정 수
일반대학원	37
교육대학원	21
국제대학원	3
기타	5
합계	66

학과, 전공, 협동과정 등의 명칭은 다음 <표 41>과 같다. 과정의 명칭을 조사한 결과 학과 혹은 전공의 명칭이 지나치게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과나 전공 등 과정의 유형에 관계없이 가장 빈번히 사용된 명칭은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이었다.⁷⁾ 총 2개 학과, 23개 전공, 2개 협동 과정에서 해당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 다음 ‘한국어교육(학)’은 4개 학과, 16개 전공, 2개 협동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도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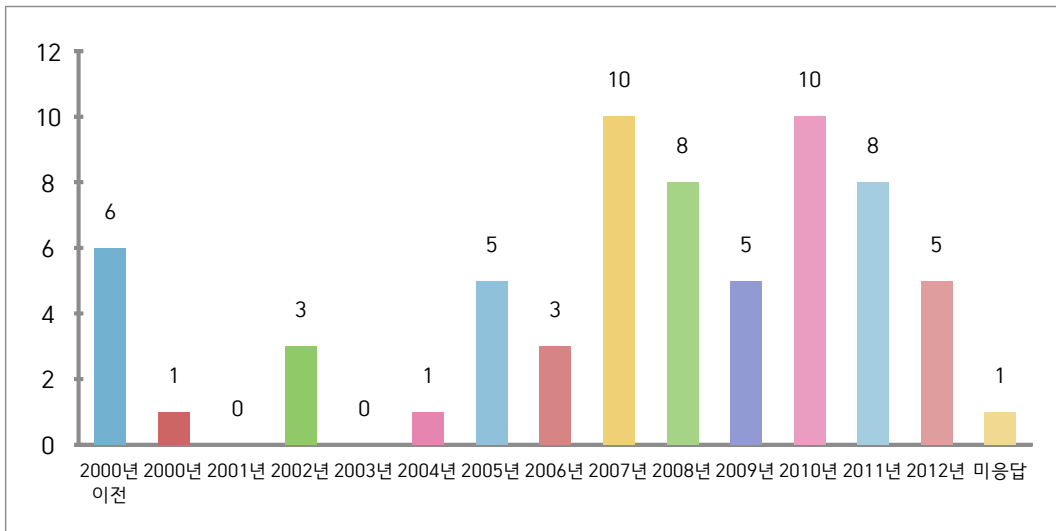
<표 41> 학위과정(대학원) 명칭

구 분	명 칭	과정 수
학 과	한국어교육학과	3
	한국어교원학과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2
	한국어학과	1
	한국어교육과	1
	국어국문학과	1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1
전 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23
	한국어교육(학) 전공	1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학) 전공	3
	한국언어문화 전공	2
	국제한국어교육 전공	1
	다문화한국어교육 전공	1
	한국어지도학 전공	1
	한국어학 전공	1
협동과정	언어정보학 협동과정 한국어교육정보학 전공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협동과정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협동과정	1
	한국어교육학 협동과정	1
	한국어교육학과 협동과정	1
	한국어학과 협동과정	1
	한국학 협동과정 한국어교육 전공	1
총계	66	

과정이 개설된 시기는 2005년 이후부터 해마다 과정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982년 연세대에 과정이 처음 개설된 이래 2004년까지 개설된 과정이 총 10개에 불과한 데 반해, 2005년 이후부터는 해마다 3~10개 과정이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2> 학위과정(대학원) 개설 시기

개설 연도	과정 수	개설 연도	과정 수
2000년 이전	6	2007년	10
2000년	1	2008년	8
2001년	0	2009년	5
2002년	3	2010년	10
2003년	0	2011년	8
2004년	1	2012년	5
2005년	5	무응답	1
2006년	3	합계	66



<그림 12> 학위과정(대학원) 개설 시기

과정의 정원수를 살펴보면, 정원이 10~29명인 과정이 가장 많았으며, 정원이 50명 이상인 과정도 1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62개 과정에서 합산한 총 정원은 2,152명이며, 과정별 평균 정원은 34.7명으로 조사되었다.⁸⁾

8) '기타'로 표시된 4개 기관은 정원을 표기하지 않고 '제한 인원 없음', '대학원 정원제' 등으로 응답한 기관들이다.

<표 43> 학위과정(대학원) 정원 수

정원 수	과정 수
0 ~ 9명	3
10 ~ 19명	19
20 ~ 29명	13
30 ~ 39명	6
40 ~ 49명	7
50명 이상	14
기타	4
합계	66

과정의 개설 형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1개 과정을 제외한 65개 과정에서 해당 전공을 주전공으로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⁹⁾

<표 44> 학위과정(대학원) 개설 형태

구분	과정 수
주전공	65
복수전공	1
부전공	0
연계전공	0
학점은행제	0
무응답	1

나. 영역별 개설 과목 수

<표 45>는 학기별 개설 교과목 수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대체로 2~6개 과목이 개설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학기별로 3개 과목이 개설되는 과정이 총 15~16개 과정으로 그 수가 가장 많았다. 3개 과목이면 6~9학점이 개설되는 것으로 졸업에 필요한 최소치의 교과목을 개설하는 과정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또, 한 학기에 2개 과목만이 개설되는 과정도

9) 주전공과 복수전공 모두 운영하고 있는 과정(1개 과정)은 복수 응답 처리하였다.

8~9개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⁰⁾

<표 45> 학위과정(대학원) 학기별 개설 과목 수(과정 수)

과목 수 학기	0	1	2	3	4	5	6	7	8	9	10 이상	기타
1학기	0	1	8	16	11	6	8	1	4	2	6	3
2학기	0	0	9	16	7	11	7	0	3	3	7	3
3학기	0	1	8	16	10	6	7	0	4	3	8	3
4학기	0	2	8	15	6	10	7	2	2	5	6	3
5학기	24	1	7	7	5	4	6	0	3	2	4	3

<표 46>은 영역별 교과목 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1영역의 경우, 2~3개 과목을 개설한 과정이 가장 많았고(총 25개 과정), 2영역의 경우는 1~3개 개설한 과정이 많았다(총 41개 과정). 영역별로 교과목 개설 현황을 분석해 보면, <표 46>과 같이 1, 2영역 개설 교과목의 다양성면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지 않아 학생에게 교과목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때문에 학부에서 어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이 어학 관련 전공 지식 보충할 기회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¹¹⁾ 3영역의 경우는 10개 이상 개설한 과정도 38개 과정으로, 교과목이 상당히 다양하게 개설되는 편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4영역의 경우는 2~3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과정이 많았다(총 32개 과정).

이러한 조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자격 취득에 필요한 최소치에 가까운 수의 과목만 개설하고 있는 과정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¹²⁾ 표면적으로는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영역별 기준을 만족시켜 2급 교원 양성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영

10) ‘매번 다름’, ‘학기 구분 없이 개설’ 등으로 응답한 과정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1, 2학기 개설 과목에만 응답한 기관은 1, 3학기나 2, 4학기를 각각 동일하게 처리하였으며, 교육대학원의 경우는 5학기를 1학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마찬가지로 1학기, 2학기, 3학기 개설 현황에 대해서만 응답한 기관은 1학기 2학기를 3학기 4학기, 3학기를 5학기로 처리하였다. 또, 5학기는 23개 기관이 응답하지 않았는데, 응답하지 않은 기관 중 두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일반대학원이므로 통례상 5학기 과정은 없다고 가정, 모두 0으로 처리하였다.

11) 교과목 개설에 대한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3개 기관을 제외한 총 63개 기관에 대한 자료이다.

12) 한 과정의 경우, 1영역과 2영역을 합쳐 1개 과목이 개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에서는 편의상 1, 2영역 각각 1개 교과목이 개설되는 것으로 표시하였음을 밝혀 둔다.

역별 교과목 개설 여부만을 교육과정의 질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표 46> 학위과정(대학원) 영역별 교과목 개설 현황(과정 수)

영역 \ 과목 수	0	1	2	3	4	5	6	7	8	9	10 ~ 14	15 ~ 19	20 ~ 24	25 ~	무응답
1영역	0	5	15	10	7	6	5	5	4	1	1	3	0	1	3
2영역	0	13	13	15	7	3	4	1	1	2	3	1	0	0	3
3영역	0	0	0	3	4	3	3	1	4	7	17	15	3	3	3
4영역	0	6	14	18	5	4	5	1	2	1	3	2	0	2	3
5영역	1	42	11	5	1	1	1	0	0	0	1	0	0	0	3

다. 졸업 및 자격 취득 현황

과정별 졸업 이수학점을 조사한 결과, 일반대학원에 개설된 경우는 졸업 이수학점이 24학점인 과정이 가장 많았다. 일반대학원에 개설된 37개 과정 중 26개 과정에서 24학점으로 졸업 이수학점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대학원에 개설된 경우는 전체 21개 과정 중 10개 과정이 졸업 이수학점이 30~35학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 학위과정(대학원) 졸업 이수학점

졸업 이수학점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대학원	기타	합계
0 ~ 23학점	0	0	0	0	0
24학점	26	4	1	1	32
25 ~ 29학점	4	6	0	0	10
30 ~ 35학점	6	10	1	2	19
36학점 이상	1	0	1	1	3
무응답	0	1	0	1	2
합계	37	21	3	5	66

<표 48>은 학위 수여 조건을 조사한 결과이다. 대부분의 과정이 논문 혹은 논

문을 포함해 다른 부가적인 조건을 학위 수여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여 조건이 논문 제출을 포함하고 있는 과정은 총 62개 과정(53: 논문만, 5: 논문+추가과목 이수, 4: 논문+기타)이다.

<표 48> 학위과정(대학원) 학위 수여 조건

수여 조건	과정 수
논문	53
포트폴리오	1
추가과목 이수	0
기타	3
논문+추가과목 이수	5
논문+기타	4
총계	66

졸업자, 취업자, 자격증 취득자, 한국어교육 종사자 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49>와 같다. 다만, 인원수에 대한 정보는 각 운영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응답을 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수치로 응답한 기관이 많았다. 설문에 응답한 학교의 약 1/3에 해당하는 24개 대학이 졸업생의 자격 취득 여부, 한국어교육 종사 여부 등에 있어서 확인이 불가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9> 학위과정(대학원) 졸업생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졸업자 수	89	140	225	316	456	415	1641
취업자 수	25	66	128	181	249	179	828
자격증 취득자 수	33	56	119	158	210	194	770
한국어교육 종사자 수	21	42	79	117	148	115	522

라. 전임교원 및 강사 현황

과정별 전임교원의 수를 조사한 결과, 전임교원이 한 명도 없는 과정이 3개, 1~3명인 과정이 15개, 4~6명인 과정이 17개, 7~9명인 과정이 21개이며, 10명 이

상인 과정은 8개로 조사되었다. 전임교원의 수가 과정별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0> 학위과정(대학원) 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수	과정 수
0	3
1 ~ 3명	15
4 ~ 6명	17
7 ~ 9명	21
10명 이상	8
무응답	2
합계	66

전임교원의 전공을 조사한 결과, 국어학과 국문학 전공자가 각각 150명과 1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어교육 전공자는 36명이었다.

<표 51> 학위과정(대학원) 전임교원 전공

	국문학	국어학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외국어학	외국어 교육학	문학 및 문학교육	기 타	합 계
교원 수	150	124	20	36	8	10	7	17	372

전임교원의 학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전임교원의 수 353명 가운데 315명이 박사 학위 소지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 학위과정(대학원) 전임교원 학력

구분	교원 수
박사 과정	34
박사 수료	4
박사 졸업	315
합계	353

전임교원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조사한 결과는 <표 53>과 같이 나타났다. 경력 기간이 1년 미만인 교원이 71명인 데 반해 경력 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도 53명에 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어교육 경력에 있어 전임교원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표 53> 학위과정(대학원) 전임교원 한국어교육 경력

구분	교원 수
1년 미만	71
1년 이상 ~ 5년 미만	79
5년 이상 ~ 10년 미만	63
10년 이상	53
합계	266

과정별 시간강사 수를 조사한 결과, 시간강사의 수가 3명 이하인 과정이 총 41개 과정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원과정의 경우, 시간강사 의 존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54> 학위과정(대학원) 시간강사 수

시간강사 수	과정 수
0	6
0 ~ 3	41
4 ~ 6	13
7 ~ 9	4
10 ~	2
합계	66

시간강사의 자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 66개 과정 중 37개 과정이 자격을 박사 이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3개 과정이 박사 수료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3년 이상 경력의 현직 교수(조교수 이상)’, ‘한국어교육기관 전임교수 이상’,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등이 있었다.

<표 55> 학위과정(대학원) 시간강사 자격

강사 자격	과정 수
석사 이상	4
박사 재학 이상 ¹³⁾	0
박사 수료 이상	23
박사 이상	37
무응답	2
합계	66

마. 외국인 유학생 입학 전형 및 관리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방식을 조사한 결과, <표 56>과 같이 다양한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6> 학위과정(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방식

관리 방식	과정 수
1	8
2	5
3	4
4	3
1, 2	12
1, 3	2
2, 3	7
2, 4	1
1, 2, 3	13
1, 2, 3, 4	1
외국인 입학 불가	2
외국인 없음	6
무응답	2
총계	66

번호	관리 방식
1	면대면 관리
2	온오프라인으로 공지사항 게시
3	학과 사무실을 개인이 방문
4	기타

13) 대학원과정에서는 박사 과정생(박사 몇 학기 이상)은 강의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

<표 57>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 전형 방법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입학 전형 방법 역시 과정별로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자체 시험을 보는 과정은 전체 66개 과정 중 3개 과정에 불과했다.

<표 57> 학위과정(대학원) 입학 전형 방법

조건	과정 수	번호	구분
1	0	1	자체시험
2	9	2	면접
3	4	3	어학성적
4	1	4	서류전형
5	0	5	연구계획서
6	0	6	학부성적
2,3	18	7	기타
2,3,4	9		
2,3,5	4		
1,2,3	3		
2,4	3		
2,3,6	2		
7	6		
무응답	7		
총계	66		

출석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66개 과정이 모두 강사가 수업 전에 매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출석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학위과정(대학원) 출석 관리 현황

출석 관리	과정 수
담당 강사가 수업 전에 매일 확인	66
무응답	0
합계	66

바. 한국어교육 실습

<표 59>는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의 운영 방식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 학습자 대상 수업 실습과 모의수업, 수업 참관, 이 세 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과정이 약 41% 정도(27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학위과정(대학원)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방식

운영 방식	과정 수
1	4
2	1
3	2
4	3
1, 2	5
1, 3	8
1, 4	0
2, 3	9
2, 4	2
1, 2, 3	27
2, 3, 4	2
1, 2, 3, 4	2
무응답	1
합계	66

번호	운영 방식
1	학습자 대상 수업 실습
2	모의수업
3	수업 참관
4	기타

참관 협조 가능 연계 기관 유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과정인 60개 과정이 참관 협조 가능 연계 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0> 학위과정(대학원) 참관 협조 가능 연계 기관 유무 여부

기관 유무	과정 수
있다	60
없다	4
무응답	2
합계	66

참관 협조 가능 연계 기관의 소속을 조사한 결과, 내부 기관인 한국어교육원의 협조를 받는 기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6개 과정 중 44개 과정이 내부 기관인 한국어교육원의 협조로 참관 수업을 하거나, 한국어교육원 및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 학위과정(대학원) 참관 협조 가능 연계 기관 소속

기관 세부 유형	과정 수
1(학과 수업(대학원))	1
1(학과 수업(대학원), 국제교육원)	1
1(한국어교육원, 학과 수업(학부))	2
1(학과 수업(학부), 학과 수업(대학원))	2
1(학과 수업(학부))	2
1(한국어교육원, 학과 수업(대학원))	3
1(무표시)	6
1(한국어교육원)	35
1(한국어교육원), 2	1
1(한국어교육원, 학과 수업(학부)), 2	1
1(한국어교육원), 3	1
2	3
2, 3	1
1(한국어교육원), 2, 4	1
무응답	6
합계	66

번호	기관 종류
1	내부 기관
2	외부 기관
3	국외 기관
4	1회성 모의 강의

실습 수업을 위한 협조가 가능한 연계 기관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과정인 58개 과정이 실습 협조 가능 연계 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학위과정(대학원) 실습 협조 가능 연계 기관 유무 여부

기관 유무	과정 수
있다	58
없다	5
무응답	3
합계	66

실습 협조가 가능한 연계 기관의 소속을 조사한 결과, 참관 수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부 기관인 한국어교육원의 협조를 받는 기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6개 과정 중 37개 과정이 내부 기관인 한국어교육원의 협조로 실습을 하거나, 한국어교육원 및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학위과정(대학원) 실습 협조 가능 연계 기관 소속

기관 세부 유형	과정 수
1(한국어교육원)	30
1(무표시)	6
1(한국어교육원, 학과 수업(학부))	3
1(학과 수업(대학원))	3
1(학과 수업(학부), 학과 수업(대학원))	2
1(학과 수업(학부))	2
1(한국어교육원, 학과 수업(대학원))	1
1(학과 수업(대학원), 국제교육원)	1
1(한국어교육원, 학과 수업(학부)), 2	1
1(한국어교육원), 3	1
1(한국어교육원), 2, 4	1
2	4
3	2
2, 3	1
무응답	8
합계	66

번호	기관 종류
1	내부 기관
2	외부 기관
3	국외 기관
4	1회성 모의 강의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의 평가 방식을 조사한 결과, 참관 보고서 제출과 한국어

시장을 병행하여 평가하는 과정이 가장 많았다. 총 22개 과정이 참관 보고서 제출과 한국어 시장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4> 학위과정(대학원)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의 평가 방식

평가 방식	기관 수
1	7
2	0
3	2
4	0
5	0
6	1
1,3	22
1,2,3	9
3,5	5
1,3,4,5	3
1,3,5	3
그 외	11
무응답	3
총계	66

번호	구분
1	참관 보고서
2	지필 시험
3	한국어 시장
4	모의수업
5	지도안 제출
6	기타

실습 교과목의 수강 조건을 조사한 결과, 특정 학기 이상 수강하는 것을 조건으로 두고 있는 과정이 가장 많은 것을 나타냈다. 44개 과정에서 특정 학기 이상 수강한 사람만 실습 교과목을 수강하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과목에 대한 수강 조건이 ‘몇 개 학기(주로 2~3학기) 이상 수강 후 신청할 것’으로만 되어 있는 기관이 다수이다. 단순히 학기 제시가 아니라 수강 과목명 등의 제시 등 수강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표 65> 학위과정(대학원) 실습 교과목 수강 조건

조건	과정 수
1	44
2	7
3	0
1,2	7
1,3	1
없음	3
무응답	4
총계	66

번호	구분
1	특정 학기 이상
2	특정 강의 수강자
3	특정 학점 이상 이수

3. 사이버대학교 학부과정 및 대학원과정

1) 조사 기관 현황

2012년 9월 기준 국립국어원에 한국어교원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등록된 사이버대학교 및 사이버대학원 기관은 총 7개 기관이다. 이 중 학사학위 운영기관은 6개 기관이며, 석사학위 운영기관은 1개 기관이다. 현재 7개 기관은 모두 과정을 운영하는 중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개 기관, 대전 1개 기관, 전남 1개 기관, 부산 1개 기관으로 서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이버대학교 및 사이버대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운영기관 수

	학사학위 기관	석사학위 기관	총계
서울	3	1	4
대전	1	0	1
전남	1	0	1
부산	1	0	1
총계	6	1	7

다음으로 각 기관 명칭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67>과 같다.

<표 67>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응답 기관 목록(명칭)

연번	구분	기관명
1	대학교	건양사이버대학교 다문화한국학과
2	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3	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한국어언어문화학과
4	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부
5	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6	대학교	화신사이버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7	대학원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글로벌한국어학전공

2) 조사 과정

사이버대학교 및 사이버대학원의 기관 실태 조사를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교원 학위과정 운영기관으로 등록된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앞서 사이버대학교 및 사이버대학원의 기관 특징 및 선행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설문 질문은 총 29개 문항으로 제시되었고 학위과정 운영 전반, 교육과정, 졸업 및 자격 취득 현황, 전임교원 및 강사 현황, 교육 실습 등으로 설문 조사 내용을 구성하였다. 기관 별 유선 연락을 통하여 현재 시행 여부 및 기관 담당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설문지 발송을 하였으며 총 5차에 걸쳐 협조 요청을 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각 기관의 전임교원 또는 전임 조교가 작성하였으며, 조사 대상 7개 기관이 모두 응답하여 응답률은 100%이다.

3) 조사 결과

가. 운영 전반

사이버대학교 및 사이버대학원의 학위과정 개설 시기는 국어기본법 시행 연도인 2006년 이후였으며, 그 후로 매년 꾸준히 개설되었다. 기관별 편재정원은 학과 선

발이 이루어지는 5개 기관의 경우에는 80명에서 1,440명으로 정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학부단위 또는 계열별 정원을 모집하는 2개 기관은 별도의 편제인원이 없었다.

<표 68>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개설 시기

개설 연도	기관 수
2006	1
2007	1
2008	0
2009	2
2010	1
2011	1
2012	1
합계	7

기관별 재학생은 75명에서 792명으로 기관별로 차이가 컸으며, 7개 과정의 정원수의 합계는 총 2,079명이었다. 2012년 개설기관으로 1학년 재학생만 있는 1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은 3학년 재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재학생 연령은 모든 과정에서 30대~40대가 가장 많았다.

<표 69>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기관별 재학생 수

정원 수	기관 수
0 ~ 100명	2
101 ~ 200명	0
201 ~ 300명	1
401 ~ 500명	2
500명 이상	1
무응답	1
합계	7

교육과정의 운영은 원격대학기관의 특성상 모든 기관이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

었다. 교육과정은 3개의 기관에서 주전공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2개 기관은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을 모두 운영 중이었고 2개 기관은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학점은행(시간제등록)을 모두 운영하고 있었다. 졸업에 필요한 전공이수학점은 기관별 학사규정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며 42학점으로 규정된 1개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은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이상을 전공이수학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학위 수여 요건 역시 기관별 학사규정에 따라 상이하며 별도의 졸업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은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의 이수여부를 졸업요건으로 규정하였다.

나. 영역별 과목 수 및 학기당 개설 과목 수

사이버대학교의 학위과정은 영역별로 1영역은 3~7개 과목, 2영역은 3~4개 과목, 3영역은 8~18개 과목, 4영역은 4~11개 과목, 5영역은 1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으며, 대학원의 학위과정은 영역별로 1영역 1개 과목, 2영역 1개 과목, 3영역 4개 과목, 4영역 5개 과목, 5영역 1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 이때 사이버대학교와 대학원 교육과정의 개설 교과목의 차이는 교육기관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최소 필수이수학점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과정은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학점 이상을 개설하고 있었으며, 특히 3영역의 경우 5개 이상의 기관에서 10개 이상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비교적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0>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영역별 개설 현황(기관 수)

과목 수	1	2	3	4	5	6	7	8	9	10~15	16~20	합계
1영역	(1)	0	2	0	1	1	2	0	0	0	0	6(1)
2영역	(1)	0	3	3	0	0	0	0	0	0	0	6(1)
3영역	0	0	0	(1)	0	0	0	1	0	4	1	6(1)
4영역	0	0	0	3	(1)	1	1	0	0	1	0	6(1)
5영역	6(1)	0	0	0	0	0	0	0	0	0	0	6(1)

* 대학원과정의 경우 대학교와는 이수학점 기준이 다르므로 ()로 표기

학기별 개설 과목 수는 사이버대학교 학위과정의 경우 1학기는 12~20개 과목, 2학기는 12~19과목이 개설하여 평균적으로 1학기는 16개 과목, 2학기에는 15.5개 과목을 개설하였고, 대학원 학위과정의 경우는 1학기 8과목, 2학기 8과목을 개설하였다. 이때 사이버대학교 학위과정은 학년별로 1학년 4~10개 과목, 2학년 8~10개 과목, 3학년 7~10개 과목, 4학년 5~12개 과목을 개설하였다.

<표 71> 사이버대학교 학년별 개설 현황(기관 수)

	4	5	6	7	8	9	10	11	12	합계
1학기	1	0	1	2	0	1	1	0	0	6
2학기	0	0	0	0	2	2	2	0	0	6
3학년	0	0	0	1	3	0	2	0	0	6
4학년	0	1	1	1	0	2	0	0	1	6

* 대학원과정의 경우 대학교와는 개설학년 기준이 다르므로 제외

다. 졸업 및 자격 취득 현황

기관별 졸업자 수는 2012년도 2월 졸업자를 기준으로 하여 누적인원으로 A기관 409명, B기관 360명, C기관 69명, D기관 24명이며 2012년 개설된 2개 기관은 해당사항이 없고 1개 기관은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전체기관 누적 졸업자 수는 862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취업자 수는 2개의 기관에서 응답하였다. 입학자 대부분이 취업 상태이므로 별도의 집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기관도 있었다. 이는 30~40대 재학생이 높은 사이버대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는 3개의 기관이 응답하였으며 응답한 기관 중에서 2012년도 2월 졸업자를 기준으로 A기관은 모든 졸업자가 자격을 취득하였고, B기관은 졸업자 중 1명이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C기관은 2012년 8월 졸업자인 취득예정자를 포함한 모든 졸업자가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72>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및 자격 취득 현황

구분		A	B	C	D	E	F	G
졸업자	2012	117	98	69	24	-	-	-
	2011	141	110	-	-			
	2010	61	81					
	2009	61	71					
	2008	29	0					
계	409	360	69			24	-	-
취업자	2012	-	68	65	-	-	-	-
	2011		77					
	2010		56					
	2009		49					
	2008		0					
계	-	250	65	-	-	-	-	
교원 자격 취득	2012	117	98	69	-	-	-	-
	2011	141	109					
	2010	44	81					
	2009	61	71					
	2008	29	0					
계	392	359	69	-	-	-	-	

* '-' 표시는 무응답

라. 전임교원 및 강사 현황

각 기관은 1명에서 3명의 전임교원을 임용하고 있으며, 전체 14명이 임용되어 있었다. 전임교원이 1명인 기관은 2개 기관, 전임교원이 2명인 기관은 3개 기관, 전임교원이 3명인 기관은 2개 기관이었다.

<표 73>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수	기관 수
1	2
2	3
3	2
합계	7

기관별 전임교원의 전공은 응답하지 않은 1개 기관을 제외한 6개 기관에서 국어학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어교육 4명, 언어학 1명이었다. 한국어교원 자격을 소지한 전임교원은 전체 14명 중 6명뿐이었으며, 1급 자격 1명, 2급 자격 2명, 3급 자격 3명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의 학력은 5개 기관 모두 박사학위 소지, 1개 기관은 박사과정이었다고 1개 기관은 응답하지 않았다. 전임교원의 교육 경력은 응답하지 않은 2개 기관을 제외하고 전체 기관의 전임교원 14명 중 10명이 10년 이상으로 비교적 한국어교육 경력의 편차는 크지 않았다.

<표 74>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전임교원 전공

전임교원 전공	교원 수
국어학	8
한국어교육	4
언어학	1
무응답	1
합계	14

각 기관은 3명에서 12명의 강사를 임용하고 있으며, 전체 약 49명이 임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이 3~5명인 기관은 3개 기관, 6~8명인 기관은 1개 기관, 9~11명인 기관은 2개 기관, 12명 이상인 기관은 1개 기관이었다. 강사자격은 3개 기관에서 박사 이상, 3개 기관에서 박사 수료 이상, 1개 기관에서 석사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다.

<표 75>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시간강사 현황

강사 수	기관 수
3 ~ 5명	3
6 ~ 8명	1
9 ~ 11명	2
12명 이상	1
합계	7

마. 외국인 유학생 입학 전형 및 관리

모든 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입학 전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5개 기관은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등을 통한 입학 전형이 이루어졌으며, 2개 기관은 자체 시험을 운영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은 모든 기관에서 온라인 공지사항 게시로 관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과장 및 행정조교를 통한 관리는 3개 기관, 전화 상담을 통한 관리는 2개 기관에서 하였다.

<표 76>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방식

관리 방식	기관 수
온·오프라인 공지사항	7
학과장 및 행정조교의 관리	3
전화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활용	2

* 중복응답 가능

바. 한국어교육 실습

한국어교육 실습의 운영 방식은 공통적으로 수업 실습 또는 모의수업으로 운영되었다. 모의수업은 7개 기관 모두 운영하였으며, 수업 실습과 수업 참관은 각각 6개 기관에서 운영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77>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방식

운영 방법	기관 수
모의수업	7
수업 실습	6
수업 참관	6

* 중복응답 가능

참관 연계 기관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6개 기관이었으며 유형은 외부 기관 및 국외 기관이 3개 기관, 외부 기관이 2개 기관, 내부 기관이 1개 기관이었다. 이 가운데 5개 기관이 실습 연계 기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실습 연계 기관의 유형은

외부 기관 및 국외 기관이 3개 기관, 외부 기관이 1개 기관, 내부 기관이 1개 기관이었다. 2개 기관은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표 78>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한국어교육 실습 참관/실습 연계 기관

운영 방법	기관 수	
	참관 연계 기관	실습 연계 기관
외부 기관	2	1
내부 기관	1	1
외부 기관, 국외 기관	3	3
무응답	1	2
합계	7	7

평가는 모두 참관 보고서와 시강 또는 모의수업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습자 격은 학교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며, 실습을 운영하는 기관 중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1명역과 3명역 24학점 이상 이수자의 한국어교육 실습 수강 기준을 적용하는 기관은 2개 기관뿐이었다.

<표 79>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의 평가 방식

운영 방법	기관 수
참관 보고서	6
한국어시강 · 수업평가	7
수업교안	5
지필시험	2
최종결과보고서	2

* 중복응답 가능

4. 학점은행제 과정

1) 조사 기관 현황

2012년 9월 기준 국립국어원에 한국어교원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등록된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은 총 12개 기관이다. 이 중 1개 기관이 현재 과정 운영을 중단하여, 11개 기관에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7개 기관, 충남 1개 기관, 대구 1개 기관, 경북 1개 기관으로 서울지역에서 가장 많은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0>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수

	대학소속	사설기관	공공기관	총계
서울·경기	4	3	0	7
충남	2	0	0	2
대구	1	0	0	1
경북	0	0	1	1
총계	7	3	1	11

2) 조사 과정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실태 조사를 위하여, 국립국어원에 한국어교원 학위과정 운영기관으로 등록된 12개 기관 중, 설문에 응답이 가능한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앞서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특징 및 선행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문내용을 구성하였다. 설문 지문은 총 36개 문항으로 제시되었고 학위과정 운영 전반, 교육과정, 졸업 및 자격 취득 현황, 교강사 현황, 교육 실습 등으로 조사 내용을 구성하였다. 기관별 유선 연락을 통하여 현재 시행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기관 담당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설문지 발송을 하고 총 5차에 걸쳐 협조 요청을 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각 기관의 한국어교원 학위과정 담당자 또는 기관 책임자가 작성하였으며, 조사 대상 10

개 기관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90%이다.

<표 81> 학점은행제 응답 기관 목록(명칭)

	학점은행제 개설기관	기관 및 전공명
1	평생교육원	경희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2	평생교육기관	대한고시연구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3	평생교육원	서강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4	평생교육기관	선문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5	평생교육원	순천향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6	원격평생교육기관	에이스평생교육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7	사회교육원	영남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전공
8	지자체 평생교육기관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9	평생교육원	평택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10	원격평생교육기관	한국어교사원격교육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3) 조사 결과

가. 운영 전반

학점은행제 기관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은 2003년에 개설된 1개 기관을 제외하고 국어기본법 시행 후인 2007년에 이후에 개설되었다. 특히 2010년 이후로 7개 기관이 개설되어 학점은행제 기관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개설이 급증하였다.

<표 82> 학점은행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개설 시기

개설 연도	기관 수
2007년 이전	1
2007	1
2008	1
2009	0
2010	5
2011	0
2012	2
합계	10

학생 수는 9명에서 621명으로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 과정은 운영 중이나 2012년 2학기 입시선발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0명이라고 응답하거나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기관별 운영형태는 6개 기관은 오프라인 운영, 3개 기관은 온라인으로 운영, 1개 기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운영하였다.

<표 83> 학점은행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형태

교육 과정	기관 수
오프라인	6
온라인	3
온라인·오프라인	1
합계	10

교육과정은 4개 기관이 학점은행제, 3개 기관은 학점은행제에서 주전공을 운영 중이며 1개 기관은 학점은행제에서 복수전공을, 1개 기관은 학점은행제에서 연계전공을, 1개 기관은 주전공만을 운영하였다.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과 졸업학점은 기관별 학사규정에 따라 상이하였으며, 학위수여요건은 5개 기관이 실습, 2개 기관이 학점이수 또는 과목이수였으며 3개 기관은 없거나 무응답하였다.

<표 84> 학점은행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교육과정

교육 과정	기관 수
학점은행제	4
학점은행제, 주전공	3
학점은행제, 복수전공	1
학점은행제, 연계전공	1
주전공	1
합계	10

나. 영역별 과목 수 및 학기당 개설 과목 수

기관별 영역별 개설 과목 수는 10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응답하였다. 응답한 기

계	-	10	-	1	-	-	-	-	-	-
교원 자격 취득자	2012	11	-	-	1	3	-	-	-	-
	2011	13	9	-	-	-	-	-	-	-
	2010	10	-	-	-	-	-	-	-	-
	2009	5	-	-	-	-	-	-	-	-
계	39	9	-	1	3	-	-	-	-	
관련 분야 종사자	2012	-	4	-	1	-	-	-	-	-
	2011	-	9	-	-	-	-	-	-	-
	2010	-	-	-	-	-	-	-	-	-
	2009	-	-	-	-	-	-	-	-	-
계	-	13	-	1	-	-	-	-	-	

라. 전임교원 및 강사 현황

전임교원 임용 현황에 대해 9개 기관이 응답하였다. 응답한 9개 기관 중 7개 기관에서 1명에서 10명의 전임교원을 임용하고 있었으며 전체 전임교원의 수는 25명이었다. 전임교원이 없는 기관이 3개 기관, 1~5명이 5개 기관, 10명 이상이 1개 기관으로 비교적 큰 편차를 보였다.

<표 87> 학점은행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수	기관 수
0명	3
1 ~ 5명	5
10명 이상	1
합계	9

전임교원의 전공은 한국어교육 7명, 국어국문 7명, 국어교육 6명, 국어학 2명, 언어학 1명, 불어불문 2명이었다. 응답한 기관 중 6개 기관의 12명의 전임교원이 3급 이상의 한국어교원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다. 2급 소지자는 8명, 3급 소지자는 4명 이었고 이외의 자격 소지 여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전임교원의 학력은 박사 학위 10명, 박사 수료 3명, 박사 과정 2명이었으며, 10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교육 경력

은 10년 이상 6명, 5년에서 10년이 2명, 1년에서 5년이 6명, 1년 미만이 1명이었다.

<표 88> 학점은행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전임교원 전공

전임교원 전공	교원 수
한국어교육	7
국어국문	7
국어교육	6
국어학	2
언어학	1
불어불문	2
합계	25

응답한 모든 기관은 3명에서 30명의 강사를 임용하고 있으며, 1개 기관은 개설된 교과목을 모두 시간강사가 운영한다고 응답하였다. 강사 임용 자격은 박사 수료 이상이 4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 이상이 3개 기관, 박사 이상이 1개 기관, 박사 과정이 1개 기관이었다.

<표 89> 학점은행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시간강사 자격

강사 수	기관 수
박사 이상	1
박사 수료	4
박사 과정	1
석사 이상	3
합계	9

마. 입학 전형 및 외국인 유학생 관리

내국인의 입학 전형은 8개의 기관이 응답하였다. 먼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기관은 5개 기관이며, 2개 기관에서는 면접을 진행하고 1개의 기관에서는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였다. 외국인 학생의 입학 전형에 대한 설문항목은 5개 기관이 응답하였으며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2개 기관, 토

픽 6급 이상이 2개 기관, 학점은행제 수강 가능여부가 1개 기관이었다. 외국 국적자 수강 및 학점관리는 7개 기관이 응답하였으며, 외국 국적자가 없다고 응답한 기관은 3개 기관, 사무실 개인 방문 2개 기관, 온라인 상담이 1개 기관, 면대면 관리가 1개 기관이었다.

바. 한국어교육 실습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의 운영 방식은 9개 기관이 응답하였다. 수업 실습 또는 모의수업을 운영하는 기관은 7개 기관이며, 1개 기관은 수업 참관만 운영하며, 1개 기관은 실습 교과목을 운영하지 않았다.

<표 90> 학점은행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방식

운영 방법	기관 수
수업 참관	6
모의수업	5
수업 실습	5
운영하지 않음	1

* 중복응답 가능

참관 연계 기관과 실습 연계 기관의 유무에 대한 응답 및 기관 유형은 같았다. 참관 및 실습 연계 기관은 7개 기관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관 유형은 내부 기관이 5개 기관, 외부 기관이 1개 기관, 외부 기관 및 국외 기관이 1개 기관이었다.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의 평가 방식은 참관 보고서 제출이 6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5개 기관에서 모의수업 또는 시강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다.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의 수강 자격은 각 기관별로 상이하나, 설문 대상 기관 모두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1영역과 3영역 24학점 이상 이수자의 한국어교육 실습 수강에 대한 지침은 적용하지 않았다.

<표 91> 학점은행제 한국어교원양성과정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의 평가 방식

운영 방법	기관 수
참관 보고서	6
모의수업·시강	4
수업교안	2
지필시험	2
최종결과보고서	2

* 중복응답 가능

5. 각 지역별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 2012년 9월에서 10월에 걸쳐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은 학부과정, 대학원과정, 사이버대학교 학부과정 및 대학원과정,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구분하지 않고 기술할 것이다.

첫째,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각 영역 교과목의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 내용학 부분의 강화, 교직과목 이수의 추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한국어교육의 경우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교육기관의 성격에 맞게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대학의 특화된 교육과정이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인해 침해받고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학위과정별(학부/대학원) 교육과정의 차별화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대학원의 경우, 동일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같은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것 또한 문제라고 하였다.

둘째, 실습 교과목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참관과 실습에 대한 매뉴얼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습 후 평가에 대한 지침이나, 실습일지 양식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서 실습의 방식을 정해 주는 등의 원리를 만들어 좀 더 효율적으로 실습 교과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격증 취득 제한에 대한 문제가 개선되었다. 대학원의 경우에는 한국어교

원 2급 자격 부여를 선택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학원은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연구 심화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넷째, 기관 인증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한국어교원 양성을 담당하는 학부 및 대학원의 기관 인증제가 도입되면 불필요한 절차들이 최소화될 것이고, 한국어교원의 질적 관리 역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제2절 비학위과정

이 절에서는 비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학위과정의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비학위과정의 현황을 기술하고, 다음으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1) 조사 기관 현황

2012년 9월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승인을 받은 기관은 총 135개 기관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1차 전화 조사 결과 과정이 중단된 기관이 20개,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기관이 5개였고, 이를 제외하면 2012년 9월 현재 실제 비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총 110개이다. 다음의 <표 92>는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을 지역별, 기관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92> 비학위과정 시행 기관(2012년 9월 현재)

	대학 소속	기타 기관		총계
		사설 기관	공공 기관	
서울	24	7	1	32
경기·인천	13	0	4	17
강원	5	0	0	5
충북	5	0	0	5
대전·충남	12	0	0	12
전북	8	0	0	8
광주·전남	5	0	1	6
대구·경북	7	0	0	7
부산·울산·경남	13	5	0	18
총계	92	12	6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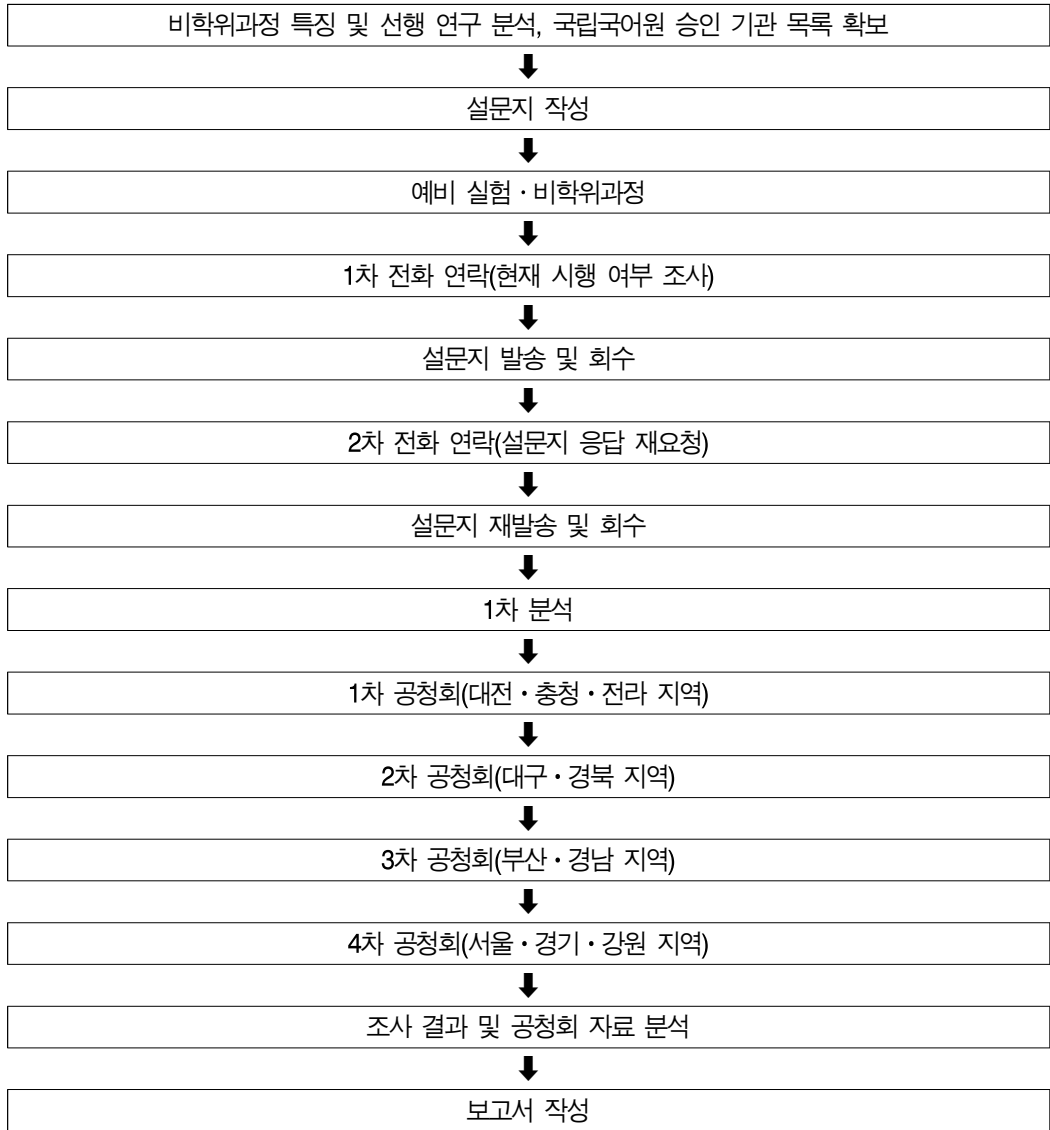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이 32개로 가장 많은 기관에서 비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경기·인천 지역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 대학 내 부설 기관 즉, 대학 내 한국어교육기관, 평생교육원 혹은 국제교육원 소속으로 과정이 개설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기타 기관으로는 인력개발센터, 종교 단체, 사설 교육기관 등이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기타 기관들은 주로 서울, 경기 및 인천 지역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었고 경남, 울산, 전남 지역에서는 각각 1개 기관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기본법이 시행된 직후인 2006년 당시 조사에 따르면 비학위과정이 개설된 기관이 총 31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와 비교해 보면 6년 사이에 승인 기관은 4배 이상, 실제 운영기관은 3.5배 정도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과정 개설 승인을 받은 기관의 수와 실제 운영기관 수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차 전화 조사 결과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다가 중단하였거나, 준비는 되었으나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그 원인이 대부분 수강생의 감소 또는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양적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2) 조사 과정

본 연구에서는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1차 전화 조사에서 파악된 실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 비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110개 기관 중 설문에 응답한 기관은 75개 기관으로 회수율은 약 68%이다. 설문지는 기관 운영 현황, 시설 및 교직원 현황, 강사진 현황, 수업 운영 현황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총 34문항이었다. 조사 절차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13> 비학위과정 조사의 흐름

3)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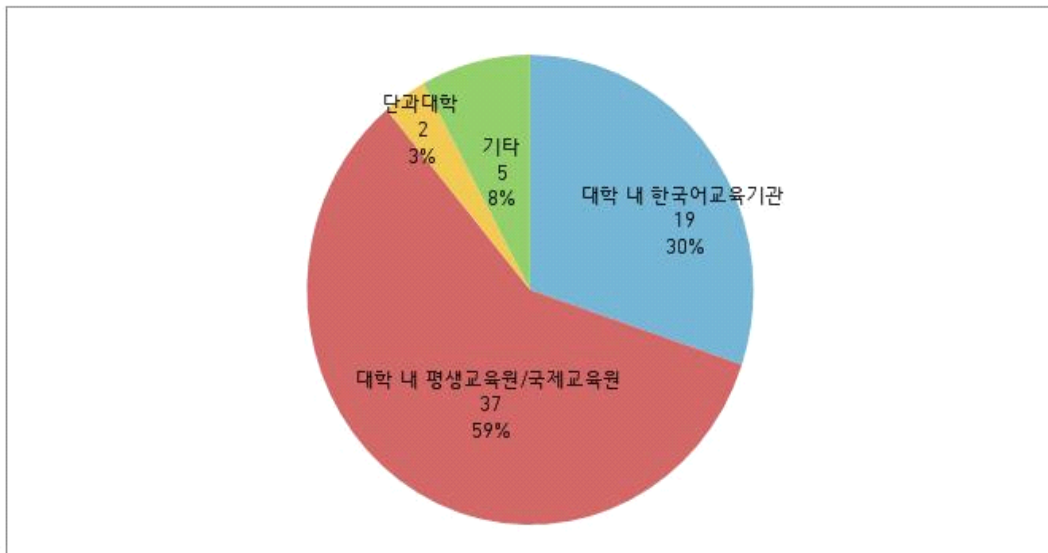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대학기관과 기타 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대학기관

2012년 9월 현재 비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 내 기관은 총 92개 기관이다. 이 중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기관은 총 63개 기관으로¹⁴⁾, 전체 대학기관의 약 68.5%에 해당한다. 대학기관을 유형별¹⁵⁾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3> 비학위과정(대학기관) 유형

기관 유형	대학 내 한국어교육기관	대학 내 평생교육원/ 국제교육원	단과대학	기타	합계
기관 수	19	37	2	5	63
비율(%)	30.2	58.7	3.2	7.9	100



<그림 14> 비학위과정(대학기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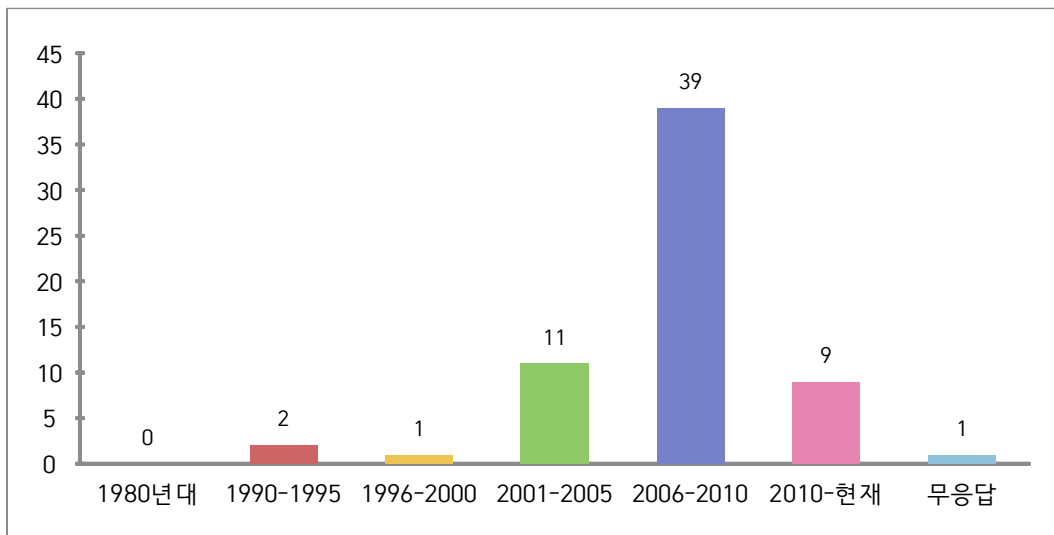
14) 총 65개의 대학기관에서 설문에 응답하였으나, 이 중 한 기관은 수강생 모집의 어려움으로 아직 시행하지 않은 곳이라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다른 한 기관은 잘못된 설문지에 응답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5)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세 곳 있었으나 그 수가 적어 따로 분석하지 않는다.

위의 <표 93>과 <그림 1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응답 기관 중에서는 대학 내 평생교육원이나 국제교육원에서 비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대학 내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였다. 비학위과정은 대부분 대학 자체보다는 부속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유형으로는 대학 내 국어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경우나 학과와 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학위과정의 개설 시기를 살펴보면 <표 94>와 같다.

<표 94> 비학위과정(대학기관) 개설 시기(2012년 9월 기준)

	1980년대	1990-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현재	무응답	합계
기관 수	0	2	1	11	39	9	1	63
비율(%)	0	3.2	1.6	17.5	61.9	14.3	1.5	100



<그림 15> 비학위과정(대학기관) 개설 시기

위의 <표 94>와 <그림 15>를 보면 설문에 응답해 준 기관을 대상으로만 분석했을 때 2006년 이후에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기관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비학위과정의 수가 많아진 것은 우선 한국어 학습자 수

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국어 교사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06년 국어기본법이 시행되어 과정 개설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기관 입장에서는 과정 개설을 위한 지침이 명확해짐으로써 오히려 양적 확대를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는 기관의 운영 현황, 시설 및 교직원 현황, 강사진 현황, 수업 운영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기관 운영 현황

기관 운영 현황은 연간 개설 횟수, 과정 운영 기간, 운영 방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연간 개설 횟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기관에서는 연 2회 비학위과정을 개설하는 기관이 가장 많았으며, 연 5회 이상 개설하는 경우는 없었다. 기타는 2~3회, 3~4회 등으로 응답한 경우이다.

<표 95> 비학위과정(대학기관) 연간 개설 횟수

개설 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기타	합계
기관 수	11	31	4	15	0	2	63
비율(%)	17.5	49.2	6.3	23.8	0	3.2	100

기관에 따라서는 학기 중과 방학 때 기간을 달리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 기간에 대한 응답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학 내 비학위과정은 4~6주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방학 때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짧은 기간 내에 120시간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설한 경우가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13~15주 동안 과정을 개설하는 기관이 많았는데, 이는 대부분 학기 중에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타 응답은 12~16주인 경우이다.

<표 96> 비학위과정(대학기관) 운영 기간(복수 응답)

운영 기간	4~6주	7~9주	10~12주	13~15주	16주 이상	기타
기관 수	22	11	6	17	12	1

한편, 대학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학위과정의 수강료는 평균 83만 원으로, 무 료부터 135만 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평균 수강 인원은 25명 정도였는데, 적 계는 10명 미만인 기관도 있었고,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90명 정 도 수강한다고 응답한 기관도 있었다. 현재 비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도 수강생 감소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역 혹은 기 관 규모에 따라 수강생 수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후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기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시설 및 교직원 현황

비학위과정의 시설은 전용 강의실이 배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원활한 강의를 위 한 기자재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표 97> 비학위과정(대학기관) 전용 강의실 배정 여부

배정 여부	배정함	배정하지 않음	무응답	합계
기관 수	47	15	1	63
비율(%)	74.6	23.8	1.6	100

<표 98> 비학위과정(대학기관) 기자재 구비 여부

구비 여부	구비함	구비하지 않음	무응답	합계
기관 수	60	2	1	63
비율(%)	95.2	3.2	1.6	100

위의 <표 97>과 <표 9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은 기관에서 과정 운영을 위한 강의실을 배정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이 강의를 위해 컴

퓨터, 빔 프로젝터, 전자교탁 등 기자재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 담당자의 배정 여부를 보면 <표 99>와 같다. 비학위과정의 담당자가 따로 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없었으며, 많은 경우 행정 직원과 과정 총괄 담당자가 같은 사람으로 배정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행정 직원이나 조교만 배정되어 있는 경우 각 영역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일지 불분명하며 이는 수업 배정 및 강사 섭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99> 비학위과정(대학기관) 행정 담당 배정 여부(복수 응답)

배정	행정 직원	조교	과정 총괄 담당자	담당자 없음
기관 수	39	23	36	0

다. 강사 현황

대학기관에서 운영하는 비학위과정의 평균 강사 수는 15명이었다. 그러나 기관에 따라 1명부터 32명까지 그 편차가 커 기관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인당 강의 시간과도 연결되는 문제인데, 대학기관 비학위과정의 일인당 평균 최다 강의시간은 20.3시간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인당 최다 강의 시간이 6시간부터 120시간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강사 수가 적고 일인당 최다 강의 시간이 많은 경우는 한 강사가 여러 과목을 강의하게 되므로 강의 내용을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음으로 강사진의 전공을 살펴보면 <표 99>와 같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자가 약 10명, 국어학, 국문학, 국어교육 등 한국어교육 관련 전공자가 약 10명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전공자로는 영어학, 언어학, 독어학 등 언어 관련 전공자, 영어교육, 독어교육 등 외국어교육 전공자, 사학, 한국학 전공자 등이 있었다. 비학위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다섯 영역의 성격이 상이하고, 영역 내 과목도 많아 다양한 전공자들이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학기관에서는 이수해야 하는 다섯 영역의 과목과 아예 동떨어진 전공자가 강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표 100> 비학위과정(대학기관) 강사 전공

전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전공	국어국문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국문학 전공	국어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 공	기 타	무 응 답
평균 강사 수	4.7	2.7	7.4	3	2.5	3.8	1

<표 101>은 강사진의 학력을 조사한 결과이다. 강사들의 학력은 박사 과정 수료 이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석사 과정부터 박사 졸업까지 기관에 따라 그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 경력이 오래된 강사의 경우 학력과 무관하게 현장 경험에 기반을 두어 기능교육 방법, 실습 등의 과목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강의 내용의 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표 101> 비학위과정(대학기관) 강사 학력

학력	석사 과정	석사과정 수료	석사 과정 졸업	박사 과정	박사 과정 수료	박사 과정 졸업	무응답
평균 강사 수	2	1.3	2.7	2.3	3.8	10.1	3

<표 102>는 강사들의 자격증 소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이다. 강사의 자격증 소지 여부에 대해 응답하지 않거나 각 급별로 모두 응답하지 않고, 일부만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응답한 경우를 보면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많았고, 소지한 경우에는 대부분 2, 3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해야 하는 영역의 특성상 한국어교육 전공이 아닌 타 전공의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 비학위과정의 강의에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기관에서는 자격증 소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2> 비학위과정(대학기관) 강사 자격증 소지 현황

자격증	1급	2급	3급	없음	무응답
평균 강사 수	1.4	5.0	4.6	5.1	13

다음의 <표 103>은 강사진의 강의 경력을 조사한 결과이다. 강사들의 강의 경력은 4년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년 이상, 3년 이상의 순이었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비학위과정의 경우 기관에 따라 강사 수, 최다 강의 시간 수, 학력 등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진의 편차는 강의 내용의 편차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03> 비학위과정(대학기관) 강사 강의 경력

강의 경력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무응답
평균 강사 수	2.1	3.1	2.5	12.9	6

라. 수업 운영 현황

수업 운영 현황은 일반 현황과 특수 현황, 5영역의 운영 방식, 수료 및 평가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ㄱ. 수업 운영 관련 일반 현황

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교재 유형, 강좌명과 수업 내용의 일치 정도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다.

사용 교재의 유형을 보면 <표 104>와 같다. 비학위과정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기관 자체 제작 교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사진으로부터 강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아 수합하여 교재로 제작한 형태이다. 자체 제작 교재와 유인물 등 두 종 이상의 교재를 같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기관도 있었다. 기관별 교재의 내용을 직접 살펴보지는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사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사용 교재에 포함된 내용의 편

차도 클 것으로 보인다.

<표 104> 비학위과정(대학기관)의 사용 중인 교재 유형(복수 응답)

교재 유형	자체 제작	출판 교재 활용	유인물	기타	무응답
기관 수	49	12	10	1	1

<표 105>는 강좌명과 실제 수업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비학위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어기본법에서 정한 대로 다섯 영역의 과목을 개설한다. 개설해 놓은 과목과 실제 수업 내용의 일치성에 대한 기관 응답 결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 ‘완벽하게 일치’하거나 ‘대체로 일치’한다는 응답을 하였고,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한 기관에 불과해 대부분 개설 강좌명과 실제 강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에 양성과정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강좌명과 교육 내용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1.1점으로 기관 응답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¹⁶⁾ 기관 응답과 이수자 사이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승인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과목 운영에 대한 승인 후 관리가 더욱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05> 비학위과정(대학기관) 개설 강좌명과 실제 수업 내용의 일치 정도

일치 정도	완벽하게 일치	대체로 일치	거의 일치하지 않음	일치하지 않음	무응답	합계
기관 수	37	24	1	0	1	63
비율(%)	58.7	38.1	1.6	0	1.6	100

ㄴ. 수업 운영의 특수 현황

수업 운영의 특수 현황은 운영의 어려움이나 운영 시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다. 우선 다섯 영역 중 개설과 운영이 어려운 영역을 살펴보면 <표

16) 국립국어원(2009)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실태 조사 보고서 조사 결과에서도 강좌명과 내용의 일치성에 대한 만족도가 기관 응답은 85.6점으로 나타나 이수자 응답과 큰 차이를 보였다.

106>과 같다. 과목 개설과 운영이 어려운 영역을 묻는 문항에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섯 영역 중에서는 5영역의 개설과 운영이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로는 참관이나 실습을 운영할 기관이나 한국어 학습자를 섭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4영역의 어려움을 토론한 기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4영역의 광범위함에 비해 시간 수가 제한되어 있고 전문적인 강사를 섭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2영역의 개설 및 운영이 어렵다고 응답한 기관은 6개 기관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전공자이면서 한국어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는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영역의 개설 및 운영이 어렵다고 한 기관은 4개 기관이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수강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이고, 적절한 강사 섭외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3영역이 어렵다고 응답한 기관은 가장 적었는데, 어렵다고 응답한 기관에서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구별이 어려운 과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기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운 영역도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6> 비학위과정(대학기관) 개설 및 운영이 어려운 영역(복수 응답)

영역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5영역	없음	무응답
기관 수	4	6	2	7	14	18	15

<표 107>은 다섯 영역의 필수이수시간이 적절한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약 73%의 기관에서는 현재의 필수이수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수시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관은 약 20.6% 정도였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현재의 120시간으로는 한국어교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기관 설문 조사에서는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 조사에서 이수자들의 교육 시간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는 48.2점으로 나타나 기관 응답과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 과정에 참여하는 이수자들의 경우 기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수시간이 적

절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 과정 수료 후 교원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현장에서 가르쳐야 하는 주체가 이수자들임을 생각해 볼 때 이수자들의 만족도가 현실적으로 더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표 107> 비학위과정(대학기관)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의 적절성

적절함에 대한 인식	적절함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합계
기관 수	46	13	4	63
비율(%)	73	20.6	6.4	100

기관 운영의 중점 사항으로 교사 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관이 가장 많았다. 교사 능력 배양과 교원자격시험 합격을 모두 표시한 기관도 11개가 있었다. 기타에는 해외 파견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108> 비학위과정(대학기관) 강의의 중점 사항(복수 응답)

중점 사항	교사 능력 배양	교원자격시험 합격	기타	무응답
기관 수	44	25	2	4

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한 경우, 그 이유로 과정생의 요구 차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가장 많았다. 이는 과정생들이 비학위과정을 수강하는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타 의견으로는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기관이 세 개 있으나, 많은 기관에서 수강생 모집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수강생 모집이 어려운 이유로는 비학위과정을 이수해도 3급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어렵고, 실제 교육기관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비학위과정의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비학위과정의 수강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비학위과정의 목적, 존재 이유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외 기타 의견으로는 수강생들의 국어학이나 한국어교육에 대한 기초 지식 부족, 이해력 부족 등이 있었다.

<표 109> 비학위과정(대학기관) 운영 시 어려운 점(복수 응답)

운영 시 어려운 점	과정생의 학력차	과정생의 현장 교육	과정생의 전공차	과정생의 요구 차이	기타	무응답
기관 수	9	10	11	27	13	5

㉔. 교육 참관 및 실습 방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영이 어렵다고 했던 영역 중 가장 많은 기관에서 어렵다고 응답한 영역은 5영역이었다(<표 106> 참조). 여기에서는 실제 5영역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5영역에 속해 있는 교육 실습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모의수업 혹은 학습자 대상 수업 실습과 수업 참관을 같이 실시하거나 학습자 대상 수업 실습, 모의수업, 수업 참관 세 가지를 같이 운영하고 있었다. 기타 운영 방식으로는 일대일 지도, 교안 작성법을 통한 강의 실습 등이 있었다.

<표 110> 비학위과정(대학기관) 교육 참관 및 실습 방식(복수 응답)

실습 방식	학습자 대상 수업 실습	모의수업	수업 참관	기타	무응답
기관 수	42	57	57	4	1

교육 실습 중 참관의 경우 2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많았다. 기타에는 1~2회와 같이 응답하거나 시간으로 응답한 기관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시간으로 응답한 기관들은 8시간부터 18시간까지 다양하게 응답하였다.

<표 111> 비학위과정(대학기관) 참관 횟수¹⁷⁾

참관 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기타	무응답	합계
기관 수	14	23	8	2	1	10	5	63
비율(%)	22.2	36.5	12.7	3.2	1.6	15.9	7.9	100

17) 6이상으로 답한 경우는 시간 수를 응답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실습은 1회를 실시하는 기관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회를 실시하는 기관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1~2회와 같이 응답하거나 시간으로 응답한 기관들에 해당하는데, 3시간부터 12시간까지로 응답하였다.

<표 112> 비학위과정(대학기관) 실습 횟수¹⁸⁾

참관 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기타	무응답	합계
기관 수	22	14	6	3	4	8	6	63
비율(%)	34.9	22.2	9.5	4.8	6.4	12.7	9.5	100

참관 수업을 위한 연계 기관으로는 대학 내 한국어교육원이 가장 많았다. 기타에는 내부 기관이라고 표시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의 기관인지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었는데, 이를 포함하면 대부분 같은 대학 내 내부 기관을 이용해 참관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 비학위과정(대학기관) 참관 연계 기관(복수 응답)

연계 기관	한국어 교육원	학과 수업 (학부)	학과 수업 (대학원)	외부 기관	국외 기관	1회성 모의 강의	기타	무응답
기관 수	42	5	7	4	0	0	8	5

실습 수업을 위한 연계 기관도 대학 내 한국어교육원이 가장 많았다. 대학기관은 대학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교육원과 연계하여 실습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한국어교육원과 학과 수업(학부, 대학원)을 모두 표시한 기관도 있었다. 기타는 내부 기관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 표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학위과정에서는 참관과 실습 과목을 대학 내 기관, 특히 한국어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부 사람

18) 6이상은 시간 수를 응답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들이 수업을 참관하거나 비전문가가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참관과 실습은 횟수보다는 내용의 질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이다. 공청회에서도 비학위과정에서 참관 및 실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표 114> 비학위과정(대학기관) 실습 연계 기관(복수 응답)

연계 기관	한국어 교육원	학과 수업 (학부)	학과 수업 (대학원)	외부 기관	국외 기관	1회성 모의 강의	기타	무응답
기관 수	42	4	6	2	0	0	3	12

ㄷ. 수료 및 평가 방식

대학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학위과정의 평균 수료율은 약 93% 정도였다. 수료 기준은 평가와 출석률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각각의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5> 비학위과정(대학기관) 과정 수료 기준(출석률)

기준 점수	10% 이상	70% 이상	75% 이상	80% 이상	85% 이상	90% 이상	95% 이상	100% 이상	없음	무응답	합계
기관 수	2	3	1	21	26	4	1	2	1	2	63
비율 (%)	3.2	4.8	1.6	33.3	41.2	6.3	1.6	3.2	1.6	3.2	100

19) 93.75%라고 응답한 기관이 있었는데, 90% 이상에 포함하였다.

<표 116> 비학위과정(대학기관) 과정 수료 기준(평가)

기준 점수	60점 이상	65점 이상	70점 이상	75점 이상	80점 이상	85점 이상	90점 이상	없음	무응 답	합계
기관 수	20	2	21	1	6	0	1	10	2	63
비율 (%)	31.7	3.2	33.3	1.6	9.5	0	1.6	15.9	3.2	96.8

<표 117> 비학위과정(대학기관) 시험 실시 횟수

실시 횟수	2회(중간, 기말)	1회(기말)	없음	기타 ²⁰⁾	무응답	합계
기관 수	12	38	6	3	4	63
비율(%)	19.1	60.3	9.5	4.8	6.3	100

출석률은 85% 이상을 수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관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 최소 80% 이상의 출석률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시험은 약 80% 기관에서 과정이 끝난 후에 1회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점수의 기준으로는 70점 이상이 가장 많았고, 60점 이상인 기관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시험 점수나 출석률 외에 수업 실습이 30% 포함되는 경우, 시험 점수나 출석률에 도달하더라도 수업 실습이나 수업 참관에 불참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수료하지 못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기관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 위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²¹⁾

대부분의 기관에서 강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고 강의 평가 결과는 대부분 강사 관리와 강사 임용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기타에는 수시로 보거나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경우, 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21) 실제 공정회에 참석했던 한 참가자는 출석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며 수료 기준이 실제로는 엄격히 지켜지지 않는 기관도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표 118> 비학위과정(대학기관) 강의 평가 실시 여부

실시 여부	실시함	실시하지 않음	무응답	합계
기관 수	51	10	2	63
비율(%)	80.9	15.9	3.2	100

ㄱ. 자격증 취득자 수

자격증 취득자 수는 한 명도 취득하지 못한 기관부터 200명 이상인 기관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관마다 처음 개설한 시기가 다른 점을 고려해 보면,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관이나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기관은 취득자가 없거나 적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취득자 수를 파악해 보지 않은 기관은 17기관, 무응답인 기관이 9기관으로 약 41% 정도의 기관에서는 수료 후 3급 자격증 취득 여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ㄴ. 정리

이상으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중 대학기관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대학기관에서는 대부분 수업 환경이나 강사진의 전공 및 학력, 수업 운영 등에 있어 크게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관에 따라 강사 수 및 강의 시간 등 강의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편차가 매우 커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관 및 실습은 대부분 대학 내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많은 기관에서 이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비학위과정은 제도의 특성상 승인 후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승인 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특히 현재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참관과 실습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2. 기타 운영기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 9월 현재 비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타 운

영기관은 총 18개 기관으로서 크게 사설 기관과 공공 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인력개발센터, 종교 단체, 사설 교육기관 등이 해당하며, 후자는 시 단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 중 설문에 응답한 기관은 총 10개 기관으로, 기타 운영기관의 설문 응답률은 55.6%이다. 본 소절에서는 대학 소속의 기관이 아닌 사설 기관이나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비학위과정의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기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학위과정의 개설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설문 응답 기관 중 비학위과정의 개설 시기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사설 기관 혹은 공공 기관에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개설한 시기는 2006년 이후로 볼 수 있으며, 특히 2011년 이후에 현재 운영 중인 기관의 60%가 개설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어기본법이 시행된 2006년 이후 제도 개설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대학기관이 아닌 기관들에서도 승인 기준을 맞추어 비학위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표 119>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개설 시기(2012년 9월 기준)

	1980년대	1990-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현재	합계
과정 개설 기관 수	0	0	0	0	4	6	10

다음에서는 기관의 운영 현황, 시설 및 교직원 현황, 강사진 현황, 수업 운영 현황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기관 운영 현황

사설 기관 및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현황은 크게 연간 개설 횟수, 운영 기간, 운영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연간 과정 개설 횟수를 보면 기타 운영기관에서는 평균 연 2회 개설하고 있었으며, 연 1회에서부터 5회 이상까지 고루 나타났다.

<표 120>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연간 개설 횟수

개설 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합계
기관 수	2	3	2	1	2	10

기타 운영기관의 경우, 대학기관과는 달리 매회 동일한 기간 동안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운영기관 즉, 사설 기관 및 공공기관의 비학위과정은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네 달 이상 운영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6주 이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7~9주, 혹은 10~12주, 뒤를 이어 4~6주, 13~15주로 나타났다. 7~9주 과정으로 운영되는 기관 중 한 곳은 올해 처음 개설된 곳이다. 또한 16주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관 중 한 곳은 많게는 24주 동안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표 121>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과정 운영 기간

운영 기간	4-6주	7-9주	10-12주	13-15주	16주 이상	합계
기관 수	1	2	2	1	4	10

한편, 기타 기관의 수강료와 수강 인원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는 평균 90만 원으로, 무료부터 240만 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평균 수강 인원은 평균 22~23명 정도였는데,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60명까지 나타났다.

나. 시설 및 교직원 현황

먼저, 과정 수업을 위한 전용 강의실 배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기관에서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배정된 강의실이 없다고 응답한 기관이 한 곳 있었는데 공공 기관에서 운영 중인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이었다.

<표 122>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전용 강의실 배정 여부

배정 여부	배정함	배정하지 않음	합계
기관 수	9	1	10

또한, 아래의 <표 12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기관에서 컴퓨터, 빔 프로젝터, 전자 교탁 등의 기자재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처음 과정 운영을 시행한 기관의 경우 아직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3>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기자재 구비 여부

구비 여부	구비함	구비하지 않음	합계
기관 수	9	1	10

한편 사설 기관 및 공공 기관에서 운영 중인 비학위과정의 경우, 모두 행정 담당자가 배정되어 있었으며, 주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총괄 담당자 하에 행정 직원이 배치된 형태로 나타났다.

<표 124>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행정 담당 배정 여부(복수 응답)

배정	행정 직원	조교	과정 총괄 담당자	담당자 없음
기관 수	6	0	6	0

다. 강사진 현황

사설 기관 및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비학위과정의 경우, 강사 수는 평균 6명으로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15명까지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강사의 전공은 <표 125>와 같다. 강사의 전공을 살펴보면, 국어국문학과 내 국어학 및 국문학 전공자가 2.8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내 한국어교육 전공자가 2.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어국문학과 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국어교육과 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국어교육과 내 국어교육 전공자나 각각 0.3, 0.2, 0.4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타 기관도 대

학기관과 마찬가지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자가 평균 3명, 국어학, 국문학, 국어교육 등 관련 전공자가 평균 3.2명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기관의 경우 해외 파견을 목적으로 과정을 개설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기관은 기타 전공으로 중국어 등 외국어 전공자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다.

<표 125>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강사 전공

전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전공	국어국문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국문학 전공	국어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국어교육과 국어교육 전공	기 타
강사 수	2.4	0.3	2.8	0.2	0.4	0.3

강사들의 학력은 대학기관과 마찬가지로 박사 과정 수료 이상인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석사 과정부터 박사 졸업까지 그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서도 지적한 것처럼 강의 내용의 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126>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강사 학력

학력	석사 과정	석사과정 수료	석사 과정 졸업	박사 과정	박사 과정 수료	박사 과정 졸업
평균 강사 수	0.5	0	0.3	0.5	2.7	2.2

사설 기관 및 공공 기관의 비학위 양성과정에서 강사는 2급 소지자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사설 및 공공 기관 비학위과정의 강사 일인당 최다 강의 시간은 평균 39.4시간으로서 대학 비학위과정과 비교하여 2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인당 최다 강의 시간은 적게는 20시간부터 72시간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강의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한 강사가 여러 과목을 강의할 경우 강의 내용을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27>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강사 자격증 소지 현황

자격증	1급	2급	3급	없음
평균 강사 수	0.1	2.3	0.6	1.2

다음의 <표 128>은 강사진의 강의 경력을 조사한 결과인데, 강사들의 강의 경력은 대체로 4년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8>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강사 강의 경력

강의 경력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평균 강사 수	0.2	1	0.5	4.3

강사진의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사설 기관이나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비학위 과정도 대학기관처럼 강사 수, 최대 강의 시간, 학력 등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강의 내용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기준 및 지침에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 수업 운영 현황

수업 운영 현황은 일반 현황과 특수 현황, 5영역의 운영 방식, 수료 및 평가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ㄱ. 수업 운영 관련 일반 현황

교재 사용에 있어서 각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교재를 제작하거나 이미 출판된 타 교재를 활용하거나 강의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유인물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기관의 특수한 변인을 고려하여 개별화된 교재를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타 기관에서 기존에 개발된 교재를 참조함으로써 다른 기관의 교육 내용의 질과도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과정에서 개설된 강좌명과 실제 수업에서의 내용의 일치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모든 기관에서는 일치한다고 응답했다.

<표 129>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의 사용 중인 교재 유형(복수 응답)

교재 유형	자체 제작	출판 교재 활용	유인물	기타
기관 수	5	5	5	1

사실 및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 유형, 강좌명과 수업 내용의 일치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130>과 같다. 사실 및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비학위과정에서는 개설 강좌명과 실제 수업 내용이 대체로 일치, 혹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점과 관련하여 실제 이수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강사진 현황에서 기관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대학기관에 대한 조사에서 기관 인식과 이수자들의 인식 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던 것에 기대어 보면 기타 운영기관 과정도 기관 인식과 이수자 인식 간에 차이가 클 수도 있을 것이다.

<표 130>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개설 강좌명과 실제 수업 내용의 일치 정도

일치 정도	완벽하게 일치	대체로 일치	거의 일치하지 않음	일치하지 않음
기관 수	5	5	0	0

ㄴ. 수업 운영의 특수 현황

수업 운영의 특수 현황은 운영의 어려움이나 운영 시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개설 및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영역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131>과 같다. 개설과 운영이 어려운 영역을 묻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특정 영역에 있어서, 문제점 혹은 어려운 점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5 영역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기관의 경우, 실습 연계 기관과 관련된 것으로서 실

습 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수업 중 참관이 수업 방해가 되어 교육기관, 한국어교사, 한국어 학습자 모두 불편해 한다는 점을 응답 이유로 밝혔다. 또한 실습 교과목을 운영할 때 수업 참관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131>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의 개설 및 운영이 어려운 영역(복수 응답)

영역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5영역	무응답
기관 수	1	0	0	0	2	7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에 대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타 기관의 비학위과정에서는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시간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많이 나타났다. 이때 ‘적절하지 않음’은 ‘부족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²²⁾ 이와 함께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과목의 성격이나 과정생의 변인에 따라 ‘적절함’의 기준이 상대적일 수 있다고 인식하여 분명하게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타 운영기관의 과정 내 강의의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32>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의 적절성

적절함에 대한 인식	적절함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기관 수	5	2	3

사설 및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비학위과정에서는 한국어 교사로서의 능력 배양을 교원자격시험 합격보다 우선에 두고 있다. 이 밖에 둘 다라고 응답한 기관도 2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자격시험 합격에 보다 중점을 두는 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시험 준비를 위한 별도의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 수업이 한국어 강사자격증 시험을 위한 이론수업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강사로서 반드시 필요한 이론지식들이지만 현지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강사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너무 이론적이고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수업이 적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라는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실습 및 참관과 관련된 수업 시수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3>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과정 내 강의의 중점 사항(복수 응답)

중점 사항	교사 능력 배양	교원 자격 시험 합격	둘 다
기관 수	5	3	2

이 밖에 단기 양성과정 운영 시 전반적으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과정생의 학력 차이, 전공 차이와 같이 과정생의 배경 변수, 과정생의 요구, 그리고 실습 및 참관과 관련한 문제를 꼽았다. 특히 해외에서 참관 또는 실습을 할 경우 일정 조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기관에서 과정생의 요구 차이를 운영 시 어려운 점으로 꼽았던 것과 대조되는 결과이다. 기타 기관은 해외로의 취업, 3급 자격증 응시 등 목적성을 가지고 개설되는 경우가 있어 과정생의 요구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일 수도 있다.

<표 134>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운영 시 어려운 점(복수 응답)

운영 시 어려운 점	과정생의 학력차	과정생의 현장 교육 실시	과정생의 전공차	과정생의 요구 차이	기타	무응답
기관 수	2	2	2	1	3	1

㉔. 교육 참관 및 실습 방식

강의 운영 시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는 교육 실습 방식에 대한 조사는 크게 참관과 실습의 측면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교육 참관 및 실습 운영은 대부분 모의수업 혹은 학습자 대상 수업 실습과 수업 참관을 같이 실시하거나 학습자 대상 수업 실습, 모의수업, 수업 참관 세 가지를 같이 운영하고 있었다. 기관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여건이 안 되는 경우, 국외 현지 대학교 한국어학과, 혹은 한국어교육기관을 통해 한국어, 한국문화 수업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도 있었다.

<표 135>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교육 참관 및 실습 방식(복수 응답)

실습 방식	학습자 대상 수업 실습	모의수업	수업 참관	기타
기관 수	4	9	8	0

참관과 실습의 횟수를 살펴보면, 먼저 참관의 경우 1회 또는 3회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실습의 경우에는 대체로 1회부터 6회까지 고루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참관, 실습 횟수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기관이 각각 30%, 40%나 되어 실제 수업 운영에 있어서 각 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표 136>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참관 횟수

참관 횟수	1회	2회	3회	무응답
기관 수	3	1	3	3

<표 137>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실습 횟수

실습 횟수	1회	2회	3회	4회	6회	무응답
기관 수	1	1	2	1	1	4

또한 참관, 실습과 관련하여 연계되어 있는 현장 기관의 유무와 형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138>과 같다. 대학원과 1회성 모의 강의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형태에서 고루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대학 내 비학위과정과는 달리 한국어교육원보다 대학 외 기관, 대학 내 학부과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표 138>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참관 연계 기관(복수 응답)

참관 기관	한국어 교육원	학부	대학원	외부 기관	국외 기관	1회성 모의 강의	기타	없음
기관 수	1	2	0	2	2	0	1	0

실습과 관련한 현장 연계 기관에 대한 조사 역시 참관 기관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참관뿐만 아니라 실습은 중국과 같은 해외 현지 대학교의 한국어학과를 활용한다거나 국내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특별 과정, 다문화센터, YMCA와 같은 기관 등과 연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기관도 대학기관에서의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참관과 실습의 질적 측면은 파악이 어렵다.

<표 139>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실습 연계 기관(복수 응답)

참관 기관	한국어 교육원	학부	대학원	외부 기관	국외 기관	1회성 모의 강의	기타	없음
기관 수	1	1	0	1	2	0	1	0

ㄷ. 수료 및 평가 방식

기타 운영기관의 비학위과정에서 과정생 수료와 관련한 조사는 수료 기준에 대한 것으로서 시험 평가 점수와 출석률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먼저 과정생의 평균 수료율은 대체로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80%대 이하의 수료율을 보인 기관이 두 곳, 응답하지 않은 기관이 두 곳으로서 대학 내 기관에 비해서 시설 및 공공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비학위과정에서의 수료율은 낮거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140>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과정생의 평균 수료율

수료율	70-79%	80-89%	90-99%	100%	무응답
기관 수	1	1	3	3	2

수료 기준으로 시험 평가 점수와 출석률을 살펴보면, 먼저 수료 가능 하한 점수는 60점, 80점인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반면에 90점인 경우는 전혀 없었다.

<표 141>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과정 수료 기준(평가)

점수	60점	70점	80점	90점
기관 수	3	1	6	0

<표 142>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과정 수료 기준(출석률)

출석률	70-79%	80-89%	90% 이상
기관 수	1	8	1

또한 수료 가능 최소 출석률은 10개 기관에서 대체로 80~89%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이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설 기관, 공공 기관과 같은 기타 운영기관의 비학위과정 수료 기준은 대학기관의 비학위과정에 비해서 덜 엄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수료를 위한 시험 실시 횟수를 보면, 기말 시험 1회만을 시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하지 않은 기관도 두 곳이나 되어 실제 과정 운영에서 시험 실시와 결과의 관리가 통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명한지 않다. 기타 과목별로 별도의 시험을 시행하거나 중국어와 같은 특정 외국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다는 기관도 있었다.

<표 143>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시험 실시 횟수

실시 횟수	2회(중간, 기말)	1회(기말)	없음	무응답
기관 수	3	5	0	2

비학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과정생의 수료와 관련한 평가뿐만 아니라 강사의 강의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강의 평가 실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4>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강의 평가 실시 여부

실시 여부	실시함	실시하지 않음	무응답
기관 수	8	1	1

위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기관에서 강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평가 결과는 다음 학기 수업 내용 및 자료와 강사 관리에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마. 자격증 취득자 수

과정생의 자격증 취득자 수와 관련하여 사설 및 공공 기관의 비학위과정에서는 다른 유형의 기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145> 비학위과정(기타 운영기관) 자격증 취득자 수

취득자 수	0명	1~5명	6~10명	기타	무응답
기관 수	2	1	1	2	4

위의 <표 145>와 같이, 0명인 경우가 20%, 1~5명과 6~10명이 각각 10%로 나타났으며, 응답하지 않은 기관도 40%나 되었다. 응답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서는 확인이 안 된다고 응답하였다. 기타의 경우, 각각 70명, 192명이라고 응답한 기관도 있었다.

마. 정리

지금까지 사설 기관 및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학위과정의 실태를 살펴 보았다. 기타 기관들은 모두 2006년 이후에 생겨났으며, 정기적으로 동일한 기간 동안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강사진의 수, 학력, 최다 강의 수 등에서는 편차가 크게 나타나 강의의 질에 대한 편차도 클 것으로 보인다. 실습 및 참관은 대부분 모의수업, 수업 참관, 실제 학습자 대상 수업 실습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외 대학을 비롯해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하여 참관 및 실습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료 기준은 대학기관에 비해 덜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기관수가 전국적으로 18기관밖에 안 되고, 설문 응답한 기관은 10기관에 불과해 결과를 수치로 보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경향성을 살펴보았다는 데에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3. 각 지역별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네 차례에 걸쳐 지역별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공청회에서 나온 비학위과정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기관들에서 수강생 모집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는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내용이다. 비학위과정을 이수해도 3급 교원자격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렵고, 합격하더라도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수강생이 감소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둘째, 현재의 기관 승인 제도로는 비학위과정을 질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현재의 국어기본법에서는 서류 심사를 통해 적합 혹은 부적합 판정을 내려 기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심사는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관리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비학위과정의 표준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셋째, 수업 시간 수가 매우 부족하다. 이는 과목 수와도 관련되는 문제인데, 과목 수에 비해 시간이 매우 부족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 과목 수를 줄이거나 수업 시간을 늘리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120시간은 전문적인 교사를 양성하기에 매우 불충분하므로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

넷째, 참관 및 실습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참관과 실습은 시간도 너무 적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감시할 장치도 없다. 참관 및 실습

시간 확대, 실습일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통해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제3절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1.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통계

현재(2012년 9월)까지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는 총 8,137명으로 1급 소지자 94명, 2급 소지자 4,033명, 3급 소지자 4,010명이다.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전체의 1.2%로 2011년부터 배출되었다. 2급 자격증 소지자는 전체의 49.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3급 자격증 소지자는 전체의 49.2%로 2급 자격증 소지자와 비율은 비슷하나, 점차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평균 심사 합격률은 83.5%이다.

<표 146>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현황('12.09.기준)

연도	신청자	합격자				합격률(%)
		1급	2급	3급	소계	
2006	1,750	-	269	599	868	49.6
2007	790	-	185	454	639	80.9
2008	911	-	341	501	842	92.4
2009	1,092	-	613	424	1,037	95.0
2010	2,248	-	826	1,331	2,157	95.9
2011	1,923	81	1,155	573	1,809	94.1
2012.09월	850	13	644	128	785	74.0
계(비율)	9,564	94 (1.2%)	4,033 (49.6%)	4,010 (49.2%)	8,137 (100%)	83.5

한편, 3급 자격증 취득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응시자의 합격률은 26.3%로 필기시험은 평균 32.3%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시험 합격률은 85.5%이다.

<표 147>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현황('12.10.기준)

연도	필기시험			면접시험			총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06 (1회)	1,022	383	37.5%	373	342	91.7%	33.5%
2007 (2회)	1,662	504	30.3%	494	455	92.1%	27.4%
2008 (3회)	1,828	454	24.8%	448	439	98.0%	24.0%
2009 (4회)	2,196	1,148	52.3%	1,141	807	70.7%	36.7%
2010 (5회)	2,564	587	22.8%	587	551	93.8%	21.5%
2011 (6회)	2,825	673	23.8%	684	594	86.8%	21.0%
2012 (7회)	2,945	1,020	34.6%	1,099	-	-	-
계	15,042	4,769	32.3%	4,826	3,188	85.5%	26.3%

※ 시행기관: 2006~2008(한국어세계화재단), 2009~(한국산업인력공단)

※ 2012년은 1차 필기시험(09.23) 시행 후, 2차 면접시험(11.10~11) 실시, 합격자 미발표
제2차 시험(면접) 대상인원은 제6회 필기 합격자 중 원서접수자 79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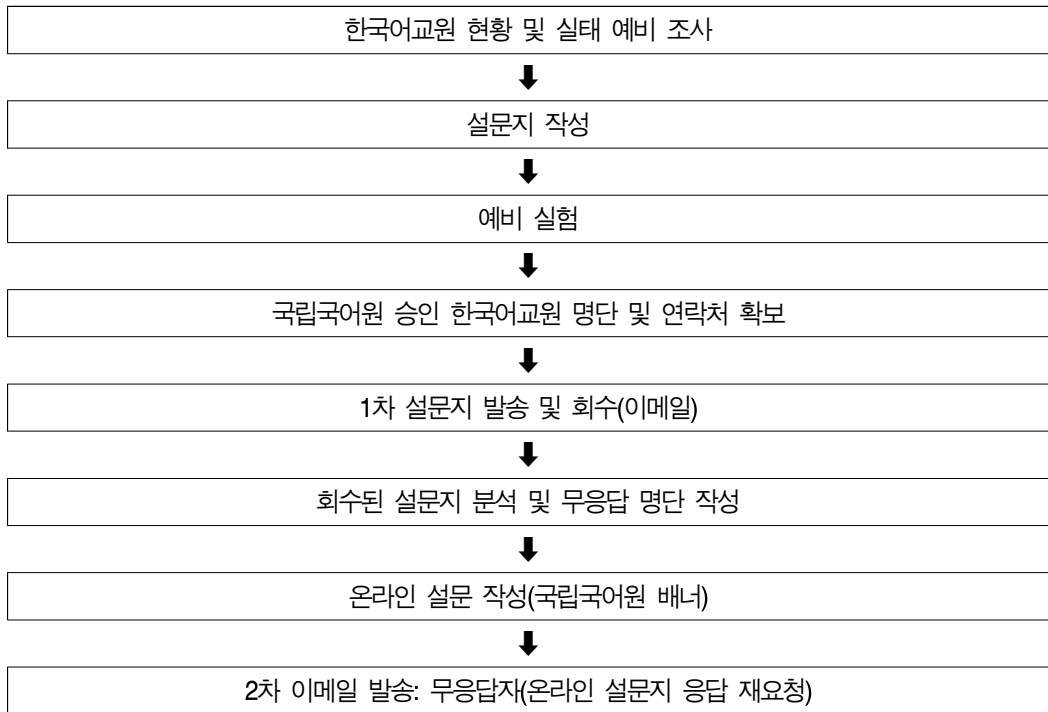
2.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현황

1) 조사 과정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격증 소지자 8,137명(2012년 9월 현재)를 대상으로 총 두 차례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이메일 설문 조사 방법으로 2012년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었으며, 2차 조사는 온라인 설문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2012년 9월 12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되었다.

2012년 9월 현재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8,137명으로 1차 설문의 회신율

은 17.9%(1,302명)²³⁾였다. 2차 온라인 설문 조사는 1차 설문 조사 무응답자(5,992명)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및 한국어교육 관련 학회 5곳(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중언어학회, 한국어어문화교육학회, 국제한국어문화학회, 한글학회)과 한국어교육 관련 인터넷 카페 8곳을 통해 온라인 설문 조사 참여 방법²⁴⁾을 알렸다. 1차와 2차 설문 조사 참여자는 총 1,831명(이메일 설문 1,302명, 온라인 설문 529명)으로 응답률은 25.1%이다. 조사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23) 주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자격증 소지자 7,715명에게 발송하여 1,302명의 회신을 받았다.

24)

<설문 조사 참여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09_new/) 또는
 한국어교원자격심사 사이트(<http://kteacher.korean.go.kr/main.do>)
 의 “설문 조사 안내” 창에서 바로 연결 가능
 <설문 조사 기간>
 2012년 9월 12일(수) ~ 10월 5일(금)



<그림 16> 자격증 소지자 관련 조사의 흐름

2) 조사 결과

1,831명의 응답자 중 중복된 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1,814명의 응답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가. 급수별 인원 수

응답자 1,814명 중 1급 자격증 소지자는 48명(2.6%), 2급 자격증 소지자는 936명(51.6%), 3급 자격증 소지자는 830명(45.8%)로 2급 자격증 소지자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8,137명) 수 대비 급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1급은 51%, 2급은 23.3%, 3급은 20.7%이다.

<표 148>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급수별 인원 수

구분	1급	2급	3급	총계
인원(명)	48	936	830	1,814
백분율(%)	2.6	51.6	45.8	100

나. 자격증 취득 경로

3급 자격증은 단기양성과정을 마친 후, 한국어교원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경우가 84.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국어기본법 시행 이전의 강의 경력을 인정받아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9.6%이다. 학부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1.7%)는 학부에서 부전공을 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이다.

<표 149>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 취득 경로

구분	학부과정	대학원과정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단기양성과정	경력	총계
인원(명)	14	10	7	17	702	80	830
백분율(%)	1.7	1.2	0.8	2.0	84.6	9.6	100

2급 자격증은 대학원 졸업 후 취득한 경우가 4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이버대학교 졸업 후 취득 23.6%, 학부과정 졸업 후 취득 17.6%의 순이었다. 단기양성과정을 통해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2급으로 승급된 경우로서 자격증 최초 취득(3급) 경로를 응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150>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경로

구분	학부과정	대학원과정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단기양성과정	경력	총계
인원(명)	165	430	48	221	46	26	936
백분율(%)	17.6	45.9	5.1	23.6	4.9	2.8	100

1급 자격증 취득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승급’만이 가능한데, 다양한 응답(대학원

과정, 단기양성과정, 학부과정)이 이루어진 것은 자격증 최초 취득 경로를 응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151> 한국어교원 1급 자격증 취득 경로

구분	학부과정	대학원과정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단기양성과정	경력	총계
인원(명)	1	41	0	0	2	4	48
백분율(%)	2.1	85.4	0.0	0.0	4.2	8.3	100

다. 자격 취득 후 경력

3급 자격을 소지한 이들의 경력은 1년 미만(17.3%)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었다. 자격 취득 후, 경력이 없는 경우도 134명(16.1%)이나 되었다.

<표 152>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소지자 경력

	경력 없음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무응답	총
인원(명)	134	153	144	125	68	47	83	76	830
백분율(%)	16.1	18.4	17.3	15.1	8.2	5.7	10.0	9.2	100

2급 자격을 소지한 이들의 경력 역시 1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었다. 자격 취득 후, 경력이 없는 경우도 173명(18.5%)이었다.

<표 153>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소지자 경력

	경력 없음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무응답	총
인원(명)	173	202	185	145	98	59	69	5	936
백분율(%)	18.5	21.6	19.8	15.5	10.5	6.3	7.4	0.5	100

1급 자격을 소지한 이들의 경력은 5년 이상이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처음 자격을 취득한 이후부터의 경력을 기입한 것으로 보인다.

<표 154> 한국어교원 1급 자격 소지자 경력

	경력 없음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무응답	총
인원(명)	3	7	4	3	1	0	28	2	48
백분율(%)	6.3	14.6	8.3	6.3	2.1	0.0	58.3	4.2	100

라. 자격 취득 후 활동 영역

활동 영역에 대한 응답은 복수응답이 가능한 질문이었으며, 중복된 데이터는 각 항목에 합산하여 처리하였다. 먼저 3급 자격 소지자의 활동 영역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155>와 같다. 기타 항목을 선택한 201명의 응답은 개인 과외 15명, 자원봉사 22명, 대학원 진학 6명, 타직 종사자 23명(초등, 중등 교원 및 행정 직원), 활동하지 않음 135명이었다. 총 응답자 830명 중에서 대학원 진학, 타직 종사자, 활동하지 않는 이와 응답하지 않은 이들을 빼면 현재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609명(73.4%)이었다. 응답자 중 현재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 이들(대학원 진학, 타직 종사자, 활동하지 않음)은 164명(19.75%)이었다.

<표 155>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소지자 활동 영역

항목	인원(명)	백분율(%)
국내·외 대학 또는 부설교육기관	217	20.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4	3.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41	3.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250	23.5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45	4.2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54	5.1
국내외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	28	2.6
국내외 대학에서 비전임교원(강사 또는 계약직 등)으로 근무	18	13.0
기타	201	18.9
무응답	57	5.4
총계	1,065	100

2급 자격 소지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영역은 국내·외 대학 또는 부설교육기관이었다. 기타 항목을 선택한 190명의 응답은 개인 과외 8명, 자원봉사 17명, 대학원 진학 11명, 타직 종사 12명(초등, 중등 교원 및 행정 직원), 활동하지 않음 142명이었다. 총 응답자 936명 중에서 대학원 진학, 타직 종사자, 활동하지 않는 이와 응답하지 않은 이들을 빼면 현재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761명(81.3%)이었다. 응답자 중 현재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 이들(대학원 진학, 타직 종사자, 활동하지 않음)은 168명(17.95%)이었다.

<표 156>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소지자 활동 영역

항목	인원(명)	백분율(%)
국내·외 대학 또는 부설교육기관	400	31.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8	3.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37	2.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275	21.4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41	3.2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51	4.0
국내외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	37	2.9
국내외 대학에서 비전임교원(강사 또는 계약직 등)으로 근무	211	16.4
기타	190	14.8
무응답	7	0.5
총계	1,287	100

1급 소지자의 활동 영역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급 자격 소지자 총 48명 중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이는 3명뿐이었으며, 무응답 3인을 제외한 나머지 42인은 모두 한국어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표 157> 한국어교원 1급 자격 소지자 활동 영역

항목	인원(명)	백분율(%)
국내·외 대학 또는 부설교육기관	35	51.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4.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2	2.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2	2.9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2	2.9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0	0
국내외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	3	4.4
국내외 대학에서 비전임교원(강사 또는 계약직 등)으로 근무	14	20.6
기타	4	5.9
무응답	3	4.4
총계	68	100

마. 직위

활동 영역을 여러 개 응답한 경우에는 직위도 중복 응답하였기에 총합의 수가 응답자 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3급 자격 소지자들의 직위는 시간강사가 가장 많았으며(43.3%), 자신의 직위를 응답하지 않은 이가 많아 무응답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33%). 무응답 비율이 높아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설문 응답 결과만을 놓고 보면 3급 자격 소지자들은 시간강사 다음으로 자원봉사자(7.6%)와 방문지도사(6.1%)로 일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방과 후 교사, 이중언어강사, 다문화 코디네이터, 한국학교 교사 등으로 일하고 있다는 응답(3.1%)도 있었다.

<표 158>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소지자 직위

	시간 강사	전임 강사	외래 교수	방문 지도사	자원 봉사	교수	기타	무응답	총합
인원(명)	364	28	6	51	64	24	26	277	840
백분율(%)	43.3	3.3	0.7	6.1	7.6	2.9	3.1	33.0	100.0

2급 자격 소지자의 경우에도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는 이(57.1%)가 가장 많았고,

직위에 관해 응답하지 않은 이도 23.4%에 달했다. 무응답을 제외하면 2급 자격 소지자들의 직위는 시간강사(57.1%), 전임강사(5.2%), 자원봉사(4.7%)의 순이다. 기타 응답(2.2%)으로 교재 편집, 교장, 교감, 센터장, 소장, 연구원, 온라인 교육 담당, 총괄주임, 책임자 등이 있었다.

<표 159>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소지자 직위

	시간 강사	전임 강사	외래 교수	방문 지도사	자원 봉사	교수	기타	무응답	총합
인원(명)	540	49	15	38	44	18	21	221	946
백분율(%)	57.1	5.2	1.6	4.0	4.7	1.9	2.2	23.4	100

1급 자격 소지자는 직위에 관한 무응답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1급 소지자 역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는 비율이 70.8%로 가장 높았으며 무응답을 제외하고 전임강사(6.3%), 교수(4.2%), 외래교수(2.1%) 순이었다. 기타 응답으로 총괄주임 및 교사가 있었다.

<표 160> 한국어교원 1급 자격 소지자 직위

	시간 강사	전임 강사	외래 교수	방문 지도사	자원 봉사	교수	기타	무응답	총합
인원(명)	34	3	1	0	1	2	2	5	48
백분율(%)	70.8	6.3	2.1	0.0	2.1	4.2	4.2	10.4	100.0

바. 시간당 강사료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 월급 및 연봉에 대한 질문도 하였으나 응답 비율이 현저히 낮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고, 시간당 강사료만 분석하였다. 3급 자격 소지자들의 평균 시간당 강사료는 26,393원이었다. 시간당 강사료는 현재 한국어교육 관련 업무를 하는 이들 중에서 무보수로 일을 하는 자원봉사자와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2만 원 이상 3만 원 미만의 강사료를 받는 이가 149명(27.2%)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사료를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167명

(30.5%)이었다.

<표 161>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소지자 시간당 강사료

보수	무급	만원 미만	1만원 이상	2만원 이상	3만원 이상	4만원 이상	5만원 이상	무응답	총합
인원(명)	3	5	87	149	100	16	20	167	547
백분율(%)	0.5	0.9	15.9	27.2	18.3	2.9	3.7	30.5	100.0

2급 자격 소지자들의 평균 시간당 강사료는 28,674원이었다. 시간당 강사료는 현재 한국어교육 관련 업무를 하는 이들 중에서 무보수로 일을 하는 자원봉사자와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2만 원 이상 3만 원 미만의 강사료를 받는 이가 227명(3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만 원 이상 4만 원 미만의 강사료를 받는 이는 223명(30.7%)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강사료를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197명(27.1%)이었다.

<표 162>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소지자 시간당 강사료

보수	무급	만원 미만	1만원 이상	2만원 이상	3만원 이상	4만원 이상	5만원 이상	무응답	총합
인원(명)	2	5	39	227	223	21	12	197	726
백분율(%)	0.3	0.7	5.4	31.3	30.7	2.9	1.7	27.1	100.0

1급 자격 소지자들의 평균 시간당 강사료는 32,485원이었다. 2급, 3급 자격 소지자와 비교하면 평균 시간당 강사료가 3천 8백 원 정도 차이가 났다. 3만 원 이상 4만 원 미만의 강사료를 받는 이가 20명(47.6%)으로 가장 많았고, 강사료를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15명(35.7%)이었다.

<표 163> 한국어교원 1급 자격 소지자 시간당 강사료

보수	무급	만원 미만	1만원 이상	2만원 이상	3만원 이상	4만원 이상	5만원 이상	무응답	총합
인원(명)	0	0	0	5	20	2	0	15	42
백분율(%)	0.0	0.0	0.0	11.9	47.6	4.8	0.0	35.7	100.0

사. 주당 강의 시간

현재 3급 자격 소지자 중 한국어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무응답 제외, 무보수 자원봉사자 포함)의 평균 주당 강의 시간은 11.88시간이었다. 주당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의 강의를 담당하는 이들이 168명(27.6%)으로 가장 많았으며,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의 강의를 담당하는 이들은 111명(18.2%)이었다.

<표 164>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소지자 주당 강의 시간

강의 시간 (시간)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25시간 이상	무응답	총합
인원(명)	99	93	168	111	58	20	60	609
백분율(%)	16.3	15.3	27.6	18.2	9.5	3.3	9.9	100.0

현재 2급 자격 소지자 중 한국어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무응답 제외, 무보수 자원봉사자 포함)의 평균 주당 강의 시간은 13.14시간으로 3급 자격 소지자와 약 1시간 정도 차이가 났다. 주당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의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가 253명(33.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16.2%), 20시간 이상 25시간 미만(16.2%)의 강의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2급 자격 소지자들의 주당 강의 시간은 개인 간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65>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소지자 주당 강의 시간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25시간 이상	무응답	총합
인원(명)	75	123	253	122	123	21	44	761
백분율(%)	9.9	16.2	33.2	16.0	16.2	2.8	5.8	100

1급 자격 소지자들의 평균 주당 강의 시간은 16.4시간으로 2, 3급 자격 소지자보다 3~4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20시간 이상 25시간 미만의 강의를 담당하는 이들이 16명(38.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의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가 15명(35.7%)이었다.

<표 166> 한국어교원 1급 자격 소지자 주당 강의 시간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25시간 이상	무응답	총합
인원(명)	1	2	15	4	16	3	1	42
백분율(%)	2.4	4.8	35.7	9.5	38.1	7.1	2.4	100.0

3) 정리

현행 한국어교원 자격 소지자의 주요 요구 내용은 크게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관한 것과 한국어교원 처우에 관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격증 소지자의 다량 배출로 인한 자격증의 실효성 문제, 자격증 취득 절차의 불편함 및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단기양성과정,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격증 취득자가 양산되고 있어 교원의 전문성 보장이 어려워지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행 자격제도에서의 각 급 구분에 따른 이점을 발견할 수 없어 승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자격증 취득 절차의 불편함 및 어려움에 관해서는 학사/석사/박사 과정의 구분 없이 졸업만을 기준으로 모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과 자격증 취득 시점에 관한 것, 과목 심사의 지나친 형식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밖에 자격증 재발급과 관련하여 재발급 날짜 표기, 한국어교원검정능력시험의 난이도, 신뢰도, 타당도 문제, 홍보 부족으로 인한 해외에서의 자격증 인식 부재 등을 거론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위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성적에 제한을 두거나 실습을 강화할 것, 자격 취득 전에 시험 제도를 도입하거나 면접을 의무화할 것 등의 자격제도 강화를 통한 교원 수급 조절을 제안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 절차와 관련해서는 기관 인증을 통한 절차의 간소화, 인터넷 등을 통한 자격증 발급의 편의성 확보, 졸업과 동시 취득, 승급 심사기준의 합리성 확보 등을 요구하였다.

한국어교원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대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원자격제도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자격증 소지자의 우선 채용, 강

의료 인상, 최저 시수 보장, 4대 보험 가입, 퇴직금제 도입을 통한 강사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그 밖에 지속적인 보수교육이나 재교육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3. 각 지역별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

지역별 공청회에서 나온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 처우 개선이 급선무이다. 현재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일을 하는 한국어교원들은 고용 불안,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각 자격증 급수별 최소임금 책정이나 4대 보험 보장 등의 복지, 신분 보장을 위한 법제화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

둘째, 취업에 어려움이 많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취업할 곳이 없거나, 경력자만을 우대하는 기관들이 많아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취업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격증 소지자들의 취업 지원 등을 희망하고 있었다.

셋째, 자격증 위계화와 자격증 취득 조건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을 가지나, 3급을 가지나 심지어 1급을 가지나 대우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 급수에 따른 처우의 차별화를 기대했다. 한편으로, 2급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학부와 동일 전공으로 석사를 받는 경우와 비동일계 전공으로 석사학위만으로 2급을 갖는 절차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학부 졸업 후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더욱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4년간 45학점 혹은 7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2급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2년간 18학점 이수 후 석사학위 소지자라서 우대 받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다.

넷째, 한국어교원의 질적 강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교사로서의 인성 문제, 수업의 질적 확보를 위해 재교육 프로그램 등의 필요성을 요구하였다.

다섯째, 정부에서의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홀대받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어교육과 전혀 무관한데도 초·중등 교사 자격증이 있다거나 교수여서 한국어 교사로 우대받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5장 한국어교원 양성 및 자격제도 개선 방안과 법령 개정안

제1절 한국어교원 양성 및 지원 효율화 방안

1. 개선안 제안의 배경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 보급 등)’를 근거로 한다. 이 조항에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그에 따른 상세한 내용들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기되어 있다.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어교원의 양성기관이나 자격제도의 수정 또는 보완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양성기관 대상의 실태 조사와 전문가 집단을 초청하여 개최한 네 차례의 공청회,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실태 조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국어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

칙'에 대해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개선안 도출 방식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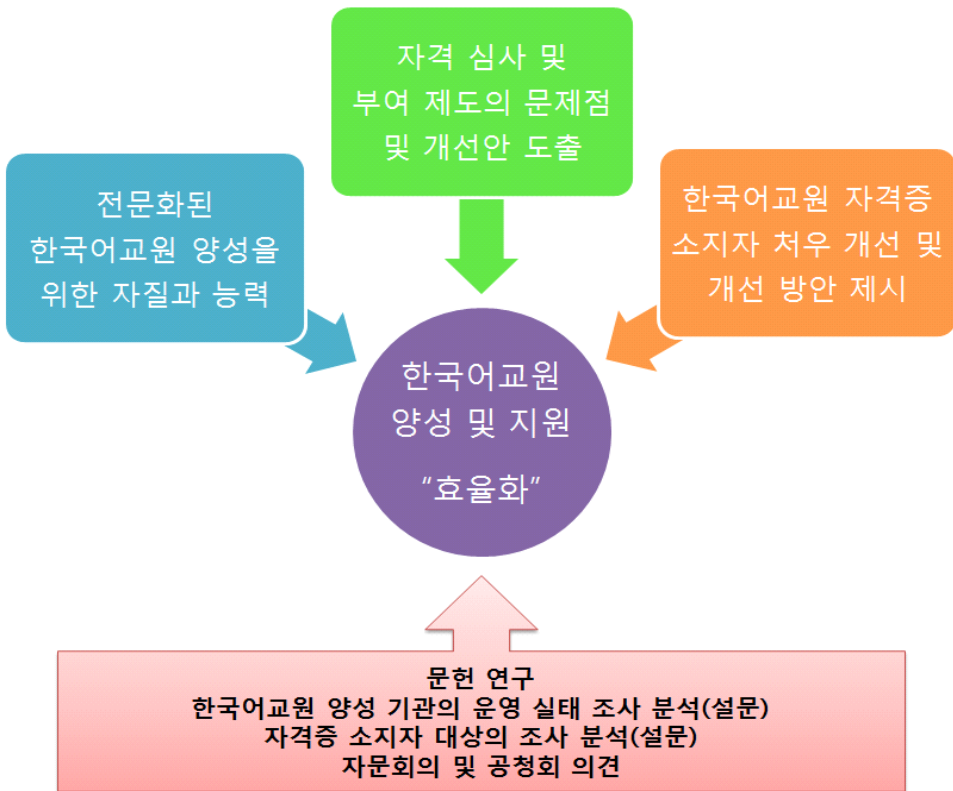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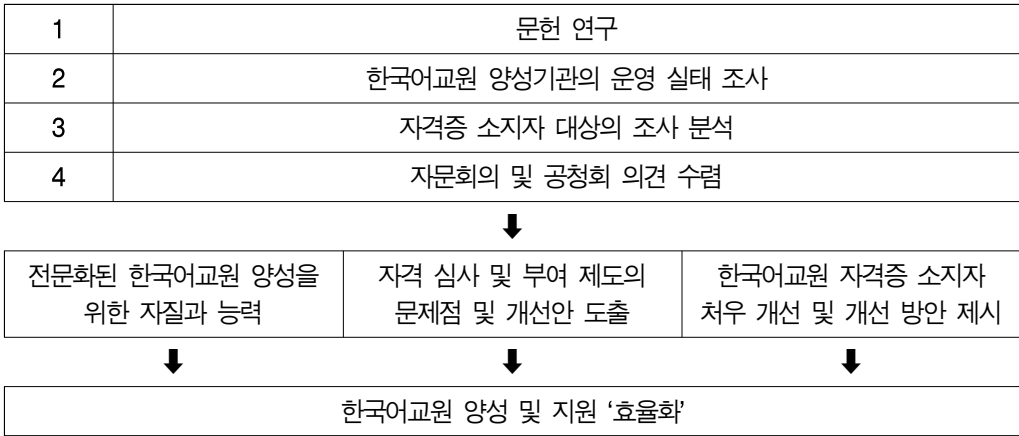
본 과제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한국어교원 양성 및 지원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효율화'는 한국어교원 양성 및 지원과 관련된 현행 제도나 지침, 규정이 갖고 있는 비효율성이나 개선·보완되어야 점들을 찾아내어 관리나 운영에서의 효과나 경제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함으로써 얻어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팀에서는 한국어교원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여 개선안을 제안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가질 것이다. 우선 '효율화'의 궁극적 목적은 '전문화된 한국어교원의 양성'에 두고 있음을 확인하고, '전문화된 한국어교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도출해 낼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및 공청회 분석 결과와 자문위원들의 자문 내용, 문헌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어서 정비되고 개선된 안을 토대로 양성된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 심사 및 부여 제도'에 관해 현재의 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대상 등을 분석해 낼 것이다. 이 부분 역시 설문 조사 및 공청회 분석 결과와 자문위원들의 자문 내용, 문헌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들의 처우 개선이나 지원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7,000여 명의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5.1%의 응답률 기반의 자료), 공청회 및 자문회의 등에서 제시되고 제안한 방식 등을 분석할 것이며, 이 결과들을 활용하여 개선 방안이나 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상의 개선안 도출 방식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7> 개선안 도출 방식 및 절차

3.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어교원 양성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한국어교원의 근본적 자질과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화일 것이다. 그러나 국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한국어교원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 ‘한국어교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나 능력을 선언적으로나마 명시한 것이 없다. 자격의 부여 및 취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질과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한국어교원이 될 수 있는지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러한 한국어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내용학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서 교육과정에 설계되고 운영될 때 교원으로서의 인성교육과 전문교육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교원’은 교원으로서의 건전한 인성, 사명감,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하며, 한국어에 대한 지식과 한국어교육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업 진행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성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을 양성하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질적 수준이 요구되는데 현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이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기관이라 함은 대학 및 대학원, 대학 부설 교육기관이나 사설 학원 등을 포함하는데 본 연구팀에서는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의 기관 운영에 대한 승인 기준은 대학 등의 기관이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를 문서를 통해 신청하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심사하여 대학 및 기관별로 심사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다. 서면 심사에 의한 승인을 획득하면 학과 등의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이러한 양성 절차 및 교육과정/교과목 심사 등의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문제와 기관 승인의 문제,

자격증 발급의 문제가 서로 얽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문제와 기관 승인 및 자격증 발급 문제를 분리하여 다룰 것이다. 교육과정의 문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다룰 필요가 있으며, 기관 승인 및 자격증 발급의 문제는 제도적 차원에서 함께 접근해야 하므로 묶어서 다루도록 하겠다. 본 절에서는 우선 교육과정의 문제를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학위과정의 경우

2005년 7월 국어기본법의 발효 이후, 학위과정을 통해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대학 및 대학원은 매년 급속히 증가해 왔다. 국립국어원의 자료에 따르면 오프라인 학부과정은 2012년 9월 현재 23개 대학에서 운영되는데 해마다 1개 대학 이상이 개설되고 있다(<표 11>, <그림 10> 참조). 2012년 9월 현재 일반대학원 79개가 오프라인 대학원과정을 승인 받았지만 실제로는 77개 대학원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이번 조사에서는 21개의 학부과정(<표 9>)과 66개 대학원(<표 39>)이 응답을 하였다. 일반대학원이 37개, 교육대학원이 21개, 국제대학원 등 특수대학원이 3개였고, 그 외의 경우는 사회개발대학원, 전문대학원, 경영행정 문화대학원,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인문산업대학원에 속한 과정이었다. 대학원과정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표 42>, <그림 12>).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부와 대학원도 증가 추세인데, 학부과정은 6개, 대학원과정은 1개로 7개 기관 모두 응답하였다(<표 67>). 마지막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학위과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9월 현재 12개가 승인을 받았고 11개가 운영 중에 있다. 그 중 10개 기관에서 응답을 하였다(<표 81>).

가. 문제점

앞에서도 한국어교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기술하여 제안하였는데, 갖추어야 할 자질을 제대로 갖추게 하게 위한 교육과정에서의 보완이나 수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비록 각 대학의 다양한 제도(복수전공제 등)와 관련하여 현행의 자격증 취득 관련 학점의 수를 늘리지는 못하지만 현행의 국어기본법 시행

령의 [별표1]의 영역 구분이나 과목의 제시 등을 수정 보완하여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교원 양성의 토대를 만들어내야 한다.

좀 더 부연하자면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별표1]에서는 5영역 체제 및 각 영역별 이수학점의 수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각 영역이 다루어야 할 주요 내용들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영역별 과목명이 제한적이고 예시된 과목이든 아니든 개별 기관이 과목별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 학부과정이나 대학원과정의 교과목이 동일하게 한 표에 기술되어 있어 내용의 차별화를 갖기 어렵다는 점들을 주요 문제로 제기할 수 있다. 특히 5영역의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의 경우 국립국어원 지침(2011)에서조차 ‘강의 참관은 시수 제한 없이 가급적 초·중·고급의 수업을 교루 참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의수업은 전공학생 전원이 1회 이상 기회를 갖게 한다, 강의 실습은 실습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등의 기준만을 제시하여 몇 시간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안내나 지침이 없다는 점 역시 방만하고 비효율적 기관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²⁵⁾. 이들에 관한 내용들은 공청회 및 실태 조사 결과, 자문위원들의 자문내용, 이전의 연구들(국립국어원 2008 2009, 2011)에서도 수차례 지적되고 확인된 내용들이다.

나. 개선 방향 및 근거

학위과정에서의 주요 개선 내용 및 지향점은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교원’의 효율적 양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의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소절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학위과정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25) 이번 개선 방안의 최대 강조 사안은 한국어교육 실습 영역의 확대와 관리 방안의 마련이다. 최은규(2011:155-156)에서도 제안했듯이 현행의 학점이나 시수로는 실제적인 교육 능력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기 역부족이다. 교육 실습의 이수학점과 시수를 최대한 확대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고 현직 교원의 지도를 받으면서 수업 실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송향근(2012)에서는 학위 기관의 경우 대다수가 교내에 한국어교육기관이 상시 운영되어 수업 참관이나 수업 실습을 시행할 수 있으나 비학위과정,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개선의 방향]

① 학위과정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관련 개정 제안

본 연구팀에서는 현행 기본법 시행령의 5영역 체제를 4영역 체제로 축소하고, 일부 영역은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각 영역별 과목 예시 방법도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인정교과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2005년 국어기본법 개정 당시부터 제시된 교과목은 사회적 변화(학습자의 다양화와 해외 한국어교육의 중요성 증가 등)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문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교과목 개설이 가능해져야 한다. 나아가 지역별, 대학별 다양성과 차별화,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필수이수과목(‘과목명’이 아니라 ‘내용’으로)의 지정

일부 영역에서는 필수이수과목(혹은 과목명이 아니라 내용으로)을 지정하되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학위를 취득하여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점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현행 45학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복수전공이 어려워지는 등의 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학점 확대가 아닌 주요 과목을 대상으로 영역별 필수이수과목을 선정하여 이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지정 필수이수과목 방식을 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과목 수강의 균형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1영역의 경우 한국어학개론이나 문법론 등을 주로 이수하지만 음성음운론이나 사회언어학, 대조언어학 등은 상대적으로 개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발음 교육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국어음성음운론 관련 과목의 이수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점 수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한국어학과 한국어교육학의 내용학적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필수이수과목제를 제안한다.

③ 교육 실습의 강화

교육 실습의 질적인 강화를 위하여 교육 실습 영역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실습일지 양식, 실습 후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하며, 참관 및 실습 등의 시수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양질의 실제적인 실습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 역시 현장에서는 이수학점이나 시간의 절대 확대를 요구하지만 현행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부가적으로 참관 시간과 실습 시간을 명시하고 교육 봉사까지도 추가함으로써 훨씬 강화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수업 참관 및 교육 실습, 그리고 교육 봉사를 위한 협력 기관의 확인이나 표준 보고서 양식 등의 자료에 대한 통제는 동반되어야 한다.

[개선 제안의 근거]

① 기관별 개설 교과목 수 편차 및 부족

<표 14>는 학위과정 중 학부과정의 기관별 전체 개설 교과목 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교과목 수가 기관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교과목 수가 15개로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최소 기준의 교과목만 개설하는 과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5>, <표 16>, <표 17>, <표 45>, <표 46>, <표 70>, <표 85>는 영역별 교과목 개설 수에 대한 것으로 자격 취득에 필요한 최소치에 가까운 수의 과목만 개설하고 있는 과정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영역별 교과목 개설 여부만을 교육과정의 질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② 개설 교과목 중 내용학 관련 과목 강화 및 교직과목 등의 확대 개설 요구

네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 중 교육과정과 관련된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각 영역 교과목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내용학 부분의 강화, 교직과목 이수의 추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③ 교육과정의 자율성 부족

한국어교육의 경우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존재하지만, 현재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각 대학이 비슷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청회에서도 각 교육기관의 성격에 맞게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학의 특화된 교육과정이 자격 취득을 위한 규격화된 교육과정으로 인해 침해받고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 부족과 관련하여 [별표1]에 포함되지 않아서 개설하지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던 다문화 관련 과목이나 상호문화이해 관련 과목 등의 개설이 요구되기도 했다.

④ 학위과정 간 차별성 부족

공청회에서는 학위과정별(학부/대학원) 교육과정의 차별화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 학부에서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두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⑤ 참관 및 실습의 확대 및 강화 요구

네 차례의 지역 공청회를 통해, 참관 및 실습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위과정은 교육 실습 교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한 학기 간 이수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실습 교과목의 운영 형태와 심도는 교육기관별로 균질화 되지 않은 실정이다. 참관 시수, 실습과 모의수업의 실제 참여 시간에 교육기관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교육 내용과 양적 시수가 얼마나 다른지 조사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질 높은 현장 교육 능력 함양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참관과 실습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로써 참관과 실습의 시수 및 통과 기준을 학위과정에 정립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 수업의 운영 현황은 관련 공문과 참관 및 실습일지, 현장 사진 등의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최소 수업 시수와 조건을 명시

함으로써 참관과 실습 과목에 관해 본래 두었던 교육적 취지를 달성해야 한다.

다. 개선 방안(현행과 비교)

① 영역의 축소 및 이수학점의 재조정

현행의 1, 2영역을 하나의 영역('제1영역: 언어지식 영역')으로 통합하고, 3영역은 '제2영역: 한국어교육학 영역'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현행 1, 2영역의 경우 언어 및 언어학, 한국어 및 한국어학에 관한 내용학적인 접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 영역이 적은 이수학점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운영에 비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언어 관련 지식을 12학점으로 묶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영역의 경우는 아래의 표와 같이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하고 이수학점을 표시하여 균형 있게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 방안에서는 2영역 한국어교육학의 이수학점을 학부의 경우는 현행 24학점에서 3학점을 줄인 21학점으로, 3영역 문학 및 문화 영역은 6학점에서 9학점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5개 영역 체제를 4개 영역 체제로 축소하는 안의 강점은 위에서 말한 대로 언어 지식 영역의 강화를 학과별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수학점의 재조정은 비록 4영역 교육 참관과 실습 과목이 이수학점수의 변동 없이 운영 방식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현장적용성을 보완할 수 있고, 2영역의 하위영역 구분 및 필수이수과목의 설정으로 균형성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학부과정에서 2영역의 3학점을 3영역의 문학 및 문화영역으로 이동할 경우 다문화 관련 과목이나 상호문화이해 관련 과목 등의 추가 이수를 가능하게 해주어 그간 지적되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특히 개정 4영역 교육 실습 영역은 학부 및 대학원과정 모두 동일하게 3학점으로 현행 이수학점을 유지하되 참관 및 실습 기간을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에 참관은 최소 20시수로 교육 실습은 최소 10시간을 이수하도록 명시하였고, 40시간의 의무 교육 봉사를 추가하였다.

또한 기관들의 학기별 개설 교과목 수를 확대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 또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개설 교과목의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별, 대학별 특성화를 위한 과목 추가 개설까지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비록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에는 반영되지 않더라도 실사 평가 시 가산점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영역의 통합, 과목의 조정 등을 통해 학부과정의 경우, 오프라인, 온라인, 학점은행제 모두 자격증 2급 취득을 위해서 현행과 같이 45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골자이다.²⁶⁾

26) 필수이수학점으로 12학점의 추가를 통해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복수전공 등의 선택 제약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현행 45학점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현 행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제13조제1항 관련)**

번호	영역	과목 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 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국어학 개론, 한국어 음운론, 한국어 문법론, 한국어 어휘론, 한국어 의미론, 한국어 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 어문규범 등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응용 언어학, 언어학 개론, 대조 언어학, 사회 언어학, 심리 언어학, 외국어 습득론 등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어 교육 개론, 한국어 교육과정론, 한국어 평가론, 언어 교수 이론, 한국어 표현 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 이해 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 발음 교육론, 한국어 문법 교육론, 한국어 어휘 교육론, 한국어 교재론, 한국 문화 교육론, 한국어 한자 교육론, 한국어 교육 정책론, 한국어 번역론 등	24학점	9학점	9~10학점	46시간
4	한국 문화	한국 민속학, 한국의 현대 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 문학 개론, 전통문화 현장 실습, 한국 현대 문화 비평, 현대 한국 사회, 한국 문학의 이해 등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 교육 실습	강의 참관, 모의수업, 강의 실습 등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 한국어교원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 정 안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학부의 경우(제13조제1항 관련)**

영역		선택 이수학점 (주전공/복수전공)		선택 이수학점 (부전공)		필수이수과목*
제1영역 언어지식 영역		12학점		6학점		한국어 음운론 관련, 한국어문법론 관련 과목 등 2과목 모두(주전공/복수전공), 1과목(부전공-한국어문법론 과목) 지정
제2영역 한국어 교육학 영역	한국어교육학 총론	6학점	21학점	3학점	6학점	한국어교육학 총론 영역 중 한국어교육개론 및 문학문화교육 중 문화교육론 관련 과목 등 2과목 모두(주전공/복수전공), 1과목(부전공-문화교육 관련 과목) 지정
	기능교육	6학점		3학점		
	내용교육	6학점		3학점		
	문화문화교육	3학점		3학점		
제3영역 한국 문학 및 문화 이해 영역		9학점		6학점		
제4영역 한국어 교육 실습 영역		3학점		3학점		
합 계		45학점		21학점		

*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전공/복수전공자는 6학점(1영역)+6학점(2영역)=12학점을, 부전공자는 3학점(1영역)+3학점(2영역)=6학점에 해당하는 지정된 필수이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단, 필수이수과목은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나 자격증은 취득할 수 없음.

* 4영역의 한국어교육 참관과 실습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참관(최소 20시수)과 실습(최소 10시수)을 2학점으로 인정함. 재학 중 총 40시간 이상의 교육 봉사를 확인할 경우 1학점으로 인정함.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대학원의 경우(제13조제1항 관련)**

영역		선택 이수학점 (일반대학원)		선택 이수학점 (특수대학원)		필수이수과목*
제1영역 언어지식 영역		3학점		3~4학점		한국어 음운론 관련 과목과 한국어문법론 관련 과목 중 1개 지정
제2영역 한국어 교육학 영역	한국어교육학 총론	3학점	9학점	3~4 학점	9~10 학점	한국어교육학 총론 관련 과목과 문화교육 관련 과목 중 1개 지정
	기능교육	3학점		3~4 학점		
	내용교육	3학점		2~3 학점		
	문화문화교육	3학점		3학점		
제3영역 한국 문학 및 문화 이해 영역		3학점		2~3학점		
제4영역 한국어 교육 실습 영역		3학점		2~3학점		
합 계		18학점		18학점		

* 전문성 강화를 위해 표 1영역 및 2영역에 명시된 과목에 준하는 2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필수이수과목은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학위를 취득하여도 자격은 취득할 수 없음.

* 학부 전공이 동일 전공이 아닐 경우에 전공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어학계열 등 유사계열일 경우 2-3학점(한국어학 관련 과목 혹은 한국어교육학 관련 과목 중 한 과목)을 추가 이수해야 하며, 기타 전공일 경우 4-6학점(한국어학 관련 2-3학점 1개, 한국어교육학 관련 2-3학점 1개 과목)을 추가 이수해야 함. 이들 추가이수과목은 유사전공 및 기타전공자를 위해 설정된 것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나 자격증은 취득할 수 없음.

* 4영역의 한국어교육 참관과 실습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참관(최소 20시수)과 실습(최소 10시수)을 2학점으로 인정함. 재학 중 총 40시간 이상의 교육 봉사를 확인할 경우 1학점으로 인정함.

②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필수이수과목의 설정과 교육 실습 교과목 내용 강화

‘잘 가르치는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한국어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지식과 소양의 배양을 위해 제1영역 및 제2영역의 경우 필수이수과목을 지정한다.

우선 학부과정에서는 현행의 [별표1]을 따를 경우, 1영역 한국어학 부분은 ‘한국어학개론 및 그 외 한 과목’,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부분 역시 ‘언어학개론 및 기타 한 과목’을 이수하는 것에 그쳐 한국어학의 내용학 학습에 취약점을 보이고, 언어습득론, 사회언어학 등의 일반언어학 지식 역시 매우 편협해지거나 낮은 수준의 이해만을 보이고 있다. 대학원과정 역시 학부 전공이 동일계가 아닐 경우에도 이수 요구학점이 겨우 18학점에 그치고, 그나마 1, 2영역은 1개 과목씩에 그쳐 만약 한국어학개론(1영역), 언어학개론(2영역)만을 이수할 경우 각 영역의 내용학 이해에 큰 취약점을 보일 것은 분명하다.

이에 학부과정의 경우, 현행의 학부 주전공/복수전공 45학점, 부전공 21학점 기준은 그대로 따르되 주전공/복수전공의 경우는 개정안 영역 기준 1영역에서 2개 과목(6학점), 2영역에서 2개 과목(6학점) 총 4개 과목(12학점)을 지정하여 필수로 이수하게 하고, 부전공의 경우는 개정안 영역 기준 1영역에서 1개 과목(한국어문법론, 3학점), 2영역에서 1개 과목(문화교육 관련 과목, 3학점) 총 2개 과목(6학점)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이수학점은 개정 1영역은 현행의 1, 2영역 합계인 12학점과 같으나 필수이수학점(6학점, 부전공은 둘 중 한국어문법론 과목)의 지정으로 내용학 강화에 초점을 둘 수 있고, 개정 2영역은 현행보다 3학점이 줄었으나 하위 4개 영역 중 총론 영역과 문학문화교육 영역에서 각 1개 과목을 필수이수학점(6학점, 부전공은 둘 중 문화교육영역 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21학점이, 개정 3영역은 현행 6학점에서 3학점이 늘어난 9학점이 되어 문화 영역을 강화하려 하였다.²⁷⁾ 이 필수이수과목들은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졸업은 할 수 있으나 자격은 취득할 수 없

27) 1, 2영역의 필수이수과목 지정은 이번 보고서에서는 하나의 안으로 제안한 것이며, 차후 여러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것임을 밝힌다.

다.

또한 그동안 취약한 교과목으로 논의되고 개선 방안 및 강화 요구가 많았던 현 5영역(신 4영역)의 교육 참관 및 실습 교과목은 이수학점을 유지하면서 각 과정별로 최소 기간이나 시수를 명시하고, 교육 봉사를 의무화하면서 실제 교육 수준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학위과정의 경우 '4영역의 한국어교육 참관과 실습 교과목은 10일 이상의 기간에 최소 20시수의 수업 참관과 10시수 이상의 교육 실습을 수행해야 2학점을 인정하고, 재학 기간 동안 교육 봉사 40시간을 수행해야 1학점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3학점을 완료'하는 것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역의 구분과 교과목 예시(안)] - 학부과정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과목(학부의 경우)(제13조제1항 관련)

영역		선택 이수학점 (주전공/복수전공)		선택 이수학점 (부전공)		필수이수과목*
제1영역 언어지식 영역		12학점		6학점		한국어 음운론 관련, 한국어문법론 관련 과목 등 2개 과목 모두(주전공/복수전공), 1개 과목(부전공-한국어문법론 과목) 지정
제2영역 한국어교육학 영역	한국어교육학 총론	6학점	21학점	3학점	6학점	한국어교육학 총론 영역 중 한국어교육개론 및 문학문화교육 중 문화교육론 관련 과목 등 2개 과목 모두(주전공/복수전공), 1개 과목(부전공-문화교육 관련 과목) 지정
	기능교육	6학점		3학점		
	내용교육	6학점		3학점		
	문화문학교육	3학점				
제3영역 한국 문학 및 문화 이해 영역		9학점		6학점		
제4영역 한국어 교육 실습 영역		3학점		3학점		
합 계		45학점		21학점		

*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전공/복수전공자는 6학점(1영역)+6학점(2영역)=12학점을, 부전공자는 3학점(1영역)+3학점(2영역)=6학점에 해당하는 지정된 필수이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단, 필수이수과목은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나 자격증은 취득할 수 없음.

* 4영역의 한국어교육 참관과 실습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참관(최소 20시수)과 실습(최소 10시수)을 2학점으로 인정함. 재학 중 총 40시간 이상의 교육 봉사를 확인할 경우 1학점으로 인정함.

학부과정에서의 전공 및 복수전공은 아래와 같이 각 영역별 6학점씩 12학점을, 부전공은 각 영역별 3학점씩 6학점을 필수이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 제1영역: 한국어 음운론 관련, 한국어문법론 관련 과목 등 2 개 과목 모두(주전공/복수전공), 1 개 과목(부전공-한국어문법론 과목) 지정
- 제2영역: 한국어교육학 총론 영역 중 한국어교육개론 및 문학문화교육 중 문화교육론 관련 과목 등 2 개 과목 모두(주전공/복수전공), 또는 1 개 과목(부전공-문화교육 관련 과목) 지정

대학원과정의 경우, 현행의 18학점 기준은 그대로 따르되 개정안 영역 기준 1영역에서 한국어음운론(2~3학점)을, 2영역에서는 한국어교육학 총론 관련 과목 또는 문화교육 관련 과목(2~3학점)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이수학점은 개정 1영역은 현행의 1, 2영역 합계인 3~4학점과 비슷하나 필수이수학점(3학점)으로 지정함으로써 내용학 강화에 초점을 둘 수 있고, 개정 2영역 역시 하위 영역별로 이수학점을 명시하고 1개 과목을 필수이수학점(3학점)으로 지정함으로써 하위 영역 간 균형을 맞추려 하였다. 물론 이들이 택하는 필수이수과목은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학위는 취득할 수 있으나 자격은 취득할 수 없다.

또한 대학원 역시 현 5영역(신 4영역)의 교육 참관 및 실습 교과목은 이수학점을 유지하되 기간 및 시수를 명시하고, 교육 봉사를 의무화하면서 실제 교육 수준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학부과정과 동일하게 '4영역의 한국어교육 참관과 실습 과목은 10일 이상의 기간에 최소 20시수의 수업 참관과 최소 10시수 이상의 교육 실습을 수행해야 2학점을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재학 기간 동안 교육 봉사 40시간을 수행해야 1학점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3학점을 완료'하는 것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그 외 대학원의 경우는 각 대학별로 선수과목을 최소 6학점, 최대 12학점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선수과목의 선정은 학부에 전공이 없을 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선수과목의 이수 여부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학부과정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부 전공이 동일 전공이 아니고 어학계열 등 유사계열일 경우 2~3학점(한국어학 관련 또는 한국어교육학 관련 2~3

학점 과목 중 한 과목)을 추가 이수해야 하며, 기타 전공일 경우 4~6학점(한국어학 관련 2~3학점 과목 1개와 한국어교육학 관련 2~3학점 1개 과목)을 추가 이수해야 한다. 이들 추가이수과목은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학위를 취득하여도 자격은 취득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역의 구분과 교과목 예시(안)] - 대학원과정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과목(대학원의 경우)(제13조제1항 관련)

영역		선택 이수학점 (일반대학원)			선택 이수학점 (특수대학원)			필수이수과목*
		동일전공	유사전공	기타전공	동일전공	유사전공	기타전공	
제1영역 언어지식 영역		3학점		+3 학점	3~4학점		+2~3 학점	한국어음운론 관련 과목과 한국어문법론 관련 과목 중 1개 지정
제2영역 한국어교육학 영역	한국어교육학 총론	3학 점	9학 점	+3 학점	3~4 학점	9~10 학점	+2~3 학점	한국어교육학 총론 관련 과목과 문화교육 관련 과목 중 1개 지정
	기능교육	3학 점			3~4 학점			
	내용교육	3학 점			2~3 학점			
	문화문학교육	3학 점						
제3영역 한국 문학 및 문화 이해 영역		3학점			2~3학점			
제4영역 한국어 교육 실습 영역		3학점			2~3학점			
합 계		18학점		21 학점	24 학점	18학점	20~21 학점	22~24 학점

- * 전문성 강화를 위해 표 1영역 및 2영역에 명시된 과목에 준하는 2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필수이수과목은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학위를 취득하여도 자격은 취득할 수 없음.
- * 학부 전공이 동일 전공이 아닐 경우에 전공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어학계열 등 유사계열일 경우 2~3학점(한국어학 관련 과목 혹은 한국어교육학 관련 과목 중 한 과목)을 추가 이수해야 하며, 기타 전공일 경우 4~6학점(한국어학 관련 2~3학점 1개, 한국어교육학 관련 2~3학점 1개 과목)을 추가 이수해야 함. 이들 추가이수과목은 유사전공 및 기타전공지를 위해 설정된 것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나 자격증은 취득할 수 없음.
- * 4영역의 한국어교육 참관과 실습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참관(최소 20시수)과 실습(최소 10시수)을 2학점으로 인정함. 재학 중 총 40시간 이상의 교육 봉사를 확인할 경우 1학점으로 인정함.

대학원과정에서는 일반대학원이든 특수대학원이든 1, 2영역에서 정해진 1개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해야 한다.

- 제1영역: 한국어음운론 관련 과목과 한국어문법론 관련 과목 중 1개 지정
- 제2영역: 한국어교육학 총론 관련 과목과 문화교육 관련 과목 중 1개 지정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부 전공이 동일 전공이 아니고 어학계열 등 유사계열일 경우 언어지식영역 관련 또는 한국어교육학 관련 2~3학점 과목 중 한 과목을 추가 이수해야 하며, 기타 전공일 경우 언어지식영역 관련 2~3학점 과목 중 1개와 한국어교육학 관련 과목 중 한 과목을 추가 이수해야 한다.

③ 각 영역별 과목 예시 방법의 수정을 통한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보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은 2005년 7월 발령 당시 한국어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기초 자료로서의 교과목 예시였는데, 이후 교과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예시가 아닌 제시 교과목처럼 오인되어 온 경향이 있다. 현재는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각 대학 및 대학원이 승인 요청을 하면 기관이 제출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 관련 문서를 통해 심사하여 대학 및 기관별로 승인을 해 주고 심사 결과를 공개해 왔다.

그러나 [별표1]의 과목은 학부와 대학원(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등) 대상의 교과목이 동일하게 제시되어 학부와 대학원의 수준 차이를 나타낼 수 없고, 지역별·대학별 특성화를 꾀하기도 어렵다. 국립국어원 제공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의 19쪽에 교과목 심사를 위한 유의사항이 표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각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교육 내용만을 시행령에 제시하고 현행의 [별표1]에 제시된 교과목은 말 그대로 예시과목명으로 하여 길잡이 등의 지침서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선될 때, 학부와 대학원 각각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대학별·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교원이 양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 제시되어야 한다.²⁸⁾

28) 국립국어원 제공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지침서’의 내용을 사용함.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주요 교육 내용 (제13조제1항 관련)

영역	주요 교육 내용	
제1영역 언어지식 영역	한국어학에 대한 일반 내용(음운, 문법, 어휘, 의미, 화용, 역사, 어문규범 등)과 언어학 일반에 관한 내용이나 언어학 연구 결과를 실제 적용하는 응용언어학적 내용들을 다룬다.	
제2영역 한국어교육학 영역	한국어교육학 총론	한국어교육학개론 및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교재론 및 한국어평가론 등 한국어교육학의 바탕이 되는 기초 이론을 탐구하고 학습한다.
	기능교육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능에 관한 이론 및 실제를 학습한다.
	내용교육	한국어 발음, 어휘, 문법 교육과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문화문학교육	한국어교육의 한 부분으로써 문화 및 문학 교육에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제3영역 한국 문학 및 문화 이해 영역	한국어교육에 도움이 되는 한국 문화 및 문학에 대해 학습한다.	
제4영역 한국어 교육 실습 영역	한국어교육의 현장을 참관하고 모의수업을 거쳐 실제 수업을 실습함으로써 현장 교육에의 접근성을 높인다.	

④ 자격증 취득 조건의 강화

학위과정을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무시험검정’에 의해 합격한 것으로 취급한 것이다. 예비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앞에서 교육과정의 강화, 영역 및 이수학점의 조정 등을 제안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흡해 보이고, 이수학점 등의 확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또 다른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팀에서는 학위과정의 경우 ‘졸업평점 환산점수가 100분의 75이상’이어야 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 및 3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조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법령안에 반영하여 제시할 것이다.

초등 및 중등 여타 관련 학교의 교원자격 취득에 대해서는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161호(2008.01.08.)’의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7조(성적기준) 제1항은 다음과 같다.²⁹⁾

29) 자세한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161호(2008.01.08.)”를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교원자격검정령[시행 2012.11.6] [대통령령 제24160호, 2012.11.6, 일부개정]에 의하면 ‘교육대학·사범대학 등에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무시험검정을 통해 교원자격을 받으려면 전공

제7조(성적기준)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은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교육대학원의 졸업을 요건으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교원양성과정에 적용한다.

2) 비학위과정의 경우

2005년 7월 국어기본법의 발효 이후, 비학위과정인 소위 ‘단기양성과정’을 통해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기관들은 매년 급속히 증가해 왔다. 국립국어원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135개 기관이 승인을 받았고, 본 연구팀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전화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개 기관이 운영을 중단했으며, 시작을 못한 채 준비 중인 기관이 5개였다. 따라서 2012년 9월 조사 시작 시점 기준 110개가 운영 중에 있다.

가. 문제점

비학위과정을 통해 한국어교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제대로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학위과정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서의 보완이나 수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비학위과정에서는 현행의 수업 시수보다 소폭 확대하고 과목이 아닌 영역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좀 더 부연하자면,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별표1]에서는 5영역 체제 및 각 영역별 이수과목을 제시하면서 이수시간만을 명확히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각 영역이 다루어야 할 주요 내용들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고, 제시과목은 많은데 그 과목들을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모두 포함하려 하다 보니 120시간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즉, 각 과목별 3~6시간 정도만이 할당되어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 보니 당연히 수강생들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결과적으로는 3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되고 누적되면서 지금과 같은 비학위과정의 감소

과목은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은 평균 80점 이상을 받아야만 하도록' 성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에 영향을 주었다. 이들에 관한 내용들은 공청회나 실태 조사 결과, 자문위원들의 자문내용, 이전의 연구들(국립국어원 2008 2009, 2011)의 내용에서도 수차례 지적되고 확인된 내용들이다.

나. 개선 방향 및 근거

비학위과정에서의 주요 개선 내용 및 지향점은 이수시간의 소폭 확대와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교원’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교원’을 양성하고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는 양성 기관들의 교육과정 등의 질 향상을 통한 예비 교원의 전문화와, 현재 실시되지 않고 있는 기존 자격증 소지자 및 현장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재직 교원의 전문성 심화로 구분하여 논의할 것이다.³⁰⁾

[개선의 방향]

① 비학위과정의 수업 시수 확대

본 연구팀에서는 비학위과정 중 예비 교원 양성을 위한 과정이 현행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120시간 이수 체제로 되어 있지만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180시간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영역별 이수해야 할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근거 및 방법 등을 논의하고,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안을 제시할 것이다.

② 교육과정 및 교과목 관련 개정 제안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5영역 체제를 학위과정과 같이 4영역 체제로 축소하되, 일부 영역은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이수시간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30) 물론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에는 재교육에 관한 사항이 없다. 다만 이번 과제를 진행하면서 전국의 많은 기관들에서 시행되었던 비학위과정이 여러 주변적 상황에 의해 축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랜 기간 수준 높은 교육을 담당해 왔던 많은 기관들이 현직 교원의 재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과 현장 교원들의 재교육 요청 또한 높았기에 이들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의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리고 학위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과목명을 예시하고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각 영역별, 혹은 하위 영역별로 다루어야 할 내용과 최소시수 등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한 근거 및 방법 등을 논의하고,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안을 제시할 것이다. 학위과정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05년 국어기본법 개정 당시부터 제시된 교과목은 사회적 변화(학습자의 다양화와 해외 한국어교육의 중요성 증가 등)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문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교과목 개설이 가능해져야 한다. 나아가 과목 개설에서도 지역별, 대학별 다양성과 차별화,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필수이수내용 및 이수시간 지정

예비 교원의 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각 영역에서 최소한의 필수이수시간은 물론, 필수이수내용을 지정한다. 수강생들이 지정된 내용을 정해진 시간만큼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정을 수료할 수 있지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다.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영역별 필수이수내용을 선정하여 이를 이수하게 함으로써, 교육 현장에 필요한 능력 함양과 균형적인 교육 내용 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이는 비학위과정의 교원양성기관에서 한국어학과 한국어교육학을 내용학적으로 강화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④ 교육 실습의 강화

교육 실습의 질적인 강화를 위하여 교육 실습의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실습일지 양식, 실습 후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하며, 참관 및 실습 등의 시수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양질의 실제적인 실습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 역시 현장에서는 이수학점이나 시간의 절대 확대를 요구하지만 시간 확대 없이 참관 시간과 실습 시간을 명시하고 교육 봉사를 추가함으로써 훨씬 강화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수업 참관 및 교육 실습, 그리고 교육 봉사를 위한 협력 기관의 확인이나 표준 보고서 양식 등의 자료에 대한 통제는 동반되어야 한다.

[개선 제안의 근거]

① 수업 시수

네 차례의 공청회에서 비학위과정에 대한 논의 중 가장 많은 의견은 수업 시간 수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과목 수에 비해 시간이 매우 부족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가 어려워 과목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120시간은 전문적인 교사를 양성하기에 매우 불충분하므로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팀에서는 과목을 유지하되 시간수를 늘이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② 비학위과정의 운영 기간

<표 96>, <표 121>에 따르면, 운영 기간이 짧게는 4~6주, 길게는 16주 이상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학위과정의 운영 기간이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은 과정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③ 개설 강좌명과 수업의 일치 정도

개설해 놓은 과목과 실제 수업 내용의 일치성에 대한 기관 응답 결과를 보면 (<표 105>, <표 130>)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 ‘완벽하게 일치’하거나 ‘대체로 일치’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이 내용은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강좌명과 수업 내용의 일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④ 참관 및 실습의 확대 및 강화 요구

비학위과정의 교원양성과 관련하여서도 참관 및 실습의 확대 및 강화에 대한 의견이 공청회에서 많았다. 교원양성기관의 교육 전문가들은 비학위과정의 교육 참관 및 실습 운영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첫째, 한 기수로 모인 수강생 수에 비해 참관과 실습의 시수가 충분하지 않다. 학위과정은 한 학기 동안 해당 과목을 경험하게 하는데 반해, 비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참관과 실습

과목의 운영 기간이 짧다. 이에 수강생이 경험할 수 있는 참관과 실습의 양적 기회가 단적으로 적다. 둘째, 수강생들의 수가 모집 시기별로 다르다. 많은 인원이 모집될 때, 해당 기수의 수강생들은 실습 기회를 동료들과 나누는데, 현재 제도에서는 실습의 양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학위과정은 학년별 정원으로 비교적 같은 수의 학생들이 입학하는 데 반해, 비학위과정은 수강생 수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 상례이다. 셋째, 단기간에 모인 다양한 수강생들이 실제로 수업해 보는 과정에서 개인별 역량에 차이가 크다. 학업 배경이 언어 교육과 다른 이들은 더욱 그러하다. 학위과정은 균질적인 수강생이 비교적 일정한 기간에 교수자의 관리를 받는데 반해, 비학위과정의 수강생은 이질적이다. 비학위과정의 참관과 실습은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현장 교육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결국 참관과 실습의 확대가 제도적으로 강화되지 않는다면, 비학위과정을 통해 교육현장 운영 능력이 있는 교원을 양성하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고 본다.

다. 개선 방안(현행과 비교)

① 영역의 축소 및 재조정

현행의 1, 2영역을 하나의 영역('제1영역: 언어지식 영역')으로 통합하고, 3영역은 '제2영역: 한국어교육학 영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그리고 2영역의 경우는 아래의 표와 같이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하고 이수학점(시간)을 표시하여 균형 있게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4영역 교육 실습 영역은 이수학점(시간)을 유지하되 참관 및 교육 실습 시수를 최소시간으로 명시하였고, 교육 봉사를 추가하였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1영역의 수업 시수를 현행 42시간에서 62시간으로 20시간을, 2영역은 46시간에서 70시간으로 14시간을, 3영역은 12시간에서 28시간으로 16시간을 추가하여 확대하였다.

현 행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제13조제1항 관련)

번호	영역	과목 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 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국어학 개론, 한국어 음운론, 한국어 문법론, 한국어 어휘론, 한국어 의미론, 한국어 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 어문규범 등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응용 언어학, 언어학 개론, 대조 언어학, 사회 언어학, 심리 언어학, 외국어 습득론 등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어 교육 개론, 한국어 교육과정론, 한국어 평가론, 언어 교수 이론, 한국어 표현 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 이해 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 발음 교육론, 한국어 문법 교육론, 한국어 어휘 교육론, 한국어 교재론, 한국 문화 교육론, 한국어 한자 교육론, 한국어 교육 정책론, 한국어 번역론 등	24학점	9학점	9~10학점	46시간
4	한국 문화	한국 민속학, 한국의 현대 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 문학 개론, 전통문화 현장 실습, 한국 현대 문화 비평, 현대 한국 사회, 한국 문학의 이해 등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 교육 실습	강의 참관, 모의수업, 강의 실습 등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 한국어교원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 선 안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내용 및 필수이수시간(비학위과정의 경우)(제13조제1항 관련)			
영역		이수시간	필수이수교육 내용과 시간
제1영역 언어지식 영역		62시간	한국어학(음운, 문법, 화용, 어문규범 등)이 최소 32시간을 넘어야 함.
제2영역 한국어교육학 영역	한국어교육학 총론	18시간	각 영역별 이수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기능교육	18시간	
	내용교육	18시간	
	문화문학교육	16시간	
제3영역 한국 문학 및 문화 이해 영역		28시간	한국어교육에 도움이 되는 한국 문화 및 문학 영역에 대해 각 14시간으로 균등 배분하여 강의를 개설·운영한다.
제4영역 한국어 교육 실습 영역		20시간	한국어교육 참관과 실습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참관(최소 10시수)과 실습(최소 10시수)을 이수해야 20시간으로 인정함.
합 계		180시간	

② 예비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필수이수내용의 설정 및 교육 실습 내용의 강화

한국어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지식과 소양의 배양을 위해 각 영역별로 이수내용 및 시수를 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1영역의 경우는 위 표에서와 같이 ‘한국어학 내용’을 32시수 이상 이수해야 하고, 제2, 3영역의 경우는 하위 영역별 이수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취약한 교과목으로 논의되고 개선 방안 및 강화 요구가 많았던 현 5영역(신 4영역)의 교육 참관 및 실습 교과목은 이수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과정별로 최소 기간이나 시수를 명시하고, 교육 봉사를 의무화하면서 실제 교육 수준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비학위과정의 경우 ‘4영역의 한국어교육 참관과 실습 부분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최소 10시수의 수업 참관과 10시수 이상의 교육 실습을 수행해야 20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역의 구분과 교과목 예시(안)] - 비학위과정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내용 및
필수이수시간(비학위과정의 경우)(제13조제1항 관련)**

영역		선택 이수시간		필수이수교육 내용과 시간
제1영역 언어지식 영역		62시간		한국어학(음운, 문법, 화용, 어문규범 등)이 최소 32시간을 넘어야 함.
제2영역 한국어교육학 영역	한국어교육학 총론	18시간	70시간	각 영역별 이수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기능교육	18시간		
	내용교육	18시간		
	문화문학교육	16시간		
제3영역 한국 문학 및 문화 이해 영역		28시간		문학 및 문화 영역을 각 14시간씩으로 균등 배분하여 운영해야 함.
제4영역 한국어 교육 실습 영역		20시간		한국어교육 참관과 실습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참관(최소 10시수)과 실습(최소 10시수)을 이수해야 20시간으로 인정함.
합 계		180시간		

비학위과정 이수자는 아래와 같이 각 영역별로 정해진 이수시간을 따라야 한다.

- 제1영역: '한국어학 관련 내용'을 반드시 32시수 이상 이수해야 함.
- 제2영역: 하위 영역별로 정해진 내용과 이수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제3영역: 문학 영역 14시간, 문화 영역 14시간을 준수해야 함.

③ 각 영역별 과목 예시 방법의 수정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은 2005년 7월 발령 당시 한국어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기초 자료로서의 교과목을 예시하였는데, 이는 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즉, 각 영역별로 과목명을 제시했기 때문에 비학위과정 120시간의 교육과정 역시 과목명에 준하여 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학위과정에서는 주전공이나 복수전공의 경우 예시된 1영역의 8과목 중 2개 과목을, 부전공이나 대학원에서는 1개 과목을 이수하면 되고, 2영역 역시 6개 예시과목 중 주전공이나 복수전공의 경우는 2개 과목을, 부전공이나 대학원에서는 1개 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학위과정에서도 내용학 지식의 불균형 및 부족을 지적했듯이, 비학위과정은 이들 전 과목을 30시간(1영역), 12시간(2영역)에 맞춰 시간을 분배하였다. 그 결과로 각 과목에 3~4시간밖에 할당할 수 없으며 당연히 내용 학습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본 연구팀에서는 총 이수시수를 60시간 추가하여 180시간으로 확대하고, 각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따라 시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게 한 후, 그 편성의 내용을 보고 그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선될 때, 학위과정에서 추구했던 지역별, 대학별, 대상별, 목적별 교육이 구상될 수 있고, 현지의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예비교원은 전문성 강화를, 현직 교원은 전문성 심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영역별 주요 교육 내용은 [별표4]로 추가 제안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될 것이다.

<표 167> [별표4]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주요 교육 내용

영역	주요 교육 내용	
제1영역 언어지식 영역	한국어학에 대한 일반 내용(음운, 문법, 어휘, 의미, 화용, 역사, 어문규범 등)과 언어학 일반에 관한 내용이나 언어학 연구 결과를 실제 적용하는 응용언어학적 내용들을 다룬다.	
제2영역 한국어교육학 영역	한국어 교육학 총론	한국어교육학개론 및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교재론 및 한국어평가론 등 한국어교육학의 바탕이 되는 기초 이론을 탐구하고 학습한다.
	기능 교육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능에 관한 이론 및 실제를 학습한다.
	내용 교육	한국어 발음, 어휘, 문법 교육과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문화문학 교육	한국어교육의 한 부분으로써 문화 및 문학 교육에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제3영역 한국 문학 및 문화 이해 영역	한국어교육에 도움이 되는 한국 문화 및 문학에 대해 학습한다.	
제4영역 한국어 교육 실습 영역	한국어교육의 현장을 참관하고 모의수업을 거쳐 실제 수업을 실습함으로써 현장 교육에의 접근성을 높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비학위과정에 대해 몇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개선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프로그램 교육과정 강화 방안’으로 주요 국가의 자국어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참고(일본의 경우 약 600여 시간)하고, 부전공 등의 학위과정의 수업 시수(21학점*15주=315시간) 등을 근거로 하여 현행의 120시간에서 420시간 정도로 대폭 상향 조정할 것을 검토하였다. 수업 시수를 대

폭 확대할 경우 학위과정의 부전공과 같이 무시험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였으나, 소요 기간이 길어지고 수강비용 등에서의 비현실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120시간을 유지하거나 80시간 정도로 소폭 축소 운영하고 시험 없이(혹은 낮은 수준의 시험을 통해) 별도의 자격증(예를 들어 ‘한국어지도사 자격증(가칭)’ 등) 또는 자격증이 아닌 수료증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지만 한국어교원 3급을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의 존재(학위과정 부전공 등)와 기 3급 자격증 소지자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 제외한 것 등이 그것이다.

4.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가. 문제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격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³¹⁾

우선 심사 대상의 선정과 관련해서 현재는 ‘대학, 대학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의 교육과정, 교과목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대학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하고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즉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제일 중요한 사실은 각 대학이나 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인정 여부다. 그렇지만 이미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립국어원 발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2011)에서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 등에 대한 사항들을 현장 방문으로 실제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증빙 서류만을 접수하여 심사하고 있을 뿐이다. 요구되는 대로 작성된 서류라 해도, 그 서류를 통해 실제 교실에서의 교육 현황을 확인할 수는 없다. 즉, 교육과정이 제대로 편성되어 교과목 개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현 상태로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어렵고 당연히 양성되는 교원의 전문성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3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개선안은 주로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다루어 질 것이다. 공청회 및 자문회의, 각 기관 실태 조사 결과 등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들은 학위과정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비학위과정의 경우는 교육과정에 주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의 심사 절차 관련 규정은 관련 대학 및 대학원 졸업 후 교원 자격을 받으려는 자 모두가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심사 시기 및 회차 등에서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심사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인 평가·심사체계를 개발하여 불필요한 논란이나 개인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자격증 취득 시기가 졸업 후 2~3개월 뒤로 지연되는 문제도 야기한다.

셋째, 과정 운영의 구체적 대상인 교과목의 경우 예시 과목의 개설이 강조되고, [별표1]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을 대학이나 기관이 개설할 경우 과목 적합 여부를 건건이 심사하게 되어 노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이나 대학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 교육이 어려워 질 수 있다. 현장에서는 심사위원의 개인적 판단 등에 따라 동일 과목에 대한 심사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여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기준이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소리도 들린다. 심지어 특정 과목의 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민원이 빈발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넷째, ‘대학 등 기관’이 미리 교육과정 및 교과목 등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대학(원) 졸업, 단기 양성과정을 이수한 개인이 자격심사를 통과할지 여부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없다. 교과목 심사에서 이수 후 ‘과목 부적합’ 등의 평가를 받게 될 경우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거나 6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이나 기관의 과정을 신뢰한 개인이 해결할 수 없게 되어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

다섯째, 학부나 대학원과정의 자격증 부여 기준에서 전공학과명에서 ‘한국어교육 전공’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바, 이는 형식 요건보다 내용적 충족성을 일차적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각 대학의 학과명이나 대학원 전공과정이 단일 독립 전공으로 개설된 경우와 하위 전공으로 개설되는 경우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개선이 시급한 것은 10여 가지로 제각각인 학과 및 전공의 명칭 문제이다.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과과정 및 개설 교과목의 내용적 충족성은 살피지 않은 채, 졸업장이나 성적증명서 등에 ‘일치하지도 않은 채’ 10여 가지로 혼용되는 전공 명칭의 기재 여부만으로 자격의

적합/부적합을 판정하는 폐해는 불합리하다.

나. 개선 방향 및 근거

[개선의 방향]

결국 위와 같은 배경 및 문제점의 노정을 토대로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은 법령에 의한 ‘기관 인증제 및 프로그램 인증제’의 전면적 실시다. 윤소영 외(2011), 오광근 외(2009), 조현성 외(2008) 등의 앞선 연구 및 국립국어원 발간 『새국어생활』(2011)에서 특집으로 다루면서 제안해 준 여러 논의들, 그리고 이번 연구 수행 중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네 차례 실시한 공청회 및 설문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현장의 요구들을 보면 ‘기관 인증제 및 프로그램 인증제’의 실시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그리고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구체적인 방향 정립을 위한 사전 준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 인증제 실시를 통한 교육과정의 질적 강화

현행 개별 심사 등이 갖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학위과정은 기관 인증제가, 비학위과정은 프로그램 인증제가 빠른 시간 안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들 인증제의 실시는 우선 각 교육기관(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포함)이 최소한의 기본 요건(교수진 확보 및 교육 실습 등을 위한 협력기관 확보, 수준 높은 교육과정 개설·운영 등)을 갖추게 할 것이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전문 예비교원의 양성,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 방지, 졸업장과 자격증의 동시 발급 등을 통한 취업의 가능성 제고 등 그간의 약점을 보완하고 많은 강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인증을 위한 기준 제시에서 법령이 정하지 못하는 많은 요건들을 담보하여 한국어교원의 양성 및 재교육 등에서 교육의 품질 강화를 위한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임교원 확보의 경우 법적으로 여러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인증’

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전공 교수진 확보를 제시하고, 전임교원이 있을 경우 가산점을 부가하고, 인원수에 따른 추가 가산점을 부가할 경우 전공 전임교원 확보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전체 개설 교과목 기준 과목 담당 강사진 구성에서도 2, 3, 4명역의 담당 교수진은 ‘전공자로서 5년 이상의 현장 교육 경력을 가진 자’로 일정 비율 이상 구성할 경우에 가산점을 부가한다면 교육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② 교원 자격증의 자동취득제 도입

학위과정의 경우, 현재의 교원자격증 교부 시기가 학위취득 시기와 차이가 있어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동취득제(인증교육기관에 제한)를 도입하여 심사 및 자격증의 발부시기를 졸업 시기에 맞추어 진행해야 한다.

[개선 제안의 근거]

①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및 인증 실시 사례

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의 과목 인증만으로는 실제 교육의 질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교원양성기관의 유형을 단순화하고 정기적인 기관 평가를 통해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사례에서 충분히 그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역시 국어기본법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의 개정이나 보완, 제정 등으로 충분히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첫째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시행하는 간호교육 인증 평가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평가원은 간호교육을 시행하고 하고 있는 전국 간호교육 관련 학과 및 학원들을 인증하고 있다.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국내외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 교육 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간호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현재 한국어교원 양성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 및 인증제도 실

시의 필요성 및 목적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좀 더 정리하여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 인증평가」 주요 내용

한국간호평가원 지난 2010년 11월에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년 10월까지 평가·인증 인프라, 평가·인증기준 및 방법, 평가·인증 실적의 활용 측면에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위원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의 심사를 거쳐, 교과부로부터 최종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간호교육 인증평가는 간호교육의 질적 성장과 간호학생의 성과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여건과 교육성과 등이 국가, 사회 간호전문직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프로그램은 첫째, 프로그램 학습성과 중심의 교육체제를 통해 졸업학생이 학과가 설정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둘째, 간호교육기관 운영과 교육을 구성하는 제 요소들이 간호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확보하고 있으며, 셋째,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간호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간호교육인증평가의 목적은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국내외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 교육 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간호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간호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질 관리 체제 구축, 국제수준의 간호인력 양성에 대한 간호교육 프로그램 책무성 제고, 간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간호교육의 질 보장 체제 확보에 목적을 둔다.

간호교육인증평가의 주요 내용은 학습 성과에 기반한 교육체제 구축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체제 강화와 핵심 기본 간호술 평가를 통한 현장실무능력 강화하는데 있다.

평가내용 구성 체계는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으로 세분화되며, 6개의 평가영역과 18개 평가부문, 37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운영의 효율성과 평가대상대학의 참여 용이성을 위해 매년 1월과 7월, 연 2회의 평가·인증 신청을 받는다.

간호(학)과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증 절차를 따르게 된다.

(1) 신청(평가·인증 실시 공고 및 제출) ⇨ (2) 자체평가(자체평가 설명회, 대학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3) 평가실시(평가위원 위촉 및 연수, 서면평가, 현지 방문평가, 보충자료 제출 및 평가결과보고서 제출) ⇨ (4) 판정(평가결과 조정 및 판정, 의결, 이의신청, 재심판정, 재심의결, 확정 및 공표)으로 구성돼 있다.

인증 유형은 ‘인증’, ‘조건부 인증’, ‘인증불가’로 구분돼 있으며, 인증기준 충족 여부 및 판정 기준에 따라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연2회 1월과 7월 평가·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³²⁾

또한 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전문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및 자격 인증 절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전문간호사 인증평가를 위한 주요 내용 및 관련 법령의 주요 항목을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³³⁾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심사 및 평가 주요 내용

[1]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심사

목적

전문간호사 역할 수행의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으로서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지정함으로써 능력 있는 전문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 수준을 보장하고 아울러 교육기관별 정원을 지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수급을 조절하기 위함이다.

법적 근거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 자격 대상

- 대학원과정을 두고 있는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 간호학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32) 운영절차는 <http://kabon.or.kr/kabon02/index.php>를 참조할 수 있다.

33)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홈페이지 자료 참조(<http://kabon.or.kr/kabon03/index.php>)

심사기준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3차 심사를 시행함.

- 1차 심사기준: 법적 기준 충족 여부
- 2차 심사기준: 교육기관 여건 및 교육준비 역량
- 3차 심사기준: 수급, 지역, 기관별 균형

심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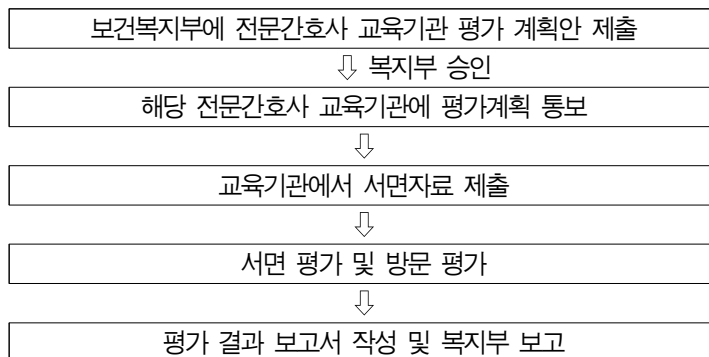
- 심사위원: 해당 전공별 전문가
- 심사결과 심의 위원회: 보건복지부,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평가원, 해당 분야 교육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2]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평가**목적**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시 제시된 지정기준 및 운영계획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 교육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하고 또한 교육운영과정의 우수 사례를 보급·확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평가 기준 및 내용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평가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정조건인 교수요원 확보, 교육과정 운영, 학생(정원), 시설 및 자원의 충족여부와 교육목표 및 운영, 교수, 학생, 시설 및 자원, 행정 지원 및 기획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의 절차

평가 방법

- 1차 서면 평가: 평가 서식에 근거하여 교육기관에서 작성한 서면평가 자료를 검토
- 2차 방문 평가: 보건복지부 및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평가위원 현장 방문

다음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진행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 제도를 참조할 수 있다. 이 제도의 평가 절차 및 기준, 관련 법령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³⁴⁾

대학기관 평가 인증

「기관평가인증」 법적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신설 2007.10.17)
- 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제정 2008.2.17. 대통령령 제21163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원장 서민원, 이하 ‘평가원’)은 2011년도에 실시한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30개 대학이 인증(조건부인증 1개교 포함)을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 2011년도에 처음 시행된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교육 수요자에게 대학 교육의 질을 보증하고, 대학의 지속적인 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대학평가인증위원회(위원장 함인석, 경북대학교 총장)는 지난 2월 2일 제2차 인증위원회 회의에서 ‘11년도 인증신청대학의 판정 결과를 최종 의결하였다.
- 이번에 ‘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은 향후 5년 동안 인증이 유효하다.

- 다만, 인증된 대학 중, ‘조건부인증’ 판정 대학은 1년간의 인증기간을 부여받고, 이 기간 동안 해당 미흡 부분을 개선하여 인정받으면 처음 조건부인증 판정 시점부터 5년간의 인증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 한편, 이번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대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5년 주기로 시행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은 평가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인정기관으로 지정(‘10.11.11)받은 이후 평가 실시.

- 평가원은 평가자 교육을 이수한 평가위원 중에서 12개 평가단(72명)으로 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를 진행하였으며,

34) 한국대학평가원 대학기관평가인증 홈페이지 자료 참조(<http://aims.kcue.or.kr/>)

- 이후, 평가과정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검증회의 개최와 평가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대학의견 수렴 및 ‘대학평가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 결과가 최종 확정되었다.
 - 특히 평가원은 제도 도입 첫해에 발생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시범대학 평가(3월~7월)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 정성적 평가준거에 대한 평가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평가결과 검증회의’를 평가영역별, 평가위원장간, 평가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심도 있게 진행하였다.
- 향후, 평가원은 인증 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
- 2년 후 인증기준 유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대학은 부여받은 인증기간(5년)이 종료되기 전에 평가를 신청하여 인증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는 2014년도부터 정부의 각종 행·재정 지원 사업에 활용되는 것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 부여
 - 고등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확대를 통한 교류협력 증진 기반 구축
 -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 및 개선체제 구축을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 대학교육인증을 통한 학생성과의 질 보증

끝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 의뢰해 실시하고 있는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참조할 수 있다. 이 평가는 전국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을 대상으로 전임교원 확보율, 교원임용률, 연구실적 등을 평가 분석하는 것으로 2010년에 이루어진 3주기 평가를 중심으로 추진 과정과 결과, 절차 및 기준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학기술부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개요

본 평가는 1996년 제3차 교육개혁방안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간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제1주기(1998년~2002년/5년), 제2주기(2003년~2009년/7년)를 거치며 시범운영 형태로 진행해 오다가 2010년에 제3주기(2010년~2014년/5년) 평가가 시작되었다. A등급 대학에는

정원 조정 자율권 등의 혜택을 주고, C, D등급 대학에는 학과/과정 정원의 20~50%를 감축하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은 교원양성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대학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인 2010년에는 사범대학 학부과정(45개교), 교직과정(49개교), 교육대학원(40개교)을, 2011년에는 일반대학 교육과(53개교), 2012년에는 교직과정만 설치된 대학(58개교)을 평가했고, 2013년~2014년에는 교직과정 운영 전문대(105개교)를 평가할 예정이다.

2. 평가 대상

- 사범대학 학부과정 - 일반대학 교직과정 - 교육대학원
- 교직과정만 설치된 대학 - 교직과정 운영 전문대 - 일반대학 교육과

3. 평가의 주요 목적

- 교원양성교육의 여건 조성, 프로그램의 질 제고

4. 평가의 내용 및 특징

- 학생들이 예비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갖추었는지
- 각 교원양성기관들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등 성과 평가
- 평가 지표의 위계적 구조를 대학, 교원양성과정, 학과(전공)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학과(전공) 평가 방식 도입
- 학생들이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실수업 역량을 교원양성교육과정에서 얼마나 갖추었는지 측정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업시연 평가 방식 도입
-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교원 확보 정도를 전공과목, 교과교육, 교직과목 별로 세분화하여 평가 실시
- 전임교원 확보율 외에도 교원임용율,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등도 평가
- 재정 운용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비 환원율,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측정 평가 지표 신설

5. 평가의 방식과 절차

-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진행
- 2010년 새롭게 도입된 수업시연 평가와 평가 전반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업시연 평가 전문가 70명(1개 평가팀이 5개 대학 평가), 현장 실사 평가 전문가 88명(1개 평가팀이 5개 대학 평가)으로 “교원양성기관 평가단”을 구성하고,
- 평가위원회의 평가(수업시연 평가, 현장실사 평가)와 만족도 조사(재학생 및 졸업생 만족도), 그리고 교원 임용률 조사 등을 종합하여 최종 평가 결과 도출

- 평가 총점은 1천점 만점이며 등급은 A(800점 이상), B(700점 이상), C(600점 이상), D(600점 미만)으로 구분

6. 평가 결과의 활용

- A등급을 받으면 학과 또는 과정 간 입학정원 조정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사양성 특별과정, 교장양성과정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의 경우는 복수전공제 운영자격도 부여한다.
- B등급 대학은 혜택이나 제재 없이 현행 유지
- C등급은 1년 이내 자구노력을 재평가 받게 하고, 등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범계 학과 전체 입학 정원의 20%를 감축하는 제재를 받는다. 교직과정도 승인인원의 20%를 줄이고, 교육대학원은 양성기능을 50%축소한다.
- D등급을 판정받은 대학은 입학 정원의 50%를 감축 당한다.

	양성과정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A등급(800점 이상)	-학과 간 입학정원 조정 자율권 부여 -교사 양성 특별과정, 교장양성과정 설치 가능	-교직과정 간 입학정원 조정 자율권 부여	-전공 간 입학정원 조정 자율권 부여 -복수전공제 운영자격 부여
B등급(700점 이상)	현행 유지	현행 유지	현행 유지
C등급(600점 이상)	-사범계 학과 전체 입학정원 20% 감축	-교직과정 승인인원 20% 감축	-양성기능 50% 축소
D등급(800점 미만)	-사범계 학과 전체 입학정원 50% 감축	-교직과정 승인인원 50% 감축	-양성기능 폐지

* 양성과정 단위별로 조치결과 통보하며, C/D 등급의 경우 해당 대학은 1년 이내 재평가 후 확정 조치

** 정원 감축 제재 조치는 대학의 총 정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우수기관의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후보자격 부여는 도입논의 추이를 고려하면서 결정

7. 평가 항목 및 준거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준거
1. 경영 및 여건(450)	1.1 발전노력 및 특성화(40)	1.1.1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40)
	1.2 교원(270)	1.2.1 전임교원 확보 및 운용의 적절성(210)
		1.2.2 전임교원 능력 개발의 충실성(60)
	1.3 시설 및 행·재정(140)	1.3.1 시설의 확보 및 활용(30)
		1.3.2 행정지원의 합리성(50)
1.3.3 재정운용의 적절성(60)		
2. 교육과정 (300)	2.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100)	2.1.1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100)
	2.2 수업(110)	2.2.1 수업의 충실성(110)
	2.3 학교현장실습(60)	2.3.1 학교현장실습의 충실성(60)
	2.4 초·중등 교원교육기관 간 교류(10)	2.4.1 초·중등 교원 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충실성(10)
3. 성과 (250)	3.1 경영성과(30)	3.1.1 학생 유지 및 충원 성과(30)
	3.2 교육성과(220)	3.2.1 교사지질 성취 효과(40)
		3.2.2 졸업요건 및 성과(60)
3.2.3 학교 교육 만족도(120)		
3개 영역 (1,000점)	9개 항목	14개 준거

8.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단 운영

가. 평가위원 선정

평가주관기관에서 2011년 평가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최종 평가단 선정 결과를 교과부에 보고한다. 필요한 경우 일부 평가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2011년 평가위원 유고시 또는 결격사유 발견 시 평가위원 후보자에서 제외한다.

나. 평가단 운영

[평가단 구성]

- 평가 대상 기관의 규모 및 평가 내용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평가단을 구성한다.
 - 서면평가 및 현장방문평가단: 1개 대학 당 6명 내외
 - 수업실연평가단: 1개 대학 당 3~4명

[평가위원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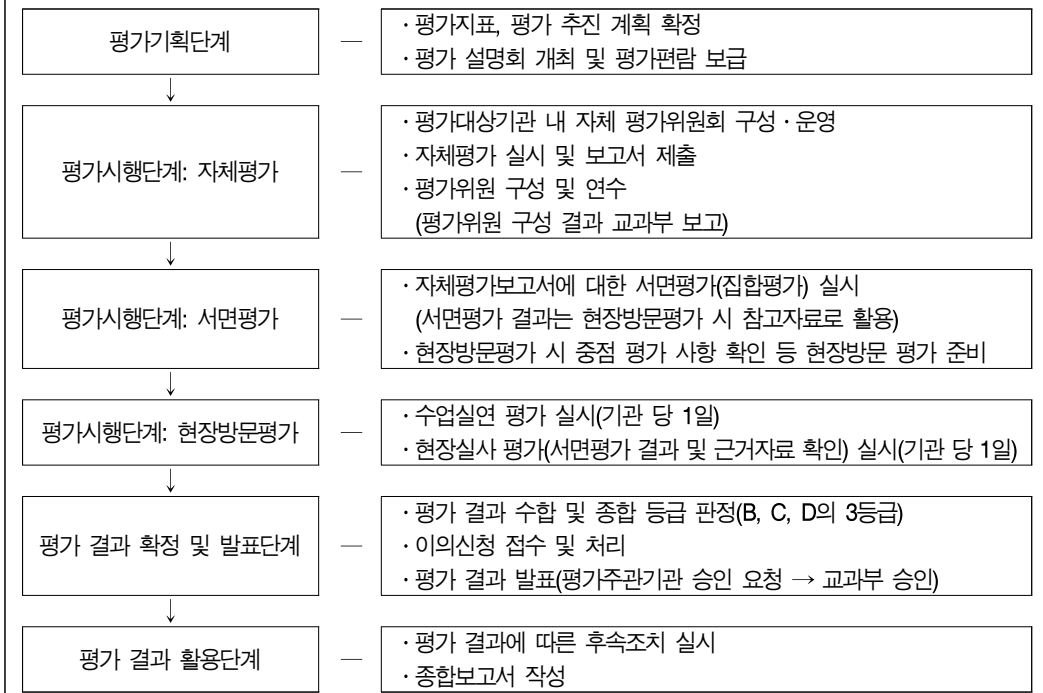
-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모의평가 중심으로 연수를 운영한다.
-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단 연수는 2일간 실시하며, 수업실연 평가단 연수는 1일간 실시한다.
-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단 연수는 평가편람에 대한 기본 이해, 자체평가보고서 리뷰

방법,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다. 특히 평가윤리 준수와 평가과정에서 요구되는 객관성을 갖춘 정확한 판단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수업실연 평가단 연수는 타당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수업 능력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평가위원 역할]

- 평가위원은 사전에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특정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며, 평가주관기관은 평가위원이 평가활동을 함에 있어 외부의 압력 등으로 인하여 평가활동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평가위원의 주요 역할은 평가편람 내용 숙지, 평가매뉴얼 검토, 평가위원 연수 참가, 최초평가 및 재평가 시 서면평가 및 현장방문평가 수행, 수업실연 평가, 평가 결과 협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내용 검토 및 협의, 평가대상기관별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이다.
- 평가위원 중 1인을 평가단장으로 위촉하며, 평가단장은 평가단 회의의 주재, 평가수행과정에서 평가단 의견 수렴 및 조정,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내용의 검토 및 협의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9. 평가의 절차



이상과 같은 유사 사례를 참조할 때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의 인증 평가의 필요성이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교원자격증 교부 시기

현행 자격제도는 졸업 후, 개인별로 자격증을 신청한 후, 심사를 통해 자격증이 부여되는데 자격증이 늦게 나와서 취업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태국 교육부와 협력하여 태국현지학교에 한국어교원을 파견하는 사업을 수행했고 이는 매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지원 및 심사, 선발 과정이 졸업 시기를 전후하여 진행된다. 2012년 파견 교원 선발할 때 지원자 제출서류에 교원자격증이 포함되어 있으나 졸업예정자들의 경우 자격증을 받지 못했기에 서류 자체를 제출할 수 없어서 항의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지원자가 많았다.³⁵⁾

다. 개선 방안(현행과 비교)

① 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제도화

기관 인증이나 프로그램 인증 모두 교육체제 구축 강화를 통한 학습 성과 제고와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모두의 지속적인 교육과정 강화와 발전, 그리고 수업 참관 및 교육 실습 강화를 통한 교원으로서의 현장 실무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개편하거나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여 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기구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이어야 하며, 지역 및 학위과정 종류별,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관련자들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조정 기구 같은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앞에서 예를 들어 보였듯이,

35) 2012년의 경우, 자격증 없이 확인서 등으로 진행을 했고, 나중에 각 소속 학교에 자격증 사본을 제출했다.

간호교육의 경우 2004년 보건복지부 인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을 설립하여 전국 간호교육 관련 학과 및 학원들을 인증하고 있다.³⁶⁾ 이 평가원에서는 일반 대학이나 학원 등의 간호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간호교육 인증평가’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심사’ 및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앞의 [개선 제안의 근거] ②에서 ‘간호교육 인증평가’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심사’의 내용을 소개했으므로 여기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평가’에 관한 규칙을 소개하겠다. 본 규정은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그 밖에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2.3.19] [보건복지부령 제112호, 2012.3.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그 밖에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구분)

제3조(자격인정 요건)

제4조(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제5조(교육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제6조(교육생 정원)

제7조(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제7조의2(전문간호사 교육생 모집현황 및 수료현황 보고)

제7조의3(지정취소 등)

제8조(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9조(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제10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제11조(합격자 발표 등)

제12조(자격증 발급)

제13조(준용 규정)

36)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간호계는 간호교육인 인증가제도의 정착 및 발전, 간호사국가시험의 수준향상,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질관리 등 간호의 질 향상 및 적정수준 보장에 대한 간호계 내, 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간호전문직의 자율조정기구(Self Regulatory Body)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을 설립하였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간호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지만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부령을 통해 관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어교육 관련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지만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부령 등을 통해 관장할 수 있을 것이다. 상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

ㄱ. 정기적인 인증심사의 실시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인증제’는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과정 운영을 전제로 하는 ‘사후 심사제’를, 비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인증제’는 ‘사전 심사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사후 심사제’의 경우, 학위과정(학부/대학원)을 전제하므로 본 인증제를 실시하게 될 경우 사전에 기준이나 절차 등을 최소 1년 전에 공고하여 준비할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 제안이 수용될 경우 관련 법령안의 통과를 전제로 1년 정도 준비 기간이 있으므로 사전(2013년)에 기준 및 절차를 공지하고, 2014년 1월 및 7월로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학위과정이 인증 받을 경우 향후 4년간 그 자격을 인정해 준다. 4년의 인증 기간 중 최소 1회 이상의 중간 점검(평가)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유예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인증기준이나 절차 등은 다음 항에서 상세히 기술하겠다.

‘사전 심사제’의 경우 비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학위과정과 달리 ‘프로그램 인증 요청’ 시기를 프로그램 개설 전(예를 들어 6개월 전)으로 하고, 가능하다면 관리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 매해 수요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지역별, 특

성별로 제한 선정하는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비학위과정도 ‘프로그램 인증’을 받을 경우 향후 2년간 프로그램 운영을 인정하고 재신청에 의한 재인증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년 기간 중 1회의 중간 점검(평가)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유예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인증기준이나 절차 등은 다음 항에서 상세히 기술하겠다.

ㄴ. 기관 인증의 절차와 기준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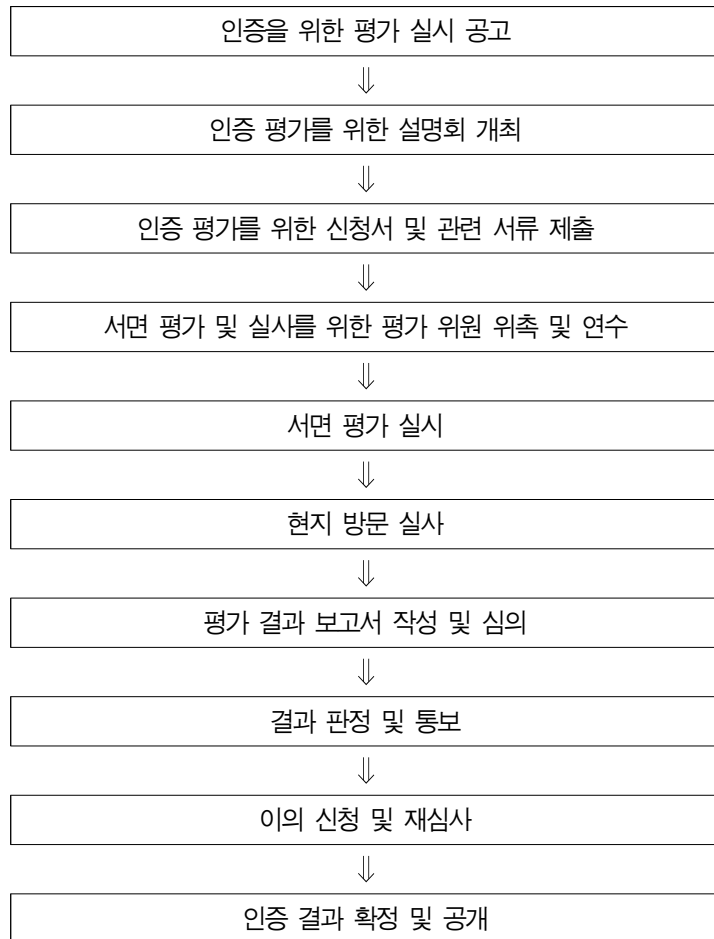
인증제 마련의 이유나 필요성, 목적 등이 명시된, 그리고 인증의 절차와 기준이 명시된 지침서의 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서는 상세한 목적이나 필요성 등은 본 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고,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인증을 위한 평가의 목적]

한국어교육의 질적 성장과 한국어교육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의 성과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육 여건, 교육 성과 등이 한국어교육을 희망하는 모두를 대상으로 그들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확보하였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인증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위과정을 위한 ‘기관 인증제’는 ‘사후 심사제’를, 비학위과정을 위한 ‘프로그램 인증제’는 ‘사전 심사제’를 원칙으로 한다.

먼저, 기관 인증제와 프로그램 인증제 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 및 진행 절차 등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8> 인증제 실시를 위한 진행 절차 흐름도(안)

기관 인증을 위한 심사는 연 2회(1월과 7월) 신청할 수 있으며, 비학위과정의 프로그램의 경우는 최초 시행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역시 연 2회(1월과 7월) 신청할 수 있다.

위 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인증제의 실시는 교육체제 구축 강화를 통한 학습 성과 제고 및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모두 지속적인 교육과정 강화와 발전, 그리고 수업 참관 및 교육 실습 강화를 통한 교원으로서의 현장 실무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인증을 위한 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섯 개의 평가 영역과 18개의 평가 부문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영역으로는 기관(학과 및 대학원)의 설립 목적과 비전을 그리고 그 하위 부문으로 학과 설립 목적 및 이의 달성을 위한 비전, 교육과정 달성 및 개선 활동 등을 평가 심사할 것이다.

두 번째 영역은 교육과정이다. 하위 부문으로 교육과정의 구성 및 교과목 운영, 참관 및 실습의 운영을 주요 부문으로 둘 것이다.

세 번째 영역은 학생 영역이다. 하위 부문으로는 학생 지도 및 상담, 그리고 장학금 및 교외 봉사 등을 위한 학생지원 예산, 졸업생 취업 및 지원 상황 등을 설정할 것이다.

네 번째 영역은 교수 영역이다. 전임교원 확보를 포함한 개설 교과목의 전공 교수 담당 비율 등과 교수 업적 등이 하위 부문으로 설정할 것이다. 특히 전임교원의 확보 및 전공 교수진의 비율 등에는 가산점을 부과할 것이다.

다섯 번째 영역은 시설 및 설비로 하위 부문으로 기본 교육시설 확보 정도 및 실습실 유무, 학술정보 지원 등의 부문을 설정할 것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168> 학위과정/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기준

영역	부 문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1영역 기관설립 목적과 비전	학과 설립 목적	기관(프로그램) 개설 목적
	비전	비전
	교육과정 달성 및 개선 활동	교육과정 달성 및 개선 활동
제2영역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구성	교육과정의 구성
	교과목 운영	교과목 운영
	참관 및 실습의 운영	참관 및 실습의 운영
제3영역 학생	학생 지도 및 상담, 장학금 및 교외 봉사 등을 위한 학생지원 예산	수강생 지도 및 상담, 교외 봉사 및 수업 실습 등을 위한 지원
	졸업생 취업 및 지원 상황	수료생 취업 및 지원 상황
	전공인 전임교원 확보	프로그램 책임자 확보 및 지정
제4영역 교수진	개설 교과목의 전공 교수 담당 비율	개설 교과목의 전공 교수 담당 비율
	교수 업적	

37) 물론 일반적인 학과나 대학원 설립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있겠으나 '한국어교육'을 특수 분야

제5영역 시설 및 설비	기본 교육시설 확보 정도	
	실습실 유무	실습실 유무
	학술정보 지원	학술정보 지원
1) 학위과정의 경우 전공 전임교원 판정 기준: 박사학위논문 제목이나 학위명, 최근 3년간 연구 성과물, 한국어교육 경험 등 ³⁷⁾ 2) 비학위과정의 경우 프로그램 책임자 자격 조건: 2급 이상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한국어교육 5년 이상의 현장 경력자 또는 한국어교육 전공 박사학위 수료 이상인 자 3) 교육시간 기준: - 면대면 수업: 주간: 50분/1차시, 야간: 45분/1차시 - 온라인 수업: 25-30분/1차시 4) 비학위과정의 경우: 총 교육 기간: 최소 6주 이상, 1일 교육시간: 6시간 이하 5) 엄격한 출석 관리: 비학위과정의 경우 총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률을 수료조건으로 함. (지각, 조퇴 등 3회 결석 1시간 처리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㉔. 인증을 위한 심사의 방법 등

두 인증제 모두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를 원칙으로 한다. 서면 평가는 피평가기관이 제출한 서류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이다. 필요할 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들에 대해 별도의 평가 양식을 통해 평가 결과를 평가 근거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장 실사는 피평가기관을 방문하여 일차 서면 평가한 내용들에 대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절차이다. 특히 서면 평가에서 하지 못한 항목이나 불충분했던 내용들을 방문 평사를 통해 확인하고 평가한다. 주요 내용 및 대상은 교수진, 재학생 대상 개별 면담 및 집단 면담, 만족도 조사, 실습 여건 및 기자재 등 확인, 기타 과제나 시험답안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실제 수업 진행 능력을 일정 학점 이상 학생 중 일정 수(예를 들어 3인 이내)를 지명하여 수업 진행 등 실제 수업 수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㉕. 평가 결과의 확정과 공고

준비된 평가 양식을 통해 서면 평가 및 현장 실사를 완료한 후, 각 기관별 서면 평가자(2~3인 이내) 및 현장 실사자(2~3인 이내)들이 제출한 평가서를 토대로 심의위원회(현행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일관성 등을 확인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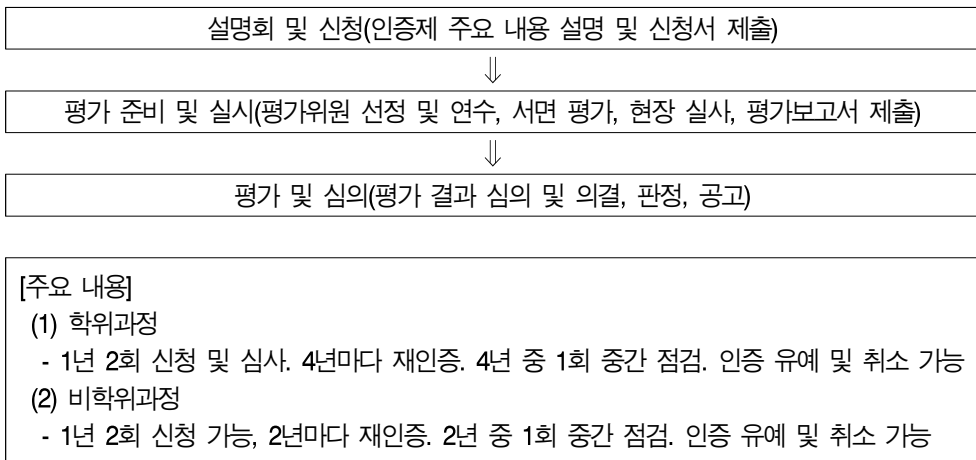
로 본다면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이 교원의 자격에 실무 요건을 추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기관 인증 심사 시 가산점 부여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평가위원들과 회의를 통해 최종평가서를 확인하고 최종 결과를 결정한다. 대상 기관에 통보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게 하여 재심사한 후 최종 심사결과를 확정하고 공개한다.

인증 유효 기간은 학위과정은 4년으로 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한다. 유효 기간 중 1회의 중간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일정 기간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인증 유예 및 취소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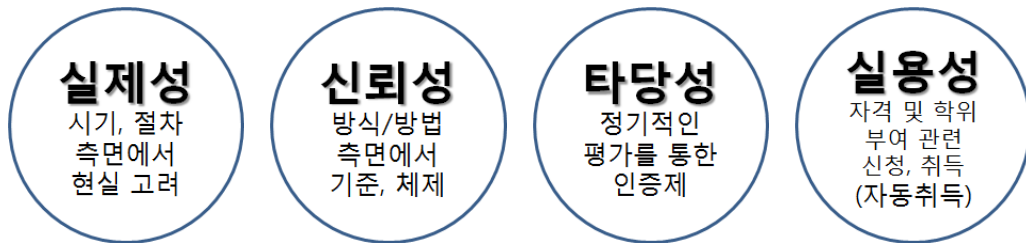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기관 인증제와 프로그램 인증제에 의한 자격제도 개선 방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 기관·프로그램 인증제의 실시를 전제로 개별 교과목 심사 및 개별 심사를 폐지하고, 기관 인증제 및 프로그램 인증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2) 기존의 ‘한국어교원자격제도심사위원회’는 승급 심사 및 자격 취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혹은 필요시 별도의 기관 등을 설립할 필요도 있다.
- (3) 기관 인증제 실시와 더불어 구체적인 인증 절차와 기준, 심사 내용 등을 정하고, 인증제의 시행 시기, 현행 제도를 위한 경과규정의 제정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 (4) 기관 인증제 및 프로그램 인증제의 실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9> 기관 인증제/프로그램 인증제 실시 절차

평가를 통해 인증을 하는 기관 인증제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특성 및 장점을 확보하게 한다. 첫째, 시기, 절차적으로 현실을 고려한 점에서 실제성을, 둘째, 방식/방법 적으로 기준과 체제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신뢰성을, 셋째,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인증제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을, 마지막으로 자격 및 학위 부여와 관련된 신청, 취득(자동취득)이라는 측면에서 실용성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0> 인증제 도입의 특성 및 장점

ㄱ. 평가·인증 결과의 활용

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차별적 활용 방안을 크게 학위과정, 비학위과정으로 나누어 제안할 수 있다.

[학위과정]

학위과정의 경우 소정의 기준에 따라 평가·인증 절차를 거쳐 적합의 판정을 받게 되면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그 기관 소속 졸업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부여받게 된다. 결국 기관 인증제의 실시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의 자동취득제’로 연계되어 그간 많은 민원과 개선 요청을 받았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와 인증 절차에서 부적합의 판정을 받게 된 기관은 위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별도의 재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 동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의 졸업생들은 현행과 같이 개별 심사를 받아야 한다.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재심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게 된 경우 그 기관은 그 이후 졸업생에 대해 졸업과 동시 자격증의 자동 취득이 가능해지며, 또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의 경

우 2년 동안(인증 자격을 부여받을 때까지) 개별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받아야 한다.

[비학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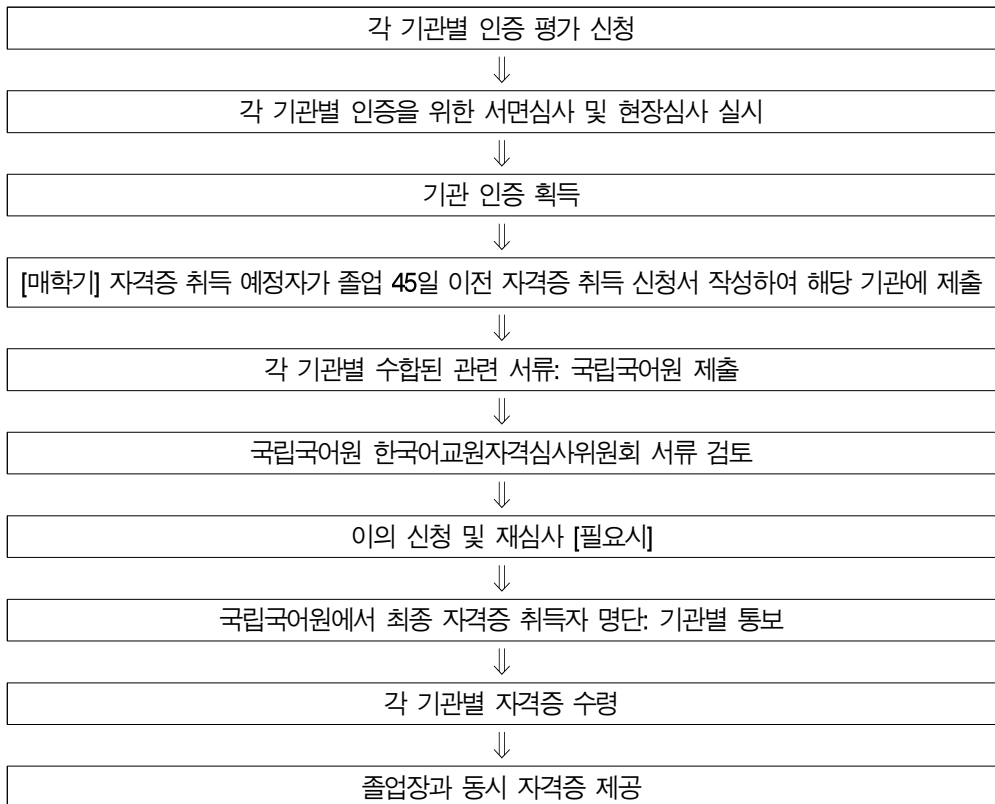
학위과정의 기관 인증제와 달리 비학위과정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평가와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며, 소정의 기준에 따라 평가와 인증의 절차를 거쳐 적합한 판정을 받게 되면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게 된다. 이로써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치를 자격을 얻게 된다. 이러한 평가와 인증 절차에서 부적합의 판정을 받게 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별도의 재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며, 만약 인증 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프로그램의 수료생들은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치를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된다. 프로그램 인증 절차는 프로그램 시행 이전의 사전 심사이므로 수강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공지하며 동시에 당해 기관의 누리집에도 명시하도록 한다. 일정 기간 내에 재심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게 된 경우 당해 프로그램은 시행될 수 있으며 수료생들은 수료와 동시에 현행대로 2년간 시험을 응시할 자격을 갖게 된다.

② 자동취득제 도입·시행

앞에서 제안한 기관 인증제의 도입은 학위과정만을 전제로 한다. 현행의 자격증 부여 방식은 개별 신청 및 개별 심사, 그리고 졸업 후 약 3개월 정도의 시간 경과를 요구한다. 그러나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위과정 운영기관들(학부 및 대학원, 사이버 학부 및 대학원, 학점은행제 모두 포함)이 자격증 취득 적합 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국립국어원에 그 사실을 공지하게 된다. 특히 ‘기관 인증제 실시’의 주요 취지가 각 기관들의 교육과정 편성에서의 독창성과 자율성의 보장을 위해 교과목 지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수과목 이수와 영역별 학점 이수만을 요구하므로 개별심사로 인한 인력 낭비 및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외에도 그간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졸업 시기와 자격증 발급 시기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자동취득제의 시행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3년 개선안이 수정 보완되어 작성되면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2014년부터 기관 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 사실을 공지하고, 설명회 등의 통해 취지를 설명하고 인증을 원하는 기관이 필요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서면 심사와 현지 방문 심사를 통해 결과를 판정하고 통보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기관 인증이 완료되면, 각 기관은 개인별 자격증 발급 신청서(수입인지 부착 필)를 수합하고 기타 필요 서류를 갖춘 후 해당 학기 졸업식 45일 이전에 국립국어원에 제출하고, 국립국어원에서는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자격증을 각 기관에 발송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 자격증 자동취득제 진행 절차 흐름도(안)

5.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대상 지원 방안

2012년 9월 현재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는 총 8,137명으로 이 중 1급 소지자는 94명, 2급 소지자는 4,033명, 3급 소지자는 4,010명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3급 취득자는 감소하고 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는 2009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학위과정에서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의 증가, 학점은행제의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제는 양적인 팽창만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동시에 교원 질 향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또한 2급 및 3급으로 자격증이 구분되어 있지만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급수 간 취업이나 처우 등에서 제대로 위계화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신규 교원을 선발할 때도 자격증 소지 여부가 그리 큰 혜택을 갖지 못한다는 점 및 이와 관련되어 취업이 어려운 점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현재 자격증 소지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다루고자 한다.

가. 문제점

현장 한국어교원 대상의 설문 조사나 네 차례의 공청회, 두 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해 수렴된 주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들의 처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국내외의 많은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국가가 공인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만을 선발하거나 최소한의 혜택을 부여하는 기관은 거의 드물고, 선발된 후에도 채용된 한국어교원들의 처우는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 받지 못한 채 매우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

둘째, 자격증 위계화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자격증 위계화는 우선 처우를 달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 될 것이다. 그간교육현장에서 2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5

년간 2,000시간의 경력을 갖추어 1급 자격증을 취득해도 기관에서의 처우는 달리 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다.

셋째, 자격증 취득 및 승급 조건의 차별화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우선 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 취득과 관련하여 학부과정에서 최소 45학점, 최대 70~80여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여 2급을 받는 경우와, 학부 전공은 전혀 다른데 대학원에서 18학점만을 이수하고도 2급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매우 많았고, 학부졸업생이란 이유로 석사학위 소지자들에 비해 차별받는 현실에 대한 불만도 매우 많았다. 향후 이러한 차별을 불식할 수 있는 방안 및 급수의 차이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넷째, 교사의 질 유지 문제 및 전문성 심화를 위한 기회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학부과정을 통해 충분히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대학원과정에서 최소 과목만을 이수하고 교육현장에서 교수하고 있는 교원들의 경우 자신의 전문성 제고 및 심화, 최소한의 자질 유지를 위해 재교육 등의 과정이 절실하며, 개설하는 기관이 있으면 수강하겠다는 답이 많았다.

다섯째, 많은 한국어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들이 그들의 처우 개선 및 직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로부터의 한국어교육기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많은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수도권 일부 대학 소속 한국어교육기관 외에 많은 한국어교육기관들 수강생의 감소 및 학교 예산 지원의 축소 및 무관심 등으로 외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어교육기관을 심의하고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국가인증 한국어교육기관임’을 공개하여 수강생 모집이나 홍보 등에서 차별성을 갖게 하고, 이후 최소한의 예산 지원을 통해 기관 인증을 유지하고, 또 역으로 유지를 위해 기관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개선 방향 및 근거

[개선의 방향]

① 한국어교원의 질적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확보

‘양성-인증-임용’이라는 절차에 대해 절대적인 의무나 강제는 할 수 없어도, 국가가 발행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나 보장을 위한 노력은 절실하다. 우선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는 국내외 한국어교육 관련 기관의 경우, 당장의 예산 추가 없이 이들 기관에서 한국어교육을 담당할 사람을 채용하려 할 경우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함’ 정도의 자격 제한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국가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한국어교육을 담당할 전문 한국어교원을 법에 의해 양성하고 인증한 경우라면 최소한 이러한 정도의 보장이나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후 점차 예산의 확보를 통해 한국어교원들의 처우 개선을 시도하고, 국내외 한국어교육 관련 기관 중 자격증 소지자만을 채용하는 등의 협력적인 기관에 대해 점진적으로 예산 지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립국어원 등 유관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때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한국어교육기관의 인증을 통한 한국어교육의 질 향상과 기관의 발전 모색

대학 및 일반 학원 등 기업에서 한국어교육 관련 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므로 정부 혹은 정부 산하 기관이 직접 간섭하거나 제약을 할 수 없더라도 한국어교육의 질 향상이나 교육체제의 강화 등을 위한 지침의 제공이나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인증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 제시하여 그 기준에 따르게 하고, 한국어교육 인증기관이 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행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 및 국가 지원 한국어교육 관련 기관, 예를 들어 세종학당재단 등에 인증기관의 명단을 지역별로 명시하여 유학생 유치 및 대학 홍보 등에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현직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심화 및 일반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현재 전국 대학교 및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학위과정으로서의 한국어교원 단기양성과정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학점은행제 및 사이버 대학 등의 증가에 의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수년간 각 지역에서, 각 대학의 특성을 살려 우수한 교원을 양성해 왔고, 각 기관 나름의 특징적이며 수월성을 갖춘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들 기관의 특성들이 사장되는 것보다는 계속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팀에서는 이들의 축적된 운영 기술 및 장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현장에서 강하게 요구되는 ‘재교육 프로그램’, 또는 ‘보수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의 전환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 역시 국립국어원의 ‘프로그램 인증’ 절차를 통해 지역 또는 권역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립국어원과 각 한국어교육기관과의 협력기구 구성을 통한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 지원 및 처우 개선 방안 모색

현재 임의적인 단체로서 ‘한국어교육기관 대표자 협의회’ 및 ‘한국어교육 전공학과 협의회’ 등이 구성되어 국내외 한국어교육의 활성화 및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들의 취업이나 진로를 함께 고민하며,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이들 기관과의 협력이나 혹은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정보 교류 및 한국어교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방안 역시 제안하고자 한다.

[개선 제안의 근거]

① 타 교과과정 교원의 현직 교육 프로그램

OECD(2006)에 따르면 독일, 스페인, 프랑스, 한국 등의 국가에서는 국가 기관이 교사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고등교원 대상의 직무 연수 프로그램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현직 국어 교사 대

상의 연수 프로그램은 자격 연수, 직무 연수, 자율 연수 등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다.³⁸⁾ 국어 교과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교육청, 또는 연수 기관 등에서 직무 영역(수업 지도, 학생 지도, 학급 경영,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부모 및 대외 관계, 학교 경영 지원, 기타-자기개발 등)에 따라 시수 등을 달리하며 교원이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② 타 분야 및 기관의 전담인력 채용 관련 기준

현재 한국어교원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요구하긴 하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차별성을 갖지 못할뿐더러, 1급과 2급, 3급에 대한 처우 및 보수 등의 차이도 없다. 다른 분야의 경우, 경력자 또는 자격 급수가 높은 경우 보수 및 직위의 상의 차별을 보인다.³⁹⁾

③ 한국어교원 스스로의 자질 향상 및 질적 제고에 대한 요구

한국어교원 대상의 설문을 통해 많은 이들이 자기 개발 및 수업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프로그램(제도적 뒷받침 필요)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준비된 교사, 우수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재교육 및 보수교육의 기회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④ 한국어교원끼리의 네트워크 요구

한국어교원 대상의 설문을 통해 한국어교원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을 통해 한국어교원끼리의 네트워크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한

38) 자격 연수란 교원의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로 예를 들면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들 수 있다. 직무연수는 교육의 이론·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의미하며, 자율연수는 자격연수나 직무연수 이외의 기타 연수로 학교에서 주관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연수를 의미한다(최미숙, 2012:8).

39) 예를 들어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전담인력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장'의 경우, 1)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업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관장이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국어교원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곳이 있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컸다. 타 교과 영역에서는 현재 교육청이나 기타 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어교육계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개선 방안

① 현직 교원 전문성 심화 및 승급을 위한 재교육 과정의 제도화

비학위과정으로서 ‘재교육 과정’은 각 지역, 다양한 목적을 지닌 한국어교육 관련 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심화를 위한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좀 더 부연하자면 ‘현직 한국어교원’들로 하여금 각자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의 다양한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고 심화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보수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교육 과정은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가 직접 개설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가 개설할 수 있는데, 각 지역별, 대학별 기관의 특수성과 강점을 가장 잘 살리고, 지역 필요 기관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이들 재교육 프로그램 혹은 보수교육 프로그램은 신규 채용 교원을 위한 과정이나 일정 기간 재직 경력이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재직 교원의 경우는 승급을 위한 요건으로 이 과정을 이수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능력 향상이나 전문성 심화를 위해 이수할 수도 있다.

현행의 승급기준은 기간과 수업 시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현장 교원들은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교원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어떠한 형식이든, 어떠한 내용이든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반드시 수강하겠다는 답을 한 경우도 매우 많았다. 승급의 기준으로 일정 시간 이상의 재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 역시 제안하고자 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6항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법 개정예 반영하고자 한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발급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인증 받은 기관에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 8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 성적이 70점 이상이면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고딕체** 부분 참조]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p> <p>1. 한국어교원 1급 (생략)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p> <p>2. 한국어교원 2급 (생략) 가. - 다. 생략 라. 제3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p> <p>마. 제3호나목, 바목 및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p> <p>3. 한국어교원 3급 가. 생략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다. - 사. (생략) ② 생략</p>	<p>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2호 가, 나 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 가, 다, 마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졸업평점 환산점수가 100분의 75 이상이어야 한다.</p> <p>1. 한국어교원 1급 (생략, 좌동)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단, 승급을 위해서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2. 한국어교원 2급 (생략, 좌동) 가. - 다. 생략 라. 제3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단, 승급을 위해서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마. 제3호나목, 바목 및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단, 승급을 위해서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3. 한국어교원 3급 가. 생략, 좌동 나. 제13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바에 따른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다. - 사. (생략) ② 생략</p>	<p>학사학위자의 평점기준 신설</p> <p>승급을 위한 재교육요건 명시 *단, 시간은 예시임.</p> <p>승급을 위한 재교육요건 명시</p> <p>승급을 위한 재교육요건 명시</p> <p>프로그램 인증 명시</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호-제7호 신설></p> <p>④ 생략 ⑤ 생략 <제6항 신설></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원 자격 검정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호-제7호 생략></p> <p>④ 생략 ⑤ 생략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어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발급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 8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 성적이 70점 이상이면 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단 제2항 제1호 단서와 제2호 라목 및 마목 단서의 승급을 위한 재교육의 경우에는 8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어교원 재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위원회의 심의 사항 보완 명시</p> <p>자격의 유효기간과 자격자 재교육 관련 사항 명시(승급재교육시간이 다른 경우는 괄호 안에 명시함)</p> <p>재교육 관련 위임근거 명시</p>
---	--	--

아울러 현직 교원의 승급을 위한 재교육(혹은 보수교육) 프로그램, 자격 유지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지역별 특성화 보수교육 프로그램, 각 지역별 한국어교원들의 자율연수 프로그램 등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중 어떤 프로그램은 국립국어원 등의 정부주도적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국립국어원의 승인 절차를 거친 지역 거점 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일 수 있다. 물론 이들 재교육 프로그램은 의무가 아닌 선택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본인의 희망과 필요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지역 거점 기관으로서 재교육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국립국어원의 사전 심사를 거쳐 기관이 아닌 프로그램을 인증 받아 운영하게 되며, 이들이 소정의 과정을 마칠 경우 해당 기관장의, 또는 국립국어원장과 공동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받게 된다. 물론 이 수료증은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아니므로 승격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우선 채용 및 지원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2급, 3급 자격증이 있어도 취업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채용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한다.

- (1) 국가 해외파견 한국어교원: 현재 해외로 파견되는 한국어교육 관련 업무 종사자들 선발에 태국파견 한국어교원과 세종학당 교원 선발에만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가 필수요건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가 예산 지원으로 진행되는 한국어교원의 해외 파견 자격에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를 명시해야 한다.
- (2)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주민지원센터 등 대학부설 한국어교육기관 이외에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한국어교육 관련기관에서 한국어교원을 채용할 때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채용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여 채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위한 국립국어원 및 유관기관의 지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1) 국립국어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외 취업 정보를 제공하거나 확인된 이메일 주소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2) 전국에 일정 거점 교육기관을 인증하여 정기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어교원을 채용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일정 자격(근무 연차 등)을 갖춘 교원이 해당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기관 내 경력 산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지원 체계를 갖춘 기관의 경우 기관 인증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 (3) 한국어교원들의 온라인 소통 공간을 책임 있는 주체(국립국어원 등)가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교육 관련 및 채용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교육 관련 경험이나 의견들을 공유하게 하여 실질

적인 도움이 되게 할 수도 있다. 이는 향후 간접적인 재교육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또한 교원들의 자기계발 동기 부여, 교육 현장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한 협력적 발전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③ 표준 임금 체계 또는 최저 임금제 도입

자격증 소지자들의 근무 연차에 따른 표준 임금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하거나 표준 근로 약관과 같은 것을 마련하여 기관에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당장 실현가능성이 낮더라도 향후 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자격증 소지자들의 처우 개선 및 근로여건 개선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6. 교육과정 변경 및 기관 인증제 실시에 따른 정책 과제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변경 및 이를 토대로 하는 기관 인증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하거나 관련 부서나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관 인증 및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균형 있고, 전문적인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관이 한 번 인증 받게 되면 2년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엄격하고 분명한 평가 기준과 절차가 구성되어야 한다. 학위과정의 경우 대개 대학 소속의 학과인 경우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한국어교육 전공학과로서의 학교 내 지위와 교육과정의 편성, 학과 소속 교수들의 전공 여부 및 구성 비율, 교과목 별 교재 및 강의계획서, 중간 및 기말 시험 답안지, 교육 실습의 경우 참관 보고서 및 교육 실습일지(담당 기관장 또는 담당 교원 서명 포함) 등의 자료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사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고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런 인증 절차는 4년 주기로 현장 실사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그 기간 중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못 미치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일이 발생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어야 한다. 또한 기관 인증 등

의 역할을 담당할 평가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에서 담당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제도 실시예 앞서 기관 인증제도 실시의 취지나 배경, 절차 및 기준 등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역의 축소 및 세분화, 각 영역별 교과목 내용에 대한 정보와 각 교과목이 담당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 등 역시 해당 기관에 미리 상세히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1, 2영역에서의 필수이수과목 이수의 의미, 4영역(교육 실습 영역)의 기준 시수 및 협력 기관 확인 방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는 독립된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기도 하지만, 유사학과 내에 하위 전공으로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러한 특이점을 주의하여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희망하고 한국어교원으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변화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격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성적 조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취지 및 기준에 대해 명확히 설명되어야 한다.

셋째, 각 대학이나 기관이 각각의 지역적, 학제적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현행 자격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개설 교과목명의 제약을 넘어서, 운영기관의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추후라도 다양한 개설 가능 과목명을 추가로 제시하여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각 과목이 담당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목차 정도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역별로 각 교과목의 기본적인 내용과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최은규(2011:155~156)의 제안대로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교육 실습(수업 참관과 수업 실습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기관의 인식 전환, 관련 학계의 협조와 지원 방안 연구, 정부 담당 기관의 행정적 지원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

다섯째,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보장을 위해서는 국립국어원 제공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에서도 제시한 권고 수준의 ‘한국어교육학과’ 또는 관련 전공의 경우 최소한 1인 이상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전체

개설 교과목 기준 교수진 구성에서도 2, 3, 4영역의 과목 담당 강사진은 ‘전공자로서 5년 이상의 현장 교육 경력을 가진 자에 한함’ 정도의 강한 제약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시행규칙 등에 반드시 신설 포함되어야 한다.

여섯째, 각 대학이나 기관의 학위과정 명칭이나 비학위과정의 명칭 역시 하루빨리 통일되어야 한다. 강승혜(2011:88~93)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부에는 12개의 유형, 일반대학원에는 14개의 유형, 교육대학원에는 6개의 유형, 비학위과정에는 15개의 유형이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한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만이 아니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자격제도의 정체성과도 연결되는 것이므로 학과나 과정 명에는 ‘한국어교육’ 또는 ‘한국어교원’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일곱째, 교원으로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실습 영역의 기준을 강화하고 시수 등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교육 실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학의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이나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혹은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 노동부 등의 산하 한국어교육 관련 기관에서의 수업의 참관이나 실습 등이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

제2절 법령 개정안

1.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이번 과제에서 제안하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 ‘개별 심사 후 자격증 발급’제도를 ‘기관 인증제’로 개정
인증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위과정은 ‘기관 인증제’로, 비학위과정은 ‘프로그램 인증제’로 변경
- 학위과정은 졸업과 동시 자격증 부여
- 기관 인증제는 1년에 2회 신청, 4년 주기로 재심사
- 프로그램 인증제는 1년에 2회 신청, 2년 주기로 재심사
- 인증 후 중간 점검을 통해 부정/부실 운영 시 취소 가능
- 비학위과정의 경우, 인증 받은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국어교원자격검정시험을 치를 수 있음.

둘째, 교육과정의 강화

- 양성 제도의 제도와 관련하여 ‘전문성 제고’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를 위해 ‘현행 시행령 13조 관련 [별표1]의 영역 및 과정별 이수학점을 조정
- 현행 5개 영역을 4개 영역으로 줄이고, 각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기본 내용을 제시
-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과목을 1영역 언어지식 영역에서 2개 과목을, 2영역 한국어교육학 영역 중 2개 과목을 필수이수하게 함.
- 2영역을 총론, 기능교육, 내용교육, 문화 및 문학교육 부문으로 하위 구분하여 균형 있게 교과목을 편성하고 이수하도록 함.
- 4영역 교육 참관 및 실습 영역의 강화: 일정 기간(10일 이상) 일정 시수 이

상의 교육 실습 시행 필수. 참관 수업 역시 일정 시수 이상 시행해야 함.
참관 보고서 및 교육 실습일지 등의 작성 의무화

셋째, 자격증 발급 제한 기준 및 자격증 급수 축소

- 대학원과정: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선수학점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필수이수학점으로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학위를 취득하여도 자격증은 취득할 수 없음.
- 학부과정: 필수이수학점으로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전공 이수학점 총 평점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학위를 취득하여도 자격증은 취득할 수 없음.

넷째, 자격증 소지자의 지원

- ‘인증-양성-임용’의 연계에 대해 배타적이고 강제적인 요구사항은 아니더라도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우선 채용 혹은 의무채용’을 제안함.

다섯째, 현직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 승급 희망: 일정 기간의 재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필수화하고, 시기는 승급 신청 전 1년 이내 이수를 제안
- 자격증 유지: 5년에 1회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
- 프로그램 인증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전국에 일정 수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
- 재교육 프로그램은 직무 연수(교육의 이론·방법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
- 연수 대상자별 특성화 프로그램(신임 한국어교원 중심의 프로그램, 경력 한국어교원 중심의 프로그램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면서, 연수 내용은 한국어교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내용(예: 창의적 한국어 수업,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수업, 한국어 수업을 위한 미디어 활용 교육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

- 재교육 프로그램의 기간 및 횟수, 수강 방법(온라인/오프라인) 등에 대한 추후 논의 제안

여섯째, 기타: 학위과정 학과명/전공명의 통일

- 현재 학부나 대학원, 심지어는 비학위과정으로서의 양성기관/프로그램 명칭이 매우 혼란스럽게 제각각 사용되고 있음. 이를 ‘한국어교육학과’ 등의 일관된 명칭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

1) 주요 전제들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 보급 등)’를 근거로 한다. 이 조항에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그에 따른 상세한 내용들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기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교원의 양성기관이나 자격제도 등에 대한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양성기관 대상의 실태 조사와 전문가 집단을 모시고 개최한 네 차례의 공청회,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실태 조사 결과, 관련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어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주요 개정 내용

한국어교원 자격 급수 요건, 자격 취득 시 충족해야 할 교과목, 교원 자격 심의 방법, 승급을 위한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법령에 추가할 사항은 학위과정 운영기관 및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제 실시에 관한 사항과 시행일에 관한 사항이다. 두 번째로 추가할 사항은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역할에다 기관 인증을 위한 실사 및 심사, 자격 취소 등의 심사와 같은 내용들이다. 또한 시행령 ‘제19조 제2항’과 관련한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등에 대한 사항 심사’ 역시 추가되어야 한다.

<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제 실시>

- 학위과정 운영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의 기준에 적합한 학위과정 운영기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관을 인증할 수 있다.
- 이에 따른 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기준·방법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비학위과정 프로그램 인증제 실시>

-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의 기준에 적합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프로그램을 인증할 수 있다.
- 이에 따른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기준·방법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역할>

- 영역별 과목의 적합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 한국어교원자격 승급 시,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에 대한 심의
- 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에 관한 심의
- 비학위과정 운영 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심의
- 학위과정 졸업자가 허위신청으로 자격 취득 시 자격취소에 대한 심의
- 학위과정 운영기관이 허위신청 등의 이유로 인증 취득 시 인증취소 또는 자격증 발급 제한에 대한 심의

수정할 사항은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역할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결부된 [별표1]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 시간’의 과목 예시를 ‘학부 학위과정, 대학원 학위과정, 비학위과정’으로 구분하고 영역도 1, 2영역을 하나로 묶어 ‘언어지식 영역’으로 수정해야 한다. 3영역을 2영역 ‘한국어교육학 영역’으로 명칭을 바꾼 후 다시 ‘총론-각 하위 영역(기능교육, 내용교육, 문화·문학교육)’으로 세분하였다.

<영역의 축소 및 하위 분류화>

영역	하위 영역
교직 관련 과목	
제1영역 언어지식 영역	
제2영역 한국어교육학 영역	한국어교육학 총론
	기능교육
	내용교육
	문화문학교육
제3영역 한국 문학 및 문화 이해 영역	
제 4영역 한국어 교육 실습 영역	

윤소영 외(2011)에서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한국어교원 자격을 자동취득한 후에도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관련 문제 등이 생기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새로이 포함한다. 즉,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한 후 인정과목 등에 대해 허

위로 이수했음이 밝혀지거나 이에 준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그 과정을 졸업하여 이미 자격증이 교부 받은 자리라 하더라도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이나 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기관이 심사 당시의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사전 승인 없이 처음의 교육과정대로 진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관 인증이나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하거나 자격증 발급 제한이나 프로그램 운영 횟수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교원자격 취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운소영 외, 2011)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 양성과정을 운영한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3)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비교

<표 169> 국어기본법 시행령과 개정안 비교

[**고딕체** 부분 참조]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p> <p>1. 한국어교원 1급 (생략)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p> <p>2. 한국어교원 2급 (생략) 가. - 다. 생략 라. 제3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p>	<p>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2호가, 나 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가, 다, 마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졸업평점 환산점수가 100분의 75 이상이어야 한다.</p> <p>1. 한국어교원 1급 (생략, 좌동)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단 승급을 위해서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⁴⁰⁾.</p> <p>2. 한국어교원 2급 (생략, 좌동) 가. - 다. 생략 라. 제3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단 승급을 위해서는</p>	<p>학사학위자의 평점기준 신설</p> <p>승급을 위한 재교육요건 명시</p> <p>승급을 위한 재교육요건 명시</p>

<p>마. 제3호나목, 바목 및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p> <p>3. 한국어교원 3급</p> <p>가. 생략</p> <p>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 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p> <p>다. - 사. (생략)</p> <p>② 생략</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1호-제7호 신설></p>	<p>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마. 제3호나목, 바목 및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단 승급을 위해서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3. 한국어교원 3급</p> <p>가. 생략, 좌동</p> <p>나. 제13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바에 따른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p> <p>다. - 사. (생략)</p> <p>② 생략</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원 자격 검정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1. 영역별 과목의 적합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p> <p>2. 한국어교원자격 승급 시,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에 관한 사항</p> <p>3. 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p> <p>4. 비학위과정 운영 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p> <p>5. 학위과정 졸업자가 허위신청으로 자격 취득 시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p>	<p>승급을 위한 재교육요건 명시</p> <p>프로그램 인증 명시</p> <p>위원회의 심의사항 보완 명시</p>
---	--	---

<p>④ 생략 ⑤ 생략 <제6항 신설></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p>	<p>6. 학위과정 운영기관이 허위신청 등의 이유로 인증 취득 시 인증 취소 또는 자격증 발급 제한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에 한국어교원 자격 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p> <p>④ 생략 ⑤ 생략</p>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어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발급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 8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 성적이 70점 이상이면 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단 제2항 제1호 단서와 제2호 라목 및 마목 단서의 승급을 위한 재교육의 경우에는 8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어교원 재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자격의 유효기간과 자격자 재교육 관련 사항 명시 (승급재교육시간이 다른 경우는 괄호 안에 명시함) 재교육 관련 위임근거 명시</p>
<p>제13조의2(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 신설></p>	<p>제13조의2(대학 등 한국어교육기관의 인증 등)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p> <p>1. 학위과정 운영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의 기준에 적합한 학위과정 운영기관에 대하여 그 기관을 인증할 수 있다.</p> <p>2.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p>	<p>기관 및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근거 명시</p> <p>인증 유효기관과 재인증 근거 명시</p> <p>위임내용 보완</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학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과정의 과목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등의 동의를 있으면 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4항 신설></p>	<p>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의 기준에 적합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 대하여 그 프로그램을 인증할 수 있다.</p> <p>② 전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경우 4년,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프로그램의 경우 1년으로 하며, 인증을 받은 기관은 그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의 인증 및 재인증에 관한 기준·방법·유효기간 등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인증을 받은 자가 폐업한 경우 	<p>인증취소 사유 명시</p>
<p><신설></p>	<p>제13조의3(자격의 박탈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박탈한다.</p> <p>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p> <p>③ 한국어교원이 제13조 제8항에 따른 재교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p>	<p>자격 박탈 근거 및 자격 신청 제한, 재교육미수자의 자격정지 등 근거 명시</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3, 4, 6, 7항, 제13조의2와 제13조의 3의 규정은 2014년 1</p>	<p>시행일</p>

	<p>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한국어교원 자격은 이 영에 의한 자격으로 본다.</p>	<p>자격기준의 변경에 따른 종전 자격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조치</p>
--	---	---

[별표1] <개정 2012.8.22>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제13조제1항 관련)

번호	영역	과목 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국어학 개론, 한국어 음운론, 한국어 문법론, 한국어 어휘론, 한국어 의미론, 한국어 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 어문규범 등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 언어학, 언어학 개론, 대조 언어학, 사회 언어학, 외국어 어휘론 등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어교육 개론, 한국어 교육과정론, 한국어 평가론, 언어 교원 수 이론, 한국어 표현	24학점	9학점	9~10학점	46시간

[별표1]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학부의 경우)(제13조제1항 관련)

영역	선택 이수학점 (주전공/복수전공)	선택 이수학점 (부전공)	필수이수과목*
제1영역 언어지식 영역	12학점	6학점	한국어 음운론 관련, 한국어 문법론 관련 과목 등 2 과목 모두 (주전공/복수전공), 1과목(부전공-한국어 문법론 과목) 지정
제2영역 한국어 교육학 영역	한국어 교육학 총론	6학점	한국어교육학 총론 영역 중 한국어교육개론 중 문화교육론 관련 과목 등 2 과목 모두 (주전공/복수전공), 1과목(부전공-문화교육 관련 과목) 지정
	기능교육	6학점	
	내용교육	6학점	
	문화문학 교육	3학점	
제3영역	9학점	6학점	

40) 80시간의 제시는 과제책임자의 임의적인 제안 사항으로 수정될 수 있음.

<신설>

[별표2]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대학원의 경우)(제13조제1항 관련)**

영역		선택 이수학점 (일반대학원)	선택 이수학점 (특수대학원)	필수이수과목*	
제1영역 언어지식 영역		3학점	3~4학점	한국어음운론 관련 과목과 한국어문법론 관련 과목 중 1개 지정	
제2영역 한국어교육학영역	한국어교육학 총론	3학점	3~4학점	한국어교육학 총론 관련 과목과 문학교육 관련 과목 중 1개 지정	
	기능교육	6학점			3~4학점
	내용교육	3학점	9학점		
	문화문학 교육	3학점			2~3학점
제3영역 한국 문학 및 문화 이해 영역		3학점	2~3학점		
제4영역 한국어 교육 실 습 영역		3학점	2~3학점		
합 계		18학점	18학점		

* 전문성 강화를 위해 표 1영역 및 2영역에 명시된 과목에 준하는 2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필수이수과목은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은 할 수 있으나 자격은 취득할 수 없음.

* 학부 전공이 동일 전공이 아닐 경우에 전공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이학계열 등 유사계열일 경우 2~3학점(한국어학 관련 과목 혹은 한국어교육학 관련 과목 중 한 과목)을 추가 이수해야 하며, 기타 전공일 경우 4~6학점(한국어학 관련 2~3학점 1개, 한국어교육학 관련 2~3학점 1개 과목)을 추가 이수해야 함. 이를 추가이수과목은 유사전공 및

	<p>기타전공자를 위해 설정된 것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은 할 수 있으나 자격은 취득할 수 없음.</p> <p>* 4영역의 한국어교육 참관과 실습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참관(최소 20시수)과 실습(최소 10시수)을 2학점으로 인정함. 재학 중 총 40시간 이상의 교육 봉사를 확인할 경우 1학점으로 인정함.</p>
--	--

<p><신설></p>	<p>[별표3]</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비학위과정의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제13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영역</th> <th>선택 이수시간</th> <th>필수이수교육내용과시간</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제1영역 언어지식 영역</td> <td>62시간</td> <td>한국어학(음운, 문법, 화용, 어문규범 등)이 최소 32시간을 넘어야 함.</td> </tr> <tr> <td rowspan="4"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mixed;">제2영역 한국어교육 학영역</td> <td>한국어교육학 총론</td> <td>18시간</td> <td rowspan="4" style="vertical-align: middle;">70시간 각 영역별 이수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td> </tr> <tr> <td>기능교육</td> <td>18시간</td> </tr> <tr> <td>내용교육</td> <td>18시간</td> </tr> <tr> <td>문화문학교육</td> <td>16시간</td> </tr> <tr> <td colspan="2">제3영역 한국 문학 및 문화 이해</td> <td>28시간</td> <td>한국어교육에 도움이 되는 한국 문화 및 문학 영역에 대해 각 14시간으로 균등 배분하여 강의를 개설·운영한다.</td> </tr> <tr> <td colspan="2">제4영역 한국어 교육 실습 영역</td> <td>20시간</td> <td>4영역의 한국어교육 참관과 실습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참관(최소 10시수)과 실습(최소 10시수)을 이수해야 20시간으로</td> </tr> </tbody> </table>	영역		선택 이수시간	필수이수교육내용과시간	제1영역 언어지식 영역		62시간	한국어학(음운, 문법, 화용, 어문규범 등)이 최소 32시간을 넘어야 함.	제2영역 한국어교육 학영역	한국어교육학 총론	18시간	70시간 각 영역별 이수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기능교육	18시간	내용교육	18시간	문화문학교육	16시간	제3영역 한국 문학 및 문화 이해		28시간	한국어교육에 도움이 되는 한국 문화 및 문학 영역에 대해 각 14시간으로 균등 배분하여 강의를 개설·운영한다.	제4영역 한국어 교육 실습 영역		20시간	4영역의 한국어교육 참관과 실습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참관(최소 10시수)과 실습(최소 10시수)을 이수해야 20시간으로
영역		선택 이수시간	필수이수교육내용과시간																								
제1영역 언어지식 영역		62시간	한국어학(음운, 문법, 화용, 어문규범 등)이 최소 32시간을 넘어야 함.																								
제2영역 한국어교육 학영역	한국어교육학 총론	18시간	70시간 각 영역별 이수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기능교육	18시간																									
	내용교육	18시간																									
	문화문학교육	16시간																									
제3영역 한국 문학 및 문화 이해		28시간	한국어교육에 도움이 되는 한국 문화 및 문학 영역에 대해 각 14시간으로 균등 배분하여 강의를 개설·운영한다.																								
제4영역 한국어 교육 실습 영역		20시간	4영역의 한국어교육 참관과 실습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참관(최소 10시수)과 실습(최소 10시수)을 이수해야 20시간으로																								

		인정함. 또한 과정 이수 중 또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응시 전까지 총 20시간 이상의 교육 봉사를 수행해야 4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합	계	180시간	교육 봉사 20시간을 포함하면 총 200시간이 됨.

※ 제4영역의 한국어교육 참관과 실습 20시간 중 10시간 이상은 실습으로 진행되어야 함.

[별표4]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주요 교육 내용

영역	주요 교육 내용
제1영역 언어지식 영역	한국어학에 대한 일반 내용(음운, 문법, 어휘, 의미, 화용, 역사, 어문규범 등)과 언어학 일반에 관한 내용이나 언어학 연구 결과를 실제 적용하는 응용언어학적 내용들을 다룬다.
제2영역 한국어 교육학 영역	한국어 교육학 한국어교육학개론 및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 교재론 및 한국어평가론 등 한국어교육학의 바탕이 되는 기초 이론을 탐구하고 학습한다.
	기능교육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능에 관한 이론 및 실제를 학습한다.
	내용교육 한국어 발음, 어휘, 문법 교육과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문화문학 교육 한국어교육의 한 부분으로써 문화 및 문학 교육에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제3영역 한국 문학 및 문화 이해 영역	한국어교육에 도움이 되는 한국 문화 및 문학에 대해 학습한다.
제4영역 한국어 교육 실습 영역	한국어교육의 현장을 참관하고 모의수업을 거쳐 실제 수업을 실습함으로써 현장 교육에의 접근성을 높인다.

210 + 한국어교원 양성 및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별표2] <개정 2012.8.22>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영역 및 검정 방법 (제14조제2항 관련)

영역	배점		시간	방법
별표 1의 제1호	90	120	100분	필기
별표 1의 제2호	30			
별표 1의 제3호	150	180	150분	
별표 1의 제4호	30			
	300점		250분	
구술시험	합격/불합격			면접

[별표5] (별표2를 별표5로 개정함)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영역 및 검정 방법 (제14조제2항 관련)

영역	배점		시간
제1영역 언어지식	120		100분
제2영역 한국어교육학	150	180	150분
제3영역 한국 문학 및 문화 이해	30		
	300점		250분
구술시험	합격/불합격		

2.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1) 주요 개정 내용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바뀌는 부분은 시행령에서 밝힌 학위과정 대상의 기관 인증제도와 비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인증제도 실시를 위한 인증기준과 절차, 인증유효기간, 인증제 실시로 인해 달라지는 사항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이다. 따라서 위에서 밝힌 인증기준과 절차 등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다. 비학위과정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선택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면 현행의 자격증 외에 별도의 자격증(예: 한국어지도사 자격증)과 수료증 발급에 대한 항목이 첨가된다.

가. 인증을 위한 기준의 제시

앞에서 정한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인증기준안은 [별표1]로 첨가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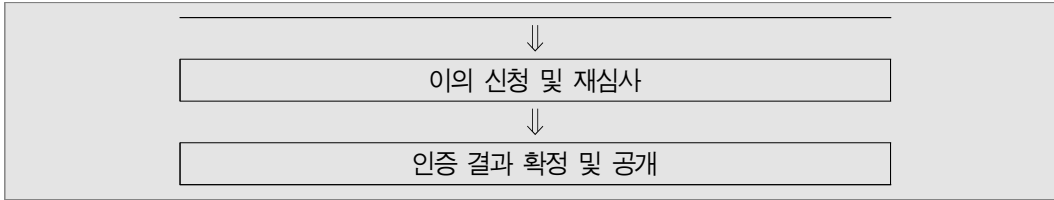
영역	부 문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1영역 기관설립 목적과 비전	학과 설립 목적 비전	기관(프로그램) 개설 목적 비전
	교육과정 달성 및 개선 활동	교육과정 달성 및 개선 활동
	제2영역 교육과정	제2영역 교육과정
제3영역 학생	교육과정의 구성 교과목 운영 참관 및 실습의 운영	교육과정의 구성 교과목 운영 참관 및 실습의 운영
	학생 지도 및 상담, 장학금 및 교외 봉사 등을 위한 학생지원 예산	수강생 지도 및 상담, 교외 봉사 및 수업 실습 등을 위한 지원
	졸업생 취업 및 지원 상황	수료생 취업 및 지원 상황

제4영역 교수진	전공인 전임교원 확보	프로그램 책임자 확보 및 지정
	개설 교과목의 전공 교수 담당 비율	개설 교과목의 전공 교수 담당 비율
	교수 업적	
제5영역 시설 및 설비	기본 교육시설 확보 정도	기본 교육시설 확보 정도
	실습실 유무	실습실 유무
	학술정보 지원	학술정보 지원
<p>1) 학위과정의 경우 전공 전임교원 판정 기준: 박사학위논문 제목이나 학위명, 최근 3년간 연구 성과물, 한국어교육 경험 등</p> <p>2) 비학위과정의 경우 프로그램 책임자 자격 조건: 2급 이상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한국어교육 5년 이상의 현장 경력자 또는 한국어교육 전공 박사학위 수료 이상인 자</p> <p>3) 교육시간 기준: - 면대면 수업: 주간: 50분/1차시, 야간: 45분/1차시 - 온라인 수업: 25~30분/1차시</p> <p>4) 비학위과정의 경우: 총 교육 기간: 최소 6주 이상, 1일 교육시간: 6시간 이하</p> <p>5) 엄격한 출석 관리: 비학위과정의 경우 총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률을 수료조건으로 함. (지각, 조퇴 등 3회 결석 1시간 처리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p>		

나. 시행령 개정에 의한 기관 인증 절차

인증제도 실시에 따른 인증 확정, 인증 결과의 공고 및 취소 그리고 인증제 운영 절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증 확정 및 공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학위과정 운영기관과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비학위과정의 프로그램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하며, 인증된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 실시를 위해 시행하기 45일 전에, 그리고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프로그램 인증은 시행하기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인증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인증 취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위과정 운영기관 및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프로그램을 인증한 후에라도 서류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신청되었거나 운영 과정에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발생할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인증제의 시행 시기, 경과규정의 제정(중복 운영을 위한) 등에 관한 사항 역시 개정되어야 한다.

시행날짜에 대해서는 부칙을 정하여 제시한다.

<시행 날짜>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5조 단서,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외의 수정사항으로는 영역별 명칭을 개정된 시행령 [별표1]의 구분에 맞게 1, 2영역을 합하여 1영역 언어지식 영역으로, 3영역명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이 제2영역 한국어교육학으로 개정되고 4영역이 3영역으로 5영역이 4영역으로 개정된 것을 제안하였기에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 일부의 영역 명칭을 변경하여 제시했다.

2)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비교

다음과 같이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기존의 국어기본법 시행규칙과 대비하여 제시한다.

<표 170> 국어기본법 시행규칙과 개정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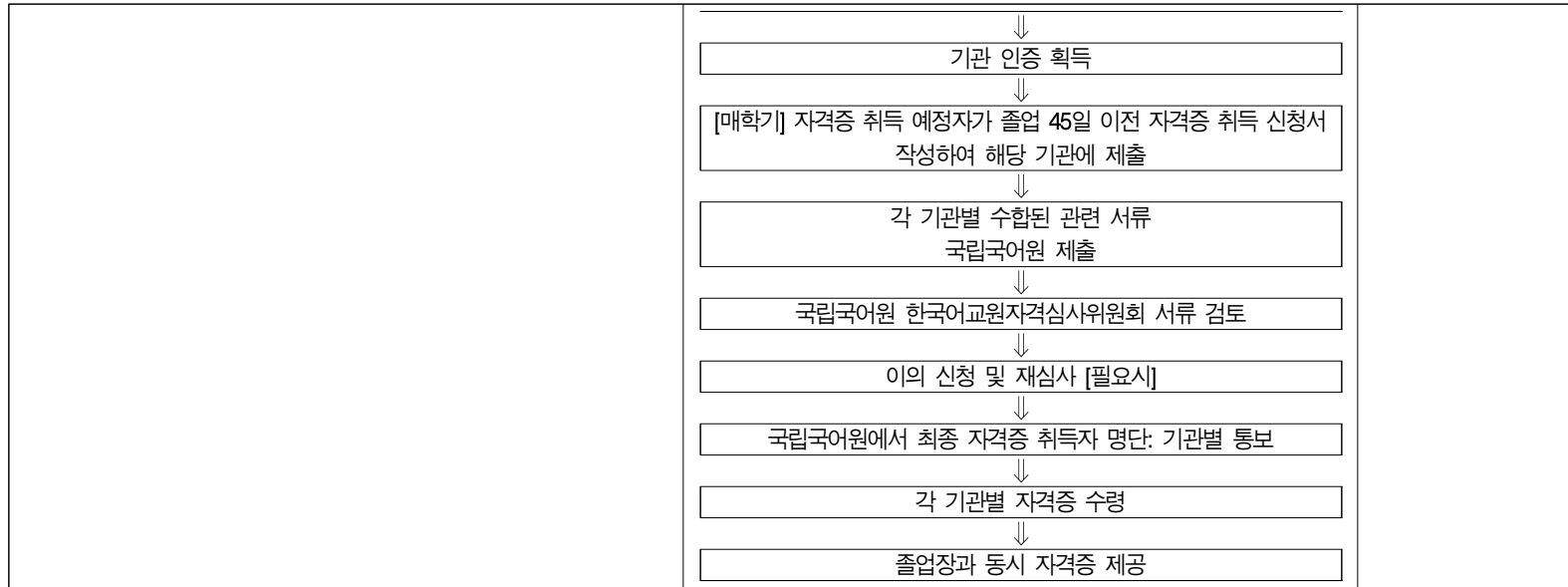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비고
<p>제2조(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p>	<p>제2조(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 <삭제>(시행 2014.3.1.)</p>	<p>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세부 기준 삭제</p>
<p>제5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단서 신설></p>	<p>제5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인증을 받은 기관의 장이 별지 제1-1호서식의 학위취득자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p>	<p>자격 신청에 관한 인증기관의 일괄신청 특례 근거 명시</p>

<p>(이하 생략)</p>	<p>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학위취득자가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p>	
<p>제6조(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① 한국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이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영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영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국어 교육과정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영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항-제6항 신설></p>	<p>제6조(교원양성기관 등의 인증)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이 영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관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국어교육기관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 영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양성 프로그램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전 2항의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위과정 운영기관과 비학위과정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p>	<p>인증제 도입에 따른 수정</p> <p>인증제 도입에 따른 문구 수정</p> <p>인증신청 절차 명시</p>

	<p>의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하며, 인증된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 실시에 관해서는 시행하기 45일 전에, 그리고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프로그램 인증에 관해서는 시행하기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인증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경우 4년, 비학위과정 프로그램의 경우 2년이며, 해당 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각 별지 제5호 또는 제7호 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의 재인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인증제 실시에 따른 자격증 발급절차는 별표 2와 같다.</p>	<p>인증제 시행 공고절차 근거 명시</p> <p>인증 유효기간과 재인증 근거 명시</p> <p>자격증 발급절차 근거 명시</p>
<p><신설></p>	<p>제7조(한국어교원의 재교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3조 제8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재교육을 위하여 재교육기관과 재교육대상자, 재교육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전항의 고시에 따라 재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한국어교원 재교육을 위한 연수과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고시에 따라 재교육대상자로 지정된 한</p>	<p>한국어교원 재교육 근거 명시</p> <p>승급을 위한 재교육 포함⁴¹⁾</p>

	<p>국어교원 및 승급희망교원은 지정 기관 중 1곳을 선택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1회에 한해 재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p>																
	<p>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5조 단서,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시행일</p>															
<p>[별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제2조 관련) 1.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219 676 858 1219"> <thead> <tr> <th>번호</th> <th>영역</th> <th>세부 심사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td> <td>한국어학</td> <td>한국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 한국어의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어문규범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td> </tr> <tr> <td>2.</td> <td>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td> <td>일반 언어의 보편적인 구조와 특징,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 등의 일반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 또는 일반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응용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td> </tr> <tr> <td>3.</td> <td>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td> <td>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 한국어의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어문규범 등의 교육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td> </tr> <tr> <td>4.</td> <td>한국문화</td> <td>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국의 역사·민속·</td> </tr> </tbody> </table>	번호	영역	세부 심사기준	1.	한국어학	한국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 한국어의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어문규범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일반 언어의 보편적인 구조와 특징,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 등의 일반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 또는 일반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응용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 한국어의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어문규범 등의 교육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4.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국의 역사·민속·	<p>[별표]<삭제></p>	<p>제2조 삭제에 따른 별표 삭제</p>
번호	영역	세부 심사기준															
1.	한국어학	한국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 한국어의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어문규범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일반 언어의 보편적인 구조와 특징,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 등의 일반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 또는 일반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응용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 한국어의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어문규범 등의 교육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4.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국의 역사·민속·															

		철학·정치·경제·사회·지리·예술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5.	한국어교육 실습	한국어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등 한국어교육 실습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p>[별표1] 학위과정/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기준 (제6조 제3항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887 1015 1536 1219"> <thead> <tr> <th rowspan="2">영역</th> <th colspan="2">부 문</th> </tr> <tr> <th>학위과정</th> <th>비학위과정</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1영역 기관설립 목적과 비전</td> <td>학과 설립 목적</td> <td>기관(프로그램) 개설 목적</td> </tr> <tr> <td>비전</td> <td>비전</td> </tr> <tr> <td>교육과정 달성 및 개선 활동</td> <td>교육과정 달성 및 개선 활동</td> </tr> </tbody> </table>	영역	부 문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1영역 기관설립 목적과 비전	학과 설립 목적	기관(프로그램) 개설 목적	비전	비전	교육과정 달성 및 개선 활동	교육과정 달성 및 개선 활동	<p>수정안 반영</p> <p>학위과정 운영 기관 인증제도 입에 따른 인증 기준</p> <p>비학위과정 운영 프로그램 인</p>
영역	부 문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1영역 기관설립 목적과 비전	학과 설립 목적	기관(프로그램) 개설 목적														
	비전	비전														
	교육과정 달성 및 개선 활동	교육과정 달성 및 개선 활동														
<p>2. 대학 또는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세부 심사 기준영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은 학사, 석사 또는 박사 과정별로 각각 분리하여 적용한다.</p> <p>3.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세부 심사기준</p> <p>가. 강의시간은 50분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1시간 단위로 한다. 다만, 원격교육(방송·통신·인터넷 등에 의하여 원격으로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방법에 따른 강의시간은 과목의 내용에 대한 강의로 구성된 25분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1시간 단위로 한다.</p> <p>나. 최초 수업일부터 만 2년 이내에 모든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p>																
<신설>																



41) 일반 재교육과 승급을 위한 재교육의 교육시간과 평가기준이 동일하다면 이렇게 규정해도 문제가 없지만, 만약 양자의 시간과 평가기준이 다르다면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시행령 제13조 제6항의 괄호 안에 이 경우를 대비한 문구를 적어 두었다.

42) 물론 일반적인 학과나 대학원 설립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있겠으나 '한국어교육'을 특수 분야로 본다면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이 교원의 자격에 실무 요건을 추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기관 인증 심사 시 가산점 부여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신설, 제5조 제1항 관련)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번호 _____ 년 월 일

수 신

제 목 학위취득(예정)자 명단통보

1. 국어기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위취득자명단을 제출합니다.

①소속	②성명	③주 민 등 록 번호	④학과명	⑤ 학위취득 (예정)일	⑥ 학 위 구분	⑦성적	⑧비고

[별지 제5호서식](개정안)

**한국어교육기관 [] 인증
[] 재인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	-----	----------

신청 교육 기관	기관명		기관 종별	기관 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 -)				
	담당자	성명	부서명	직책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주소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희망 조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인증현황	인증현황(복수표기 가능)	인증일자
	대학 () 대학원 ()	년 월 일

국어기본법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기관 인증(재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별표 1]의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별지 제7호서식] (개정안)

한국어교원 양성 프로그램 인증신청서							
신청 기관명				과정 명			
과정 유형		<input type="checkbox"/> 주간과정 <input type="checkbox"/> 야간과정 <input type="checkbox"/> 단기 집중과정 <input type="checkbox"/> 방학과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과정 개설 시기		년 월	
모집 정원				교육 기간			
수업일수/주당				수업 시간대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영역	과목명	시간	비고	영역	과목명	시간	비고
1. 언어 지식 영역				2. 한국어 교육 영역	내용 교육 문화 문학 교육		
2. 한국어 교육 학종론	한국어 교육학 총론			3. 한국문학 및 문화 이해 영역			
	가능 교육						
				4. 한국어교육 실습 영역			
총 과목 수	(개)			총 이수시간	(시간)		
붙임 서류: [별표 2]의 증빙서류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제6장 결론

국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해 실시되는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그간 한국어교육 및 한국어교원의 법적 안정성의 확보 및 이를 통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는 10여 년 전까지의 한국어교원의 양성이 주로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실시되다가 이후 약 20여 개의 학부, 70여개의 대학원에서 전공으로 개설되었다는 점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어 학습자 수 역시 급증하게 되었는데 단순히 한 집단만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학문 목적 유학생,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주 노동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 등 한국어 학습의 목적이 다른 다양한 집단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2012년 현재 전 세계는 한류의 열풍에 휩싸여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치적·경제적 발전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의 증대 등은 한국어학습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어 학습자의 양적인 발전과 한국어교육의 질적인 성장 뒤에는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 역시 발견되고 있다. 이 연구 사업은 이처럼 한국어교육이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는 가운데, 2005년 7월 국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과 함께 시행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추진되었다. 한국어교육의 양적 팽창은 교원 양성기관의 수 증가와 더불어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증가의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어교원과 관련한 질적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 또한 이는 한국어교육 및 교원 관련 법령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는 크게 자격증 발급 자격 심사와 절차 등에 관한 점들과 일부 기관 및 그 기관 개설 교과목의 부실 운영, 자격증 소지자 실태 파악 및 관리 부재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유로, 기존에도 국립국어원의 발주로 몇 차례의 연구 사업을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의 요건과 취득 절차,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운영 방식,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운영 요건과 교육 품질,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향상 등의 측면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 양성기관 운영 실태에 대해 논의되어 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의 제안 중 일부만이 제도 및 법령에 반영된 수준에서 더 나아가 이번 연구에서는 교육 현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교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제도화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는 ‘한국어교원 양성 및 지원 효율화’를 목표로 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대한 개선 법령 개정안 마련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 사업은 2012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4개월 동안 크게 세 가지 부면에서 이뤄졌다.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대하여 실태 조사,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 법령 개정안 마련, 한국어교원 양성 및 지원 효율화 방안 모색의 세 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경우, 크게 온라인 교육기관과 오프라인 교육기관, 그리고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 전반(학과 명칭, 개설 시기, 재학생 수, 개설 형태), 영역별 개설 과목 수, 졸업 및 자격 취득 현황(졸업 이수학점, 학위 수여 조건), 전임교원 및 강사 현황, 입학 전형 및 외국인학생관리(입학 전형 방법, 유학생 관리 방식, 출석 관리 방식),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평가 방식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국내 및 국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 하여 자격 취득 경로, 활동 여부, 소속 기관 및 지위, 근무 시간 및 여건,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자격제도와 관련해서는 한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1, 2, 3급 한국어교원 자격과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자격제도 적용 현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자격증 심사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자격증 신청 관련, 자격증 심사 관련, 자격증 취득 관련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앞선 세 측면에 걸친 한국어교원의 양성과 자격에 대한 조사, 분석, 법적 검토를 통해 객관적이고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여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사업에서는 전화, 전자우편, 온라인을 활용한 설문 조사를 통해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운영과 자격증 소지자의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어교원의 양성 및 지원 효율화를 고려한 행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헌 연구, 두 차례의 자문 회의, 네 차례에 걸친 4대 권역, 대전(대전·충청·호남권), 대구(대구·경북권), 부산(부산·경남권), 서울(서울·경기·강원권)에서의 이해 관련자 대상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현장 조사를 통해 크게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자격증 소지자, 자격제도의 네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학위과정의 경우, 2012년 하반기(11월 현재)에 국립국어원에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것은 총 121개 기관으로서 이는 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으로 구분되며, 이때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은 대학기관, 사설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먼저 학위과정의 교육과정, 기관 개설 자격 심사 절차 측면에서는 ‘간소화’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기관 승인 심사 시 기관의 규모나 교원의 수 또는 시설 구축 등에 대한 심사는 없었으며, 전공과정 개설에만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영역의 인정 여부를 서류 심사만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 운영에 대한 질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 운영기관을 걸러낼 수 있는 기제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 측면에서 학위과정은 주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학점은행제, 연계 전공 등 다양한 방식의 세부전공을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기관별, 학위별(학부/대학원) 특성에 부합하는 적절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은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영역별 과목 수와 학기당 개설 과목 수 모두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요건에 필요한 최소치에 가까운 수의 과목만 개설하고 있는 과정이 적지 않았다. 특히 실습 교과목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교육 실습의 방식이나 시간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습 교과목 수 강 조건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양질의 실제적 실습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위과정 운영 전반과 관련하여

교원의 전문성과 졸업과 함께 배출되는 교원의 수 조절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비학위과정의 경우, 2006년, 국어기본법 시행 이후에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기관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2012년 하반기(11월 현재) 기준 국립국어원의 승인을 받은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은 총 135개, 실제 운영기관은 110개에 이르고 있으며, 대학 내 부설 기관과 대학 외 기관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당시 조사에 따르면 비학위과정이 개설된 기관이 총 31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와 비교해 보면 6년 사이에 승인 기관은 4배 이상, 실제 운영기관은 3.5배 정도 증가한 셈이다. 특히 대학 외 운영기관은 총 18개 기관으로서 크게 사설 기관과 공공 기관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인력개발센터, 종교 단체, 사설 교육기관 등이 해당하며, 후자는 시 단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번 조사에서 비학위과정의 경우, 먼저 과정 개설 승인을 받은 기관 수와 실제 운영기관 수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다가 중단하였거나, 준비는 되었으나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그 원인이 대부분 수강생의 감소 또는 부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비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양적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과목 개설 및 운영에 있어서 수강생들의 다양한 변인 및 요구, 전문적인 강사, 실습 협조 기관 확보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강생들을 고려할 때, 현재의 필수이수시간인 120시간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과정생의 자격증 취득자 수와 관련하여 대학 외 운영기관 즉, 사설 및 공공 기관의 비학위과정에서는 다른 유형의 기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다는 사실도 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비학위과정은 제도의 특성상 승인 후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승인 후 관리가 더욱 중요한데, 특히 현재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는 참관과 실습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 비학위과정의 수강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비학위과정의 목적, 존재 이유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의 다량 배출로 인한 자격증의 실효성 문

제, 자격증 취득 절차의 불편함 및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들의 주요 요구 내용은 크게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관한 것과 한국어교원 처우에 관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격증 취득자가 양산되고 있어 자격증 위계화와 자격증 취득 조건의 차별화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또한 취업에 있어서 현행 자격제도에서의 각 급 구분에 따른 이점을 발견할 수 없어 승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현장 조사와 함께 전문가 집단의 논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교원’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 및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학위과정의 경우, 학위별, 기관별 교육과정의 자율성, 전문성, 차별성을 지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이수과목의 설정과 교육 실습 교과목 내용 강화, 영역의 축소 및 이수학점의 재조정, 교육 실습의 제도적 강화, 자격증 취득 조건의 강화로 제시하였다.

비학위과정의 경우, 예비 교원의 전문성, 수강생 요구의 다양성 반영을 지향한다. 이는 수업 시수 확대, 필수이수내용 및 이수시간 지정, 영역의 축소 및 재조정, 교육 실습의 강화로 제시하였다.

자격증 소지자와 관련하여, ‘처우’ 측면과 ‘교사의 질적 제고’와 관련하여 전자는 자격증의 위계화, 자격증 취득 및 승급 조건의 차별화, 한국어교육기관과 유관 정부 기관 간의 협력 기구 구성을, 후자는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인증제, 교사의 재교육, 보수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사업이 목적으로 삼는 한국어교원 양성 및 지원의 ‘효율화’에서 ‘효율화’란 한국어교원 양성 및 지원과 관련된 현행 제도나 지침, 규정이 갖고 있는 비효율적인 부분, 개선 및 보완되어야 점들을 찾아내어 관리나 운영에서의 효과나 경제성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이 도출된 개선점들 및 개선 방안을 토대로 국어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법령 개정안은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기관 인증제 및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과정 등에 관련이 깊은 개선안은 시행령 개정안에,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

에 반영하였다. 학위과정은 [별표1]에 의거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면서 기관 인증을 위한 절차를 통해 인증을 받으면 2년간 그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비학위과정 역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교과과정 및 교과목을 운영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제 실시와 비학위과정의 프로그램 인증제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할 수 있다는 법령안을 새로이 추가하였고, 법 개정 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안도 추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과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와 관련한 법령 개선안은 크게 교육과정 수정, 기관 인증제 실시, 자격증 심사제도 변경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 온라인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을 구분하여 교과목 개설과 운영에 있어서 차별화 및 위계화에 따른 교육과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영역의 조정 및 영역별 교과목의 확대 및 보완을 위한 효율적, 실제적인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며, 학위과정에 의한 자격 취득 절차와 기준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변경을 토대로 하는 기관 인증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구체적으로 이는 기관 인증을 위한 엄격하고 분명한 평가 기준과 절차, 각 대학 및 기관의 지역적, 학제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교육 실습(수업 참관과 수업 실습 등)의 강화, 정부 담당 기관의 행정적 지원 등의 협조, 각 대학이나 기관의 학위과정 명칭이나 비학위과정의 명칭 재고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더불어 기관 인증제와 함께 실제성, 신뢰성, 타당성, 실용성을 갖춘 자격증 심사제도의 개편이 요구된다. 자격증 심사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은 크게 자격증 신청 관련, 자격증 심사 관련, 자격증 취득 관련의 세 측면으로 나뉜다. 심사 시기, 신청 및 평가 절차 측면에서 현실을 고려하고, 심사 방식 및 방법 측면에서 체계적인 교과목 심사기준과 자격 승급기준에 따라 자격증 실효성과 자격증 공신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원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전문적인 한국어교원의 체계적인 양성 및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 원칙과 지침서 역할을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특성상 한국어교원 양성 및 지원과 관련한 제도의 개편, 보완, 운영에 있어서 실효성을 고려할 때 유관 정부 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전제로 할 때 본 연구의 성과가 제대로 구현될 것이다.

근래에 들어와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급증하고, 학습자의 요구가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자격 취득자와 교육 현장과의 연계성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원 수급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목되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교원 양성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어학습자 집단이 다양해지고, 한국어 학습 목적 역시 다양해져서 요구되는 한국어교사의 전문성의 영역도 변화하고 확대되거나 특화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년 전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확보와 한국어교육의 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취지로 만들어진 본 법령은 개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한국어교육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교원’을 중심으로 하여 시대의 변화와 요구를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으면서 현실 타개적인 양성 방안과 지원 효율화를 꾀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참고문헌

- 강승혜(2011),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의 현황과 과제」, 『새국어생활』 21-3, 국립국어원, 83~97쪽.
- 국립국어원(201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국립국어원.
- 김정숙(2011),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의 변천과 그 개선 방안」, 『새국어생활』 21-3, 국립국어원, 41~58쪽.
- 김중섭(2011), 「한국어 교육의 변화와 한국어 교원의 미래」, 『새국어생활』 21-3, 국립국어원, 5~26쪽.
- 박병수, 이석만(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교원양성 프로그램개발 연구」, 『이중언어학』 15, 이중언어학회, 235~267쪽.
- 송향근 외(2007),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 국립국어원.
- 송향근(2009), 「국내외 한국어 교원 양성에 관한 고찰」, 『한국어정보학』 11-1, 한국어정보학회, 22~29쪽.
- 송향근(2011),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의 현황과 과제, 『새국어생활』 21-3, 국립국어원, 27~40쪽.
- 송향근(2012), 「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65, 민족어문학회, 53~75쪽.
- 오광근 외(2009),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운영 실태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 윤소영 외(201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2)』, 국립국어원.
- 이승혁(2012), 『재외 한국어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태린(2012), 「한국어 교원 양성 및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경위와 방향」, 『한국어 교원 양성 및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제4차 공청회』 자료집, 1~9쪽.

조항록(2007), 「국어기본법과 한국어교육-제정의 의의와 시행 이후 한국어 교육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8-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401~422쪽.

조현성 외(2008),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

진정란(2011), 「혼합 학습을 적용한 한국어 교원 양성 방안」, 『외국어교육연구』 25-2,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83~100쪽.

최은규(2011), 「현장의 수요와 요구」, 『새국어생활』 21-3, 국립국어원, 131~157쪽.

최정순(2011), 「주요 국가의 외국인 대상 자국어 교육을 위한 교사 자격제도 운영에 관하여」, 『새국어생활』 21-3, 국립국어원, 59~82쪽.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육성과(2010),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https://kteacher.korean.go.kr/main.do>

세종학당 홈페이지 <http://www.sejonghakdang.org/>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Abstract>

A Study on the Plans for an Efficiency of Training and Supporting the Korean Language Teachers

The aims of the study are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system of certifying Korean language teaching, and to propose the plans for making policies related to training, supporting, and administrating Korean language teachers more systematically. In order to reach the aims, the study sets up the particular goals as follows: First, the study investigates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management of the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organs and proposes the improvement plans. Second, the study looks into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activities of the holders of the Korean language teaching certificate and suggests the plans for supporting them. Third, the study analyses the problems of the management of the certificate system for Korean language teacher and demonstrates the improving plans. Fourth, the study provide the improving plans for revising the regulations on the certificate system for Korean language teacher.

The research methods and procedure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took i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management of the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programs and those of the activities of the holders of the Korean language teaching certificate by the survey through phone, emails, and online. Next, we executed the literature review, held the meetings of advisors and the public hearings in the four major regions, Daejeon · Chungcheong · Honam, Daegu · Gyeongbuk, Busan · Gyeongnam, and Seoul · Gyeonggi · Gangwon, with the interested people, and carried out the interviews by letter and phone in person for laying down the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plans.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study provide the improving plans for the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programs and the support plans for the holders of the Korean language teaching certificate.

The study proposes the improvement plans and directions for enhancing an efficiency of the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as follows: First, the study displays the plans for enhancing an efficiency of the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programs in accordance with the types of the institutions. The study proposes the degree programs to aspire to achieve autonomy, expertise, and differentiation of the curricula depending on the types of the degrees. The study specifically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ulsory subjects, enhancement of teaching practice, reduction of the sections, readjustment of the compulsory credits, institutional tightness of teaching practice, and reinforcement of the qualifications of the acquisition of the certificate. The study also suggests the non-degree programs to reflect the expertise of the prospective teachers and the diversity of the needs of the trainees. The study particularly proposes the extensions of the hours of the classes, specifications of the content of the required classes and the hours of the classes, reduction and readjustment of the sections, and reinforcement of teaching practice.

In terms of the treatment of the holders of the Korean language teaching certificate, the study proposes hierarchization of the certificate, differentialization of the qualifications of the acquisition and promotion, and the constitution of the cooperative organizations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government organs concerned. In addition, in terms of qualitative improvement of the Korean language teachers, the study suggests the systems of accreditation of the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organs, teacher retraining, and remedial programs offering and managing.

Key words: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for Korean language teacher, supporting for Korean language teacher, certificate system for Korean language teacher, improvement of certificate system for Korean language teacher

Project Director: Jeongsoon Choe(Pai Chai University)

연구 책임자: 최정순 (배재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공동 연구원: 권성미 (부경대 국어국문학과)

박정아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진흥과)

오지혜 (세명대 한국어문학과)

이미향 (영남대 국어교육과)

이정란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조태린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진흥과)

지현숙 (배재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진대연 (호원대 한국어학과)

진정란 (사이버한국외대 한국어학부)

연구 보조원: 엄나영 (영남대 대학원)

오승영 (배재대 대학원)

윤지원 (배재대 대학원)

전미화 (배재대 대학원)

정안나 (배재대 대학원)

조진영 (사이버한국외대 한국어학부)

진 주 (배재대 대학원)

하상대 (부경대 대학원)

담당 연구원: 조태린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진흥과)

박정아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진흥과)

한국어교원 양성 및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발 행 인 민현식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 3동 827)

전화: 02-2669-9745 전송: 02-2669-9747

인 쇄 일 2012년 11월 30일